

92-16

# 노인정(경로당) 활성화 방안

1992

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2

1952

## 머 리 말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들은 가족내 역할과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변화로 딸미암아 여가의 욕구가 가정내에서 충족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여가활용도 이제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거의 유일한 장(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정은, 그 수가 전국적으로 2만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노인정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노인정은 노인의 여가활동욕구를 해소시켜 주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욕구와 노인정 운영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노인정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노인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인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국적인 노인정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는데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좋은 결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노인정 관련자료뿐만 아니라 조사자료 수집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대한노인회의 신강순 총장과 보사부 노인복지과 이정섭 과장을 비롯하여 우편조사에 협조해준 전국의 많은 노인정 회장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자료정리를 도와준 원혜경씨와 장묘옥씨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당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히면서 노인복지의 증진을 기원하는 바이다.

199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지 달 현



# 목 차

## 머리말

제 1 장 서 론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	2
III. 연구방법	3
1. 문헌연구	3
2. 노인정 운영실태조사	3
3. 모범노인정에 대한 참여관찰조사	3
4. 표본조사	4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9
I. 노인정의 위상과 현실	9
1. 현행 노인정의 역할	9
2. 노인정의 조직특성	11
II. 노인욕구 개념으로 본 노인정의 기능	12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12
2.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15
III. 노인정 활성화의 개념	19
1. 활성화와 참여증진의 개념	19
2. 조직참여의 동원방법	21
3. 조직참여의 영향요인	23
제 3 장 노인정 운영 및 이용실태	25
I. 노인정의 조직체계 및 현황	25
1. 노인정 조직체계	25
2. 노인정 현황	27

II. 노인정 운영자의 일반속성 .....	32
1. 성별분포 .....	33
2. 연령분포 .....	34
3. 교육정도 .....	35
4. 재임기간 .....	35
III. 노인정 시설현황 .....	36
1. 노인정 설립년도 .....	36
2. 노인정 규모 .....	38
3. 노인정의 위치 .....	40
4. 건물형태 및 독립여부 .....	41
5. 건축비 부담 .....	43
6. 노인정 시설 및 설비 현황 .....	44
IV. 노인정 운영실태 .....	48
1. 운영유형 및 규정 .....	48
2. 노인정 운영비 현황 .....	51
3. 정부지원 .....	59
4. 지역사회와의 관계 .....	62
5. 회비수납 현황 .....	71
6.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76
V. 노인정 이용실태 .....	77
1. 이용노인 규모 .....	77
2. 노인정 활동 .....	82
VI. 노인정 운영자의 의식 및 태도 .....	97
1.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	97
2.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	98
3. 노인정 비참여 노인에 대한 인식 .....	99
4. 노년기에 대한 태도 .....	101

<b>제 4 장 노인정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b> .....	103
I. 노인정 이용률의 저조 .....	103
II. 프로그램의 미비 및 중복 .....	103
1. 프로그램의 중복 .....	104
2.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문제 .....	104
3. 소득보완 프로그램의 문제 .....	104
4.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의 문제 .....	105
III. 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 .....	106
1. 노인정 시설의 협소 및 노후 .....	106
2. 노인정 기본시설 및 여가설비의 미비 .....	107
IV. 운영재정의 부족 및 불균형 .....	108
1. 일부 운영비 조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	108
2. 운영비 지출내역의 불균형 .....	109
3. 정부보조금 수준의 저위 및 불균형 .....	109
V.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	110
VI.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 .....	111
<b>제 5 장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b> .....	112
I. 노인정 참여유도 .....	112
1. 노인정의 이미지(image) 개선 .....	112
2. 생활정보의 제공 .....	112
3. 긍정적 경험기회의 제공 .....	113
II. 노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	113
1. 노인정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 .....	113
2. 노인공동작업장의 분리운영 .....	114
III.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필수요건의 충족 .....	115
1. 노인정의 시설보강 .....	115
2. 노인정 운영재정의 확충 .....	116

3. 노인정 회장의 리더쉽(leadership) 훈련 .....	117
IV.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118
1. 현행 조직체계의 활용 .....	118
2.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 .....	118
3.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통합 .....	119
4. 전문인력의 확보 .....	120
5. 노인집단의 조직화 .....	120
V. 지역사회와의 유대증진 .....	121
1.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	121
2. 지역사회에의 기여 .....	122
 제 6 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	 126
 부    록 .....	 131
I. 조사표 .....	133
II.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명단 .....	143

## 도 및 표 목 차

[도 3- 1]	노인정의 조직체계 .....	26
[도 3- 2]	운영형태별 구성비 .....	29
[도 3- 3]	주거형태별 구성비 .....	29
[도 3- 4]	개소당 지역별 평균 노인인구수 .....	31
[도 3- 5]	개소당 평균 등록노인수 .....	32
[도 3- 6]	기본시설 및 설비 현황 .....	45
[도 3- 7]	여가활동 설비현황 .....	47
[도 3- 8]	운영비 조달방법 .....	51
[도 3- 9]	지역후원회 구성비율 .....	63
[도 3-10]	지역지원내역 .....	66
[도 3-11]	이웃노인정과의 정규접촉 내용 .....	69
[도 3-12]	가입비 수납여부 .....	71
[도 3-13]	관광비용 주부담자 .....	87
[도 3-14]	여가활동 프로그램 .....	94
[도 3-15]	지역사회 봉사활동내용 .....	96
<표 1- 1>	노인정 형태별 표본추출 및 조사결과 .....	5
<표 1- 2>	지역별 표본추출 및 조사결과 .....	5
<표 2-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	13
<표 2- 2>	목적적 욕구와 수단적 욕구와의 관계 .....	15
<표 2- 3>	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분류 .....	17
<표 2- 4>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	18
<표 2- 5>	조직형성의 과정 .....	21
<표 2- 6>	조직 효과성의 영향요인 .....	24
<표 3- 1>	노인정 분포현황 .....	28

<표 3- 2>	노인정 구성비 및 등록노인 구성비 .....	30
<표 3- 3>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일반속성 .....	33
<표 3- 4>	운영책임자 평균연령 .....	34
<표 3- 5>	운영책임자 평균재임기간 .....	36
<표 3- 6>	노인정 설립년도 .....	37
<표 3- 7>	노인정 대지규모 .....	38
<표 3- 8>	노인정 건물규모 .....	40
<표 3- 9>	노인정의 위치 .....	41
<표 3-10>	노인정 건물형태 .....	42
<표 3-11>	노인정 독립건물 여부 .....	43
<표 3-12>	노인정 건축비 주부담자 .....	44
<표 3-13>	노인정 형태 .....	48
<표 3-14>	주된 운영비 조달방법 .....	52
<표 3-15>	월운영비 규모 .....	54
<표 3-16>	지역별 월평균운영비 .....	55
<표 3-17>	형태별 월평균운영비 .....	55
<표 3-18>	주된 운영비 지출항목 .....	56
<표 3-19>	운영비 충분도 .....	58
<표 3-20>	월정부보조금 수준 .....	60
<표 3-21>	월평균 정부보조금 .....	61
<표 3-22>	지역기관/유지 접촉정도 .....	64
<표 3-23>	지역사회 지원의 규칙성 .....	65
<표 3-24>	지역사회의 지원경로 .....	67
<표 3-25>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 접촉않는 이유 .....	68
<표 3-26>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 .....	70
<표 3-27>	회원 가입비 액수 .....	72
<표 3-28>	회비 수납빈도 .....	73

<표 3-29>	회비 수납빈도별 수납액수 .....	74
<표 3-30>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조치 .....	74
<표 3-31>	지회비 납부여부 및 빈도 .....	75
<표 3-32>	납부빈도별 지회비액수 .....	76
<표 3-33>	등록노인수 .....	78
<표 3-34>	평균 등록노인수 .....	78
<표 3-35>	1일 이용노인수 .....	79
<표 3-36>	지역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 .....	80
<표 3-37>	형태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 .....	80
<표 3-38>	평균 이용률 .....	81
<표 3-39>	지역별 회식빈도 .....	83
<표 3-40>	지역별 회식방법 .....	84
<표 3-41>	회식비 주부담자 .....	85
<표 3-42>	단체관광 빈도 .....	86
<표 3-43>	공동작업 여부 .....	88
<표 3-44>	공동작업 내용 .....	89
<표 3-45>	공동작업 월평균 수입규모 .....	91
<표 3-46>	공동작업 월평균 수입액 .....	91
<표 3-47>	공동작업 참여노인수 .....	92
<표 3-48>	공동작업 하지 않는 이유 .....	93
<표 3-49>	지역봉사활동 여부 .....	96
<표 3-50>	운영책임자의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	98
<표 3-51>	운영책임자의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	99
<표 3-52>	운영책임자의 비참여 노인에 대한 인식 .....	100
<표 3-53>	운영책임자의 노인으로서의 평소심정 .....	101
<표 3-54>	운영책임자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 .....	102



#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배경

노인문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해간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현 상황에서에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수립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점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중요시될 것이며, 그 욕구충족방법에 있어서도 일률적이고 거시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개인의 독특한 생활양상 및 가치관에 보다 잘 부합될 수 있는 세분화된 욕구중심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해결과정에 노인인구집단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자기결정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기결정의 원칙이란, 개인의 문제에 대해 문제 당사자의 외부에서 그 문제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를 문제해결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개인이 다양하게 겪게 될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개인의 해결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복지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의 취약점은 다음의 두가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사후적·잔여적 접근방식과 그 내용상의 불충분으로 인한 새로운 노인문제의 심화, ② 노인인구층(문제당사자의 측면과 전체 노인인구집단의 측면)의 주체적 참여미흡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수립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및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노인복지자원을 상황에 알맞게 활용하는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노인정<sup>1)</sup>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로 우리나라

1)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정을 경로당(敬老堂)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

라에서는 노인정이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최근까지 노인들의 휴식, 오락, 친목, 노인공동체 의식의 조성을 위한 거의 유일한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으며, 둘째로 그 수(數) 또한 전국의 동·리 단위까지 조직된 2만여개소에 이르러 활용의 잠재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셋째로 현재 노인정이 변화해가는 시대상황에 비해 그 변화와 발전형태가 미흡하여 노인정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며, 넷째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정 참여는 그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하여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실시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지역노인들의 노인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정을 노인복지의 지역적 중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노인정은 전반적인 노인복지체계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인가? 우리나라 노인정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즉, 노인정은 노인복지체계내에서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다 많은 노인들을 노인정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노인정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의 욕구분석과 노인정 운영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노인정이 노인욕구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노인정의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전체 노인복지서비스 장(場)의 질적·양적 부족현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연구의 목적

에서 사용하는 노인정의 공식명칭은 경로당(노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름)이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및 노인들간에는 노인정으로 통용되고 있고, 일반주민에게도 노인정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노인정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노인정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정에의 양적·질적 참여증진을 통한 노인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실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정의 위상과 현실 파악
- ② 노인욕구의 개념으로 본 노인정의 기능
- ③ 노인정 활성화의 개념 모색
- ④ 노인정의 운영 및 이용실태 분석
- ⑤ 노인정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도출
- ⑥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

### Ⅲ.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노인정 기능, 이용 및 운영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정 기능에 대한 개념정립, 노인정 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 노인정 이용노인의 욕구를 분석하였다.

#### 2. 노인정 운영실태조사

노인정 이용,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노인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3,344개소의 노인정 운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표본추출,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본 절의 '4. 표본조사'에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 3. 모범노인정에 대한 참여관찰조사

노인정 이용,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활동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보완

프로그램(예: 공동작업장 운영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예: 교통정리 등) 그리고 여가활용 프로그램(예: 게이트볼 등)이라는 3가지 활동분야별로 모범노인정을 추천받아 이들중 20개소의 노인정에 대하여 본 연구진이 직접 노인정을 방문 활동현황을 분석하였다.

#### 4. 표본조사

「노인복지종합대책(1): 노인정 활성화 방안」의 조사는 ① 노인정 운영실태조사와 ②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정운영 실태조사는 1992. 6. 11~6. 30(20일간)에 걸쳐 전국의 노인정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은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은 모범노인정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

노인정 운영실태조사의 대상은 조사기준일(1992. 5. 1) 현재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의 운영책임자(회장 또는 총무)이며, 현지 참여관찰의 조사대상은 노인정 운영책임자는 물론이며, 조사대상 노인정의 이용노인, 노인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기관 및 유지, 지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포함된다.

##### 2) 표본추출

###### (1) 노인정 운영실태조사

본 연구진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266개 지회의 협조를 얻어 본 연구진이 1992년 5. 1~5. 20(21일간)에 걸쳐 수집한 「노인정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표본추출하였다. 1992년 5월 1일 현재 대한노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은 20,068개소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율적 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집단(전국의 노인정)을 형태에 따라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 노인정의 세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에서 매 6번째 속하는 노인정을 조사대상 노인정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노인정 3,344개소중 할아버지 노인정이 1,260개소, 할머니 노

인정이 219개소 그리고 공동 노인정이 1,865개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242개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및 대전의 5개 기타 대도시에서 374개소, 그외의 시부지역인 중소도시에서 614개소 그리고 군부지역에서 2,114개소가 표집되었다.

<표 1-1> 노인정 형태별 표본추출 및 조사결과

구 분	노인정총수	조사대상	조사완료	조사완료율(%)
총 계	20,068	3,344	2,099	62.8
할아버지 노인정	7,563	1,260	687	54.5
할머니 노인정	1,315	219	122	55.7
공동 노인정	11,190	1,865	1,290	69.2

<표 1-2> 지역별 표본추출 및 조사결과

구 분	노인정총수	조사대상	조사완료	조사완료율(%)
전 국	20,068	3,344	2,099	62.8
대   서울	1,455	242	145	59.9
도   기타	2,242	374	228	61.0
시   중소도시	3,682	614	385	62.7
군   부	12,689	2,114	1,341	63.4

이들 노인정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99개소의 노인정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여 62.8%의 조사완료율을 보였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이 54.5%, 할머니 노인정이 55.7% 그리고 공동 노인정이 69.2%로 공동 노인정의 조사완료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9%, 서울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가 61.0%, 중소도시가 62.7% 그리고 군부지역이 63.4%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낮은 지역일수록 조사완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완료율은 우편조사의 조사완료율이 일반적으로 10%~40%인 점<sup>2)</sup>과 조사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 60세 이상의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조사완료율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범노인정 참여관찰조사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은 유의표집으로,

2) 김경동·이은숙, 사회조사방법연구, 서울: 박영사, 1986, p. 157

먼저 대한노인회의의 각 시도연합회를 통하여 활동분야별로 모범노인정 75개소를 추천받았다. 각 시도연합회에서 추천한 모범노인정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진이 유의적으로 20개소의 모범노인정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노인정에 대하여는 1992. 6. 26 ~ 7. 20(25일간)에 걸친 현지 참여 관찰조사를 통하여 노인정 운영의 문제점, 회원의 활동내용,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 3) 조사방법 및 내용

#### (1) 노인정 운영실태조사

노인정 운영실태의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로 표집된 노인정의 운영책임자 즉, 노인정 회장과 총무가 직접 응답하고 대리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노인정 운영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성, 연령, 교육정도, 재임기간 등 일반적 속성
- ② 노인정 시설현황
  - ㉠ 설립년도
  - ㉡ 노인정 규모
  - ㉢ 노인정 위치
  - ㉣ 건물형태
  - ㉤ 건축비 부담
- ③ 노인정 운영실태
  - ㉠ 운영유형 및 규정
  - ㉡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 ㉢ 회원 등록 자격제한 규정에 대한 태도
- ④ 노인정 운영비 현황
  - ㉠ 운영비 조달방법
  - ㉡ 월평균 운영비
  - ㉢ 운영비 지출내역
  - ㉣ 운영비 충분도
  - ㉤ 회계관리

- ⑤ 정부지원
  - ㉠ 정부지원 여부 및 규모
  - ㉡ 월평균 정부보조액
  - ㉢ 정부보조금의 충분도
- ⑥ 지역사회와의 관계
  - ㉠ 지역후원회 구성여부
  - ㉡ 지역사회 기관 및 유지와의 접촉여부
  - ㉢ 지역사회의 지원빈도 및 지원내역
  - ㉣ 지역사회 지원경로
  - ㉤ 이웃 노인정과의 정규적 접촉여부
  - ㉥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내용
  - ㉦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
- ⑦ 회비수납 현황
  - ㉠ 회원 가입비 수납여부 및 규모
  - ㉡ 월회비 유무 및 규모
  - ㉢ 지회회비 납부여부 및 액수
- ⑧ 노인정 이용실태
  - ㉠ 등록노인수
  - ㉡ 이용노인수
- ⑨ 노인정 활동내용
  - ㉠ 전반적 노인정 프로그램 내용
  - ㉡ 회식빈도 및 비용
  - ㉢ 단체관광 빈도 및 비용부담
  - ㉣ 공동작업 빈도 및 비용부담
  - ㉤ 지역사회 봉사활동여부 및 내용
- ⑩ 운영책임자의 태도
  - ㉠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 ㉡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 ㉢ 노인정 비참여 노인에 대한 태도
  - ㉣ 노년기에 대한 인식

## (2) 모범노인정 참여관찰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요활동 및 프로그램
  - ㉠ 활동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 프로그램 도입배경, 경로 및 도입시기
  - ㉢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도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향후의 전망 및 개선방안
- ② 지역사회와의 관계
  - ㉠ 지역사회 관련단체/유지와의 관계 및 지원수준
  - ㉡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및 지원내역
  - ㉢ 프로그램의 직접 관련인사와의 관계
- ③ 지역내 타노인정과의 관계
- ④ 지역내 비참여노인에 대한 태도
- ⑤ 당해지역 대한노인회 지회와의 관계 및 지원내용

## 4) 자료처리

노인정 운영실태조사에서 회수된 조사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사과정(精査過程, scanning process)을 거쳐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무응답이 많거나 또는 응답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사표를 자료처리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활용가능한 조사표에 대하여는 부호화 작업을 하였는데, 선택형 질문은 조사표의 척도번호대로 부호화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예: 운영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호화 작업전에 먼저 문헌연구와 회수된 조사표를 사전검토하여 응답사항을 표준화하고 이에 따라 부호화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는 전산처리를 위하여 자료수정작업을 한 후 테잎으로 저장한 후 자료수정절차(editing procedure)를 거쳐 부호화작업과 천공작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료상의 오류를 제거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x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주로 사용된 분석기법은 단순빈도, 교차분석, Breakdown, 분산분석, t-검증 등이다.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노인인구의 증가, 노년기의 장기화, 핵가족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정보사회화, 현재와 앞으로의 사회변화와 관련된 노인문제 등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노인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준거틀로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집단의 집합적인 '욕구'의 개념을 그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 장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복지체계내에서의 노인정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음의 과정에 따라 논의를 전개시키기로 한다. 먼저 노인정이 전체 노인복지체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현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노인의 욕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인의 욕구중 노인정이 담당해왔으며 앞으로 담당해 나가야 할 욕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노인정 참여증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인정 활성화 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삼고자 한다.

### I. 노인정의 위상과 현실

#### 1. 현행 노인정의 역할

우리나라의 노인정은 동·리의 지역적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적이며 일차집단적 성격을 지니는 노인집단의 활동의 장(場)으로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

경로효친사상이 강했던 이전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확고했으며, 비교적 변화의 속도와 양상이 제한적인 농경사회에 있어서는 일단 확립된 이러한 노인의 권위가 별다른 변화없이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회적 존경의 중요한 요소이며 일정한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유교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력이나

개인의 인품, 가문의 존중같은 추상적·정신적 가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점차 빛을 잃어가게 되었다. 물질적 생산성의 증대를 그 일차적 목표로 갖는 산업화 과정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그리고 물질적 생산성 증대에 대한 효율성과 그 성과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산성 증대라는 점에 있어서 그 기여도가 낮은 노인인구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저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기술발전에 기초하는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초기단계에서는 물질이 정신을 압도하여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회전반적인 목표가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일차적 집단에의 욕구가 강해지고, 기타 다른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추상적·정신적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면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족, 친척 등의 일차집단이 오히려 해체·소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정이 수행해 온 역할은, 사회의 분화에 따른 개인화와 인간의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고 있는 노인집단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부정적인 면들을 완화해주고, 또한 노인들의 연대감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정은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노인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지역노인단체로서의 명시적·비명시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또한 친목도모와 여가보내기, 휴식기능 등을 수행하는, 노인들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체계로 기능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정이 그 지역의 노인집단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노인정 참여노인의 집단이 지역사회의 전체 노인집단을 대표하기에는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 2. 노인정의 조직특성

노인정은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노인들의 휴식처로서 존재해 왔다. 노인정이 지역사회 노인조직의 성격을 띠면서 전국적인 조직체계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노인회의 성장과 관련된다.<sup>1)</sup> 즉, 대한노인회의 출범과 함께 노인정이 대한노인회의 산하조직으로서 조직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정은 아직 조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비공식적 조직의 성격에서 공식적 조직으로의 이행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적 조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노인정의 조직적 성숙정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노인정이 효과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요건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적 조직간의 차이는 대체로 다음의 일곱가지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공식적 조직은 자생적 조직인데 반해, 공식적 조직은 그 조직이 갖는 확고하고 제도화된 목적에 의해 탄생된 인위적인 조직이다. 둘째, 비공식적 조직에서는 내면적으로 그리고 비가시적(非可視的)으로 조직의 행동과 태도가 규정되지만, 공식적 조직은 외면적·가시적으로 조직의 행태를 규정짓는다. 셋째,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기구와 체제에 의해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조직인데 반하여, 공식조직은 문서화된 조직이다. 넷째,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친근성이라든지 감정의 소통과 같은 '감정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며, 공식적 조직은 통상 비인정적 관계로 '능률의 논리'에 따라 구성된다. 다섯째, 비공식적 조직은 목표가 불명확하나, 공식적 조직은 그 목표가 명확하다. 여섯째, 비공식적 조직은 조직의 부분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공식조직은 전체적 질서에 의하여 움직인다. 일곱째, 비공식적 조직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소집단화하는 성향이 있는데 반하여, 공식적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sup>2)</sup>.

1) 현두일, "노인과 지역사회," 아산, 제 17호, 여름, 1982, pp. 28~29 참조.

2) 유중해, 현대조직관리, 서울: 박영사, 1988, pp.111~112; 양창삼,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1988, pp. 31~32 참조.

이상의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적 조직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노인정은 '사랑방의 기능'으로 출발했던 초기 노인정의 시기에서보다는 좀 더 공식적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 비공식적 조직과 공식적 조직의 성격이 혼재해 있는 과도기적이고 덜 구조화된 조직으로서 공식적 조직의 전기(前期) 발달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에서 공식적 조직으로의 이행과정을 노인정의 조직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II. 노인욕구 개념으로 본 노인정의 기능

### 1.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노인의 욕구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욕구의 개념을, 노인의 욕구분류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① 경제적 욕구, ② 건강상의 욕구, ③ 사회심리적 욕구의 분류체계로 접근하기로 한다.<sup>4)</sup>

노인정이 기본적으로 동·리의 지역적 단위에서 일정한 공간을 가지고 지역노인의 만남의 장소로서 존재하며, 그리고 각 노인정의 성격과 기능 및 활동범위가 노인정에 모이는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상이하다고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친목이라든지 휴식 및 여가시간 활용 등의 욕구에 집중되어진다고 가정할 때, 노인정의 기능과 관련된 욕구는 주로 사회심리적 욕구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노인정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중 어떠한 욕구부문에 관여해야 하는가

3) Jonathan S. Rakich et al., *Managing Health Care Organizations*,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77, pp. 160~161.

4) 이가옥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 11 참조.

5) 노인의 욕구중 경제적 욕구는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인력고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욕구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상의 욕구는 주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와 같은 의료보장정책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심리적 욕구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Lowy는 노인의 욕구 및 그 하위욕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노인복지서비스체계내에서 노인정이 담당해야 할 사회심리적 욕구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하여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owy는 인간욕구를, ① 생물학적·생리적 욕구, ② 경제적 욕구, ③ 건강상의 욕구, ④ 심리적 욕구, ⑤ 사회적 욕구, ⑥ 활동의 욕구, ⑦ 여가의 욕구, ⑧ 문화적 욕구, ⑨ 정치적 욕구, ⑩ 영적(종교적) 욕구로 분류하고 있다.<sup>6)</sup> 여기에서 Lowy의 '생물학적·생리적 욕구'와 '건강상의 욕구'는 각각 본 연구의 욕구분류에서

<표 2-1>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

심리적 욕구	- 사랑, 반응, 안전, 유용성, 새로운 경험 - 정체감과 지위
사회학적 욕구	- 가족, 동료집단, 비동료집단내에서의 상호작용·역할 - 조직과 사회제도와의 상호작용·역할
활동 욕구	- 직업(취업) - 이동성
여가 욕구	- 오락
문화적 욕구	- 정보, 지식 - 미학 - 놀이
정치적 욕구	- 법적 지위, 보호 - 지역사회 및 국가정치에의 참여
영적(종교적) 욕구	- 존재의 의미 - 미지의 세계(죽음 등)와의 관계

과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욕구는, 경제적 욕구 및 건강상의 욕구충족과는 달리, 현물이나 현금제공의 차원이 아닌 대인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6) Louis Lowy, *Social Work with Aging: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the Later Years*, New York: Harper & Row, 1979, pp. 113~117 참조.

는 '경제적 욕구'와 '건강상의 욕구'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그외의 '심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포함하여 여덟개 욕구는 본 연구에서의 '사회심리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의 구체적 내용은 앞의 <표 2-1>과 같다.

Maslow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그 위계와 순서에 따라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④ 존경의 욕구, ⑤ 자아실현의 욕구로 분류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욕구체계의 상위욕구에 속하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본 연구의 사회심리적 욕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욕구분류에 근거하여, 사회심리적 욕구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두가지 차원의 욕구군으로, ① 목적적 욕구와 ② 수단적 욕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즉, 사회심리적 욕구중에서 근원적으로 추구되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목적적 욕구'라고 하고, 이의 충족을 위해 수단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욕구를 '수단적 욕구'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이러한 목적적 욕구와 수단적 욕구의 개념으로 볼 때, Lowy가 분류한 심리적 욕구와 사회학적 욕구내에서의 하위욕구 요인인 애정, 유용성, 새로운 경험, 상호작용의 욕구라든지, Maslow가 보는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은 근원적인 사회심리적 욕구(목적적 욕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가 욕구, 문화적 욕구, 활동 욕구, 정치적 욕구, 종교적 욕구는

7) Louis Lowy, 위의 책, pp. 116~117 참조(이가옥외, 앞의 책, p. 1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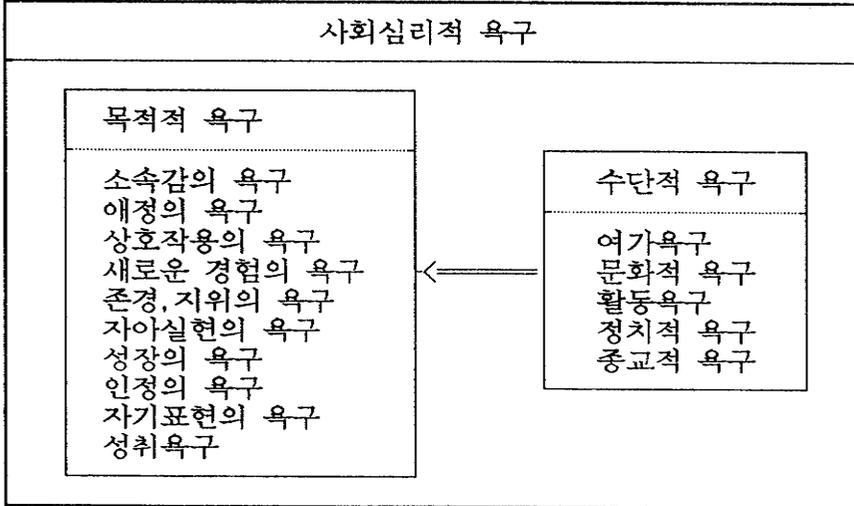
8) A.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pp. 80~90 참조.

9) 사회심리적 욕구를 의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가정에 대한 욕구, 국가·사회에 대한 욕구, 집단참여에 대한 욕구, 다양한 흥미를 가지려는 욕구로 분류하기도 한다(아산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pp. 182~194 참조).

10) 이렇게 볼 때, 하나의 목적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수단적 욕구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욕구라는 목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가정에 대한 욕구(수단적 욕구)가 생길 수도 있으며, 또한 집단활동에 대한 욕구(수단적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

근원적인 사회심리적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적 욕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표 2-2> 참조).

<표 2-2> 목적적 욕구와 수단적 욕구와의 관계



### 3.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노인정은 법적으로 노인 여가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목적을 노인들의 친목도모나 취미·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노인정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노인정에서 담당해야 할 욕구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중 여가활동의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목적적 욕구)가 여가활동이라는 수단적 욕구를 통하여 그 충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정이 광범위한 여가활동욕구의 모든 범주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노인정의 기능과 관련된 여가활동의 욕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Havigurst는, 노인과 관련되는 여가활동으로 쾌적한 가

11) 보건사회부, 노인복지법령, 1991, p. 29.

정조성활동, 가족생활활동, 교회활동, 시민정치활동, 사회클럽활동, 친구관계, 취미·오락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노인정과 관련되는 노인의 여가활동욕구로는 시민정치활동, 사회클럽활동, 친구관계, 취미·오락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佐野豪는 노인들이 갖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 일본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서 즐기는 내용 또는 앞으로 그들을 위해 개발할 만한 내용으로,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TV보기), 음식(요리), 실내게임, 종교적 활동, 문학적 활동, 역사적 활동, 미술적, 공예적, 수예적, 음악적, 무용적, 사교적(친구방문, 클럽활동), 자연과의 접촉, 건강·스포츠, 야외활동, 사회봉사활동, 시민운동(지역사회활동), 어린이와 놀아주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여가활동중 노인정과 관련되는 여가활동은 종교적 활동을 제외한 전분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또한 Kaplan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덟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려는 욕구, ② 여가를 친구들과 같이 보내려는 욕구, ③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④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욕구, ⑤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해보려는 욕구, ⑥ 적절한 정신적인 자극을 가져 보려는 욕구, ⑦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는 욕구, ⑧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만족을 얻어 보려는 욕구를 들고 있다.<sup>14)</sup> 그리고 Corbin과 Tait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여가는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며, 또한 개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다시 말하면, 여가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속감이나 성취감, 상

12) R. J. Havigurst, "Leisure and Aging", in Hoffman, A. M. and Bechill W. O. (eds.), *The Daily Needs and Interest of Old People*, Charles C. Thomas, 1970.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재, 1989, p. 204에서 재인용).

13) 佐野豪編著, *高齢者のレクソエ-シ ヲ*, 泰流社, 1980, pp. 58~63. (오준식, "노인의 여가선용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pp. 31~32에서 재인용).

14) M. Kaplan, "The Uses of Leisure," in C. Tribbitts(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1960, p. 409. (최순남, *앞의 책*, p. 205에서 재인용).

15) H. Dan Corbin & W. J. Tait, *Education for Leisure*, Englewood Cliffs:

호작용, 성장, 인정 등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정이 담당해야 할 여가활동욕구의 하위욕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Kourt의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 분류유형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sup>16)</sup> 다음의 <표 2

<표 2-3> 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분류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림, 공예</li> <li>- 글쓰기, 강의</li> <li>- 토론, 집단활동 등</li> </ul> </li> <li>◦ 지도력의 기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advocacy) 훈련</li> <li>- 프로그램 지도 등</li> </ul> </li> <li>◦ 여가(recreation)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교모임</li> <li>- 여행 등</li> </ul> </li> <li>◦ 자원봉사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자원봉사조직</li> <li>- 지역사회 자원봉사조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로의 접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제공</li> <li>- 의뢰</li> <li>- 교통수단 제공 등</li> </ul> </li> <li>◦ 건강 및 영양공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교육, 영양교육</li> <li>- 집단급식, 가정배달급식 등</li> </ul> </li> <li>◦ 재가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행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li> <li>- 집수리, 월동준비 서비스 등</li> </ul> </li> <li>◦ 소득보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품 상점 운영</li> <li>- 직업훈련 서비스 등</li> </ul> </li> <li>◦ 정보 및 원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세금, 주택, 법률정보</li> <li>- 사회보장제도 정보 등</li> </ul> </li> <li>◦ 대인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개입, 개인상담</li> <li>- 집단상담 등</li> </ul> </li> <li>◦ 특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보호</li> <li>- 예방적 서비스 등</li> </ul> </li> </ul>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urt는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활동 프로그램 (activity program)'과 '서비스 프로그램(service program)'으로 분류했다.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개인적인 풍요로움이나 충만감,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노인복지센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노

Prentice-Hall, Inc., 1973, p. 13. (임길상, '농촌노인들의 일과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79, p. 14에서 재인용).

16) John A. Kourt, "Rural-Urban Differences in Senior Center Activities and Services", The Gerontologist, Vol. 27, No. 1, 1987, p. 93 참조.

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각각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의 수단적 욕구개념과 관련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 프로그램은 목적적 욕구개념과 관련된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Kourt의 분류모형은 노인정이 담당해 나가야 할 욕구와 관련하여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여가활동의 분류에 비추어 볼 때, 노인정과 관련된 노인 여가활동욕구는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4> 노인의 여가활동욕구

여가활동의 욕구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중 수단적 욕구)
휴식의 욕구
교육적 욕구
문화적 욕구
취미·오락의 욕구
리더쉽기회의 욕구
자원봉사활동의 욕구
친목모임의 욕구
시민운동의 욕구

이제까지 노인정이 전체 노인복지체계내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노인 욕구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정이 담당해야 할 노인욕구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노인정이 전체 노인복지체계내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인정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였으며, 따라서 노인정은 노인의 여가활동욕구에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노인정의 경우,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시설, 재정, 인력 등)이 부족하여 노인정의 기능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중 노인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욕구는 상위 노인복지서비스 기관(예: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

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욕구 및 건강상의 욕구가 최소한의 정도로도 충족되고 있지 못한 현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노인정이 이러한 욕구보다는 상위개념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욕구 충족은 기본적으로 하위욕구의 충족이 없는 상위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노인정의 기능정립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분리되어 추구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정은 노인들에게 그들의 경제적·건강상의 기초욕구 충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는 지역사회내의 소득보완 프로그램 및 보건·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 Ⅲ. 노인정 활성화의 개념

#### 1. 활성화와 참여증진의 개념

집단이나 조직의 '활성화'란 개념은<sup>17)</sup>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조직의 성격, 외부상황 등에 따라 활성화 방안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란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노인정이 전체노인복지체계내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한다. 즉, 노인정 활성화의 개념을 특정한 노인욕구의 해소·완화과정<sup>18)</sup>

17) 활성화란 개념이 집단이나 조직과 관련되어 따로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달성정도에 따른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개념, 구성원의 조직에의 참가라는 관점에서의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기업조직이나 정치조직에서 기존 구성원의 조직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의 동기론, 의사결정론 등이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러한 활성화 개념의 논의 및 가정이 노인정과 같은 성격의 조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18) 욕구의 해소·완화과정에는 ① 욕구의 파악·인식, ② 해소·완화해 나갈 욕구의 결정, ③ 욕구의 해소·완화방안들의 대안 모색, ④ 여러 대안중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가능한 대안의 선택, ⑤ 대안의 집행, ⑥ 결과의 평가와 환류

있어서 노인정이 기여하는 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인정의 조직기능(노인정이 담당해 나가야 하는 노인육구의 해소·완화기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을 노인정의 활성화 개념으로 보고, 그러한 노인정 활성화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노인정에의 참여도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노인정 참여도 증진의 개념을 노인정 활성화라는 목적에 대한 가시적 목표달성의 평가수단의 개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정 참여 및 활성화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상세히 연구하기에는 노인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자료가 크게 부족한 현실이어서 우선 노인정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정 집단·조직적 면에서의 참여도 증진개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노인정의 활성화는 참여도의 증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참여도 증진이란 노인정 참여자 수의 증가와 참여강도의 증대라는 두개의 구성개념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노인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먼저 참여개념 및 참여유도를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① 노인정 조직에 지역사회 노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sup>19)</sup>과 ② 조직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feedback)의 과정, ⑦ 이에 관련된 지역환경, 자원동원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9)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노인정에의 참여정도에 따라서 ① 적극적 집단, ② 중간적 집단, ③ 소극적 집단, ④ 한번도 노인정에 가 본 적이 없는 노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노인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집단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기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중요성을 가지리라고 생각된다: ①~④ 노인집단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특히 ④의 노인집단에 있어서는 그 불참여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하는 노인집단은 어떠한 계층들이며, 또한 이들은 노인정 활성화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조직참여의 동원방법

Herbert & Irene는 사회적·정치적 활동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라는 의미로서의 효과적 동원방법(tactics of mobilization)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먼저 조직참여의 동원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5>와 같은 주기를 형성하게 된다. 먼저 지역주민이 그들의 지각욕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각욕구(felt needs)란 참여자나 잠재적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이 주민의 지각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면 조직참여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증대는 공통된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또다른 욕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욕구를 명료화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주민의 조직참여 결심을 유도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조직참여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표 2-5> 조직형성의 과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각욕구 -&gt; 조직형성의 명분제공 -&gt; 조직</li><li>○ 조직 -&gt; 욕구충족의 기회제공 -&gt; 또다른 지각욕구의 발견</li><li>○ 지각욕구의 충족 -&gt; 최초의 조직참여 결심강화 -&gt; 조직의 형성</li></ul> |
|---|

조직참여를 위한 동원방법은 크게, ① 기존 지역사회 구조의 활용, ② 개별적 주민설득, ③ 조직참여 결심의 유도로 구분될 수 있다. Herbert & Irene는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존 사회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내용으로는 다음의 네가지 방법이 있다. ① 현존하는 조직중 공통관심을 가진 조직이나 집단을 파악해 이러한 조직과 공동작업을 하는 방법, ② 조직의 목표에 이미 관심

20) Herbert J. Rubin & Irene Rubin, Community Organizing & Development, Columbus: Merrill Publishing Co., 1986, pp. 131~156 참조.

을 가진 집단(예: self-help group)을 찾아내어, 그 조직을 활용·조직화하는 방법, ③ 지역사회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 및 여론조성자(opinion leader)를 발견·활용하는 방법, ④ 지역사회내 조직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사회적 유대나 응집력을 지닌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방법이다.<sup>20)</sup>

둘째, 조직참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기술에는 일곱가지 방법이 열거되고 있다. ① 우선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접촉하는 것, ② 시장이나 다방 등에서 주민들과 편안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것, ③ 지역사회내 지지망(networks)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쉽게 사귀는 것,<sup>21)</sup> ④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문제(삶, 희망, 꿈 등)에 대한 감정파악을 위하여 경청하는 것, ⑤ 대화과정에서 조직에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⑥ 조직의 기본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논쟁은 비효율적이므로, 조직에 대한 기본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심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 ⑦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인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sup>22)</sup>

셋째, 조직참여의 결심을 유도하는 기술로는 세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① 주민동원을 위하여 공동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방법,<sup>23)</sup> ② 각종 기획사업(바자회, 전시회 등)을 전개하는 방법, ③ 조직참여를 통한 성공경험, 즐거움의 경

21) 지역사회의 통합감(common identity)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와 자신들을 동일화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사교적 모임, 축제, 야유회 등의 주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위의 책, pp. 139~142).

22)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사회내에 있는 여러 하위집단(종교, 기업, 정치, 사회집단 등)의 지도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들의 승인하에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위의 책, p. 144).

23) 이러한 혜택(incentives)에는 물질적 혜택(물건, 사회적 서비스 등), 결속 관련 혜택(사회화, 친화성, 집단소속감의 결과인 지위 등), 표현적 혜택(이념적인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공약의 표현기회)가 있을 것이다(위의 책, p. 149).

24) 이러한 공동모금운동은 이를 통해 조직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직을 위해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조직참여의 결심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참여증진의 유용한 기술이 되고 있다(위의 책, p. 152~153).

험, 조직참여에 대한 자부심 등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민의 조직참여 결심을 단계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조직참여가 노인에게 주는 잇점들로, 첫째로 친구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둘째로 집단이 노인에게 자기자신과 가족보다는 더 큰 소속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 셋째로 지위와 인정(認定)의 욕구를 집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음으로써, 자존감(self-esteem)을 재구성하고 유지시켜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조직참여에 대한 설명은 노인정 참여가 노인들에게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3. 조직참여의 영향요인

노인정이 현재 조직의 성격상 공식적 조직화를 향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으며, 그 구체적 목표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직적 측면에서 노인정을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직의 성격상 목적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조직이 아니므로 결국 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고자 하는 성과는 있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조직참여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토하려 한다.

조직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①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sup>26)</sup>, ② 관리 및 조직적 특성, ③ 외적 영향요인의 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sup>27)</sup> 조직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국내외 여러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그 세부요인을 <표 2-6>

25) 아산사회복지재단, 앞의 책, pp. 192~193 참조.

26)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참여자는 비참여자에 비해 사기나 생활만족도가 높다; ② 우울증은 노인복지센터의 불참 또는 참여증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욕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다; ④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신체적 건강은 참여와 불참을 결정짓는 주요요인으로 가장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건강이 참여의 절대적인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통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⑥ 중류층에 비해 하류층일수록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참여가 적다; ⑦ 친구나 사회적인 지지망을 통해 노인복지센터에 접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노인정 참여증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7) 김석희,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2, pp. 47~48.

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2-6> 조직 효과성의 영향요인

개인적 특성	내적 요인	사기 생활만족도 우울정도 욕구 및 관심
	외적 요인	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 교육수준 수입 사회적 지지망 여가시간
관리 및 조직적 특성		리더쉽(leadership) 기관·시설 조직의 전달체계 서비스 내용(programs)
외적 영향요인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조치 정책

조직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과 관련하여, White는 조직참여의 주요배경으로 개인의 '애정 또는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affection or competence motivation)'를 들고 있다.<sup>28)</sup> 결국 참여자 개인의 이해관계는 자신의 욕구와 그 충족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참여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목표와 욕구를 바탕으로 한 동기의 만족을 위해 조직에 참여하고 공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의 추구가 참여자의 동기를 만족시켜 주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29)</sup> 이는 노인정 참여증진과 관련하여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노인들의 노인정 참여증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노인정이 노인들의 애정 및 능력향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개발·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8) Bernhard Wilpert, "Particip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in Bernard M. Bass & Pieter J. Drenth(eds.), *Advances in Organizational Psycholog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7, p. 233에서 재인용.

29) 이승현, "조직유효성의 기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pp. 32~35 참조.

## 제 3 장 노인정 운영 및 이용실태

### I. 노인정 조직체계 및 현황

#### 1. 노인정 조직체계

##### 1) 중앙조직

우리나라 전체 노인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인 대한노인회는 중앙회,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및 일선 노인정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공식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노인회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사단법인)이다. 대한노인회는 중앙조직인 중앙회와 지방조직인 연합회, 지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능력은행이나 공동작업장을 통한 소득보완사업,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를 통한 노인교육사업, 그리고 노인정을 통한 노인여가활용사업 등을 총괄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중앙회의 임원구성에 있어서는 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사(15~30인) 및 감사(2인)로 되어 있으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사무총장, 기획국, 운영국, 총무국)를 두고 있다. 각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이루어 진다.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각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회장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기본재산 수입금,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정부(보건사회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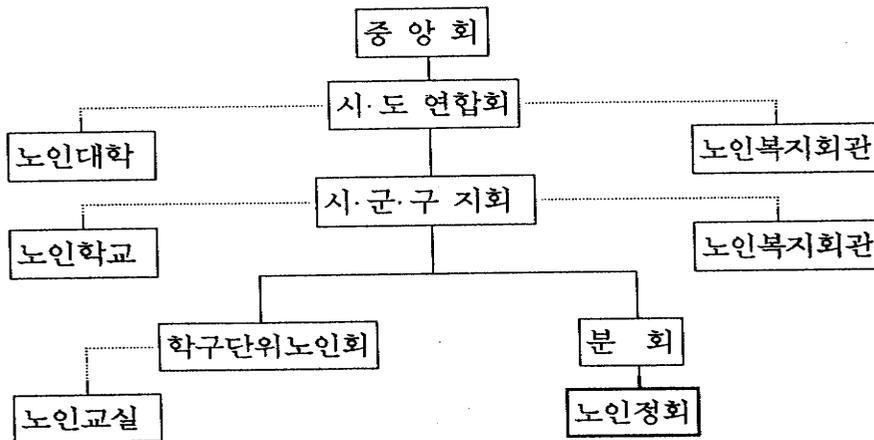
##### 2) 지방조직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으로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에 전체 15개의 연합회를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시·군·구별로 총 266개의 지회를 두며, 읍·면·동에 분회(1991년 4월말 현재 3,826개소)를 두고, 일선조직으로는 노인정(경로

당) 및 학구단위 노인들이 있다.

연합회에는 노인대학을 부설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회에는 노인학교를 부설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991년 4월을 기준으로 노인대학은 18개소이며, 노인학교는 261개소로 되어 있다. 각급 지방조직은 지역실정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어,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대표적 노인정에 분회 사무실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조직의 사무소는 해당지역의 행정기관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조직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이상 4인 이내, 이사(10~30인), 감사 2인을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해당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은 지역사회에 덕망있는 인사로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연합회 및 지회장의 임명은 중앙회장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분회장, 노인정회장, 학구단위노인회장은 지회장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각 조직의 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지회장 이하의 각급회장은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하다.<sup>1)</sup> 이러한 중앙 및 지방조직체계를 나타내면 다음의 [도 3-1]과 같다.



[도 3-1] 노인정의 조직체계

1)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령·정관·운영규정집, 1991.

### 3) 노인정

조직체계상 최일선조직인 노인정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면, 노인정의 회장은 회원중에서 총회를 거쳐 선출되며, 선출된 회장은 지회장의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노인정의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2~4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정의 운영비 조달은 규정상 각종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 정부지원금<sup>2)</sup>, 그리고 기타 수입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체계상 각 노인정(학구단위 노인회, 분회도 포함)은 소속 지회에 월 1천원 이상의 회비를, 그리고 각 지회는 연합회에 월 2천원 이상의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회는 중앙회에 월 5천원 이상의 월례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정의 회계보고에 있어서는 상급조직인 해당 지회에 매년 ①재산목록, ②전년도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③신년도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감사는 소속회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3)</sup>

## 2. 노인정 현황

### 1) 노인정 분포

우리나라 전체 노인정의 지역별, 형태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1992년 4월 조사당시 각 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0,068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는 월 2만원의 운영비 및 월 연탄 500장 기준의 난방연료비(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2)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재정능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노인정 당 월 8~9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구고, 지방비를 포함하는 지원금은 대부분의 경우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은행을 통해 각 노인정에 전달되고 있다.

3)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령·정관·운영규정집, 1991.

1983년의 8,946개소<sup>4)</sup>에 비해 124% 정도 증가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정의 증가현상은,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 뿐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의 전반적인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 노인들의 여가활용의 욕구가 증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 노인정 분포현황 (1992.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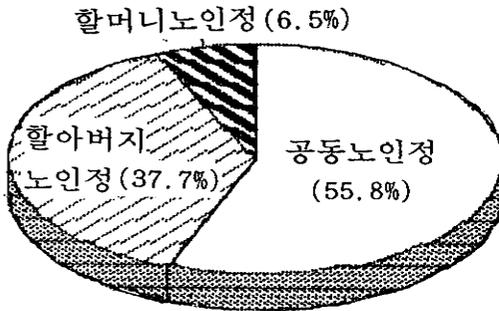
지역	노인정수	노인정 형태			주거형태		등록 회원수 (명)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	일반형	아파트형	
서울	1,455	335	169	951	1,014	441	95,776
부산	822	316	195	311	658	164	33,624
대구	397	108	66	223	289	108	23,868
인천	391	57	8	326	197	194	21,275
광주	287	91	37	159	215	72	14,698
대전	345	80	27	238	274	71	15,928
경기	2,956	916	90	1,950	2,627	329	131,256
강원	1,049	215	41	793	980	69	49,066
충북	1,901	803	127	971	1,811	90	76,980
충남	2,204	854	43	1,307	2,151	53	97,637
전북	1,872	1,155	95	622	1,812	60	74,680
전남	1,589	651	92	846	1,553	36	120,427
경북	2,330	1,022	143	1,165	2,247	83	128,107
경남	2,387	960	182	1,245	2,267	120	127,353
제주	83	-	-	83	83	-	11,907
계(개소)	20,068	7,563	1,315	11,190	18,178	1,890	1,022,582

전국의 노인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전국의 약 14.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경남(11.9%), 경북(11.6%), 충북(9.5%)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7.3%, 가장 적은 제주도의 경우 약 0.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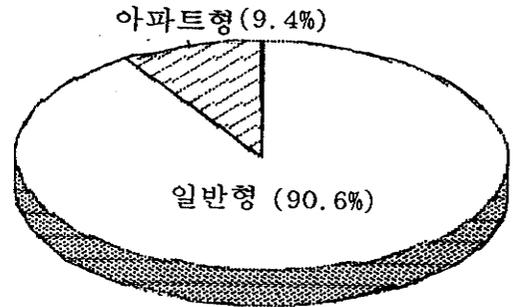
4) 박재간 외, 노인여가시설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4, p. 5.

## 2) 노인정의 형태

노인정의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① 할아버지 노인정, ② 할머니 노인정, ③ 공동노인정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정의 운영형태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도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노인정은 남녀 노인 모두 이용하고 있는 노인정으로 전체적으로 55.8%로 가장 많았으며, 할아버지 노인정은 37.7%, 여자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할머니 노인정이 가장 적어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 3-2] 운영형태별 구성비



[도 3-3] 주거형태별 구성비

한편 주변의 위치에 따른 노인정 구분에 있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나 상가에 위치한 ① 일반형과,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② 아파트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도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형이 전체적으로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형은 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인정 등록노인수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1백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5)</sup> 대체로 1990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30%, 65세 이상의 약 44%가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5)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으로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볼 수 있다. 이들 전체 등록노인수를 전체 노인정수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개 노인정에 약 50여명의 노인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을 등록되어 있는 노인을 시·도별로 보면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노인정의 수에 따라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경기도가 1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북(12.5%), 경남(12.5%), 전남(11.8%)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은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가 가장 적어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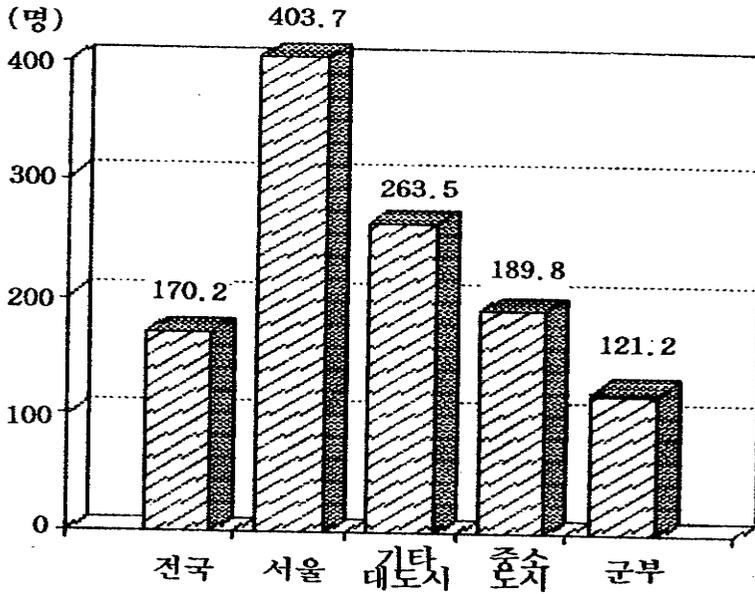
<표 3-2> 노인정 구성비 및 등록노인 구성비

지 역	노인인구 구성비(%)	노 인 정 구성비(%)	등록노인 구성비(%)
서울	17.2	7.3	9.4
부산	6.3	4.1	3.3
대구	3.9	2.0	2.3
인천	2.9	1.9	2.1
광주	2.1	1.4	1.4
대전	2.0	1.7	1.6
경기	12.7	14.7	12.8
강원	4.4	5.2	4.8
충북	4.6	9.5	7.5
충남	7.0	11.0	9.5
전북	6.7	9.3	7.3
전남	8.8	7.9	11.8
경북	10.4	11.6	12.5
경남	9.6	11.9	12.5
제주	1.4	0.4	1.2
계	100.0 (3,415천명)	100.0 (20,068개소)	100.0 (1,022,582명)

\* 지역별 60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속보(1991) 참조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서울,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으로 묶어 단위 노인정에 대한 노인인구비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도 3-4]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정이 부족한 반면, 군부(농어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보다 노인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인수에 비해 노인정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정 점유비는 서울,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의 순으로 낮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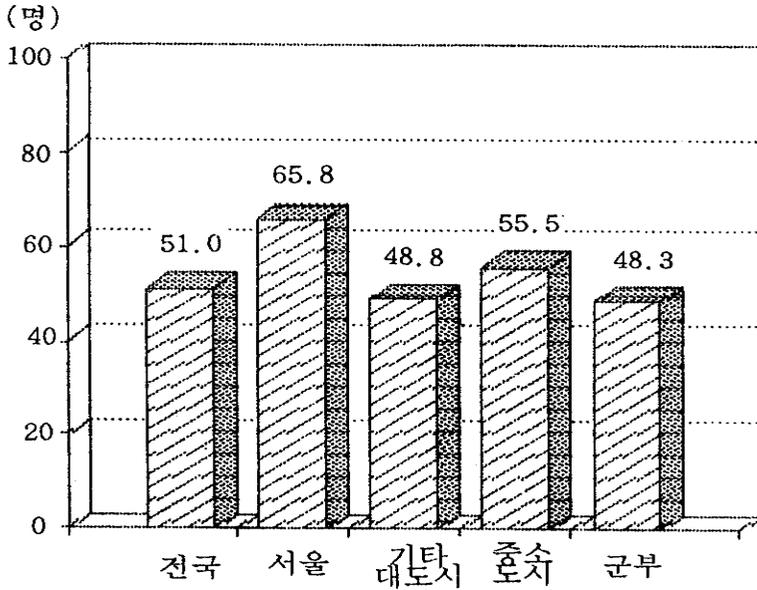


[도 3-4] 노인정 1개소당 지역별 평균 노인인구수

이와 함께 실제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와 노인정 수, 즉 노인정 1개소당 평균 등록노인수를 비교해 보면 [도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 노인정에 전체적으로 약 51명이 등록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노인정 1개소당 약 66명으로 가장 많아서 기타 중소도시나 군부에 비해 이용밀도가 높은 것을 알

6) 각 지역의 면적을 기초로 노인정의 분포를 비교하면, 서울이 평균 0.4km<sup>2</sup>당 1개로 가장 조밀하고, 경기도는 3.6km<sup>2</sup>당 1개, 제주도는 21.9km<sup>2</sup>당 1개로 가장 덜 조밀한 것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거리상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타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노인정이 가장 많아서 접근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등록노인 수만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는 전체노인중 약 30%의 노인들이 등록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 노인의 16% 정도, 그리고 기타 대도시의 경우는 전체노인의 약 18%, 중소도시는 약 29%, 그리고 군부의 경우에는 약 39%의 노인들이 노인정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율만으로 보면 군부, 중소도시, 기타 대도시, 서울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 3-5] 노인정 1개소당 평균 등록노인수

## II. 노인정 운영자 일반속성

본 연구대상인 노인정 운영책임자(노인정 회장)의 일반적 사항을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재임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운영책임자의 일반속성

일반속성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성 별(N= 2,083)					
남	93.0	86.1	84.1	87.4	96.8
여	7.0	13.9	15.9	12.6	3.2
연 령(N= 2,069)					
60~69세	22.7	16.8	22.9	22.9	23.0
70~74세	41.2	40.6	39.2	39.2	41.9
75~79세	25.2	28.7	26.3	26.3	24.8
80세 이상	10.9	11.3	11.6	11.6	10.3
교육정도(N= 2,045)					
무 학	5.0	2.8	3.6	3.7	5.8
서 당	24.2	8.5	21.8	20.0	27.5
국민학교	41.1	27.0	32.7	40.5	44.2
중학교	15.4	21.3	22.3	15.7	13.6
고등학교	11.3	30.5	14.5	14.9	7.7
대학이상	2.8	9.9	5.0	5.1	1.1
재임기간(N= 2,045)					
1년 이하	19.5	19.3	28.7	25.0	16.6
2~3년	37.4	36.4	36.8	34.4	38.5
4~5년	20.5	20.7	16.6	19.1	21.6
6~9년	12.9	19.3	9.4	12.4	12.9
10년 이상	9.7	4.3	9.4	9.1	10.5

\* 각 항목별 무응답 제외

1. 성별 분포

노인정 운영자는 <표 3-3>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남자노인이 93.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노인은 불과 7.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정중 할머니 노인정이 약 6.6% 정도에 불과한 점, 그리고 본 조사대상 결과에서 할머니 노인정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남자와 여자노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노인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노인정의 운영을 여자 노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공동노인정의 2.0%를 차지하여 이 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남자노인에 의한 노인정 운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여자노인이 노인정 운영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고(약 14%~16%), 반대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자노인이 운영책임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3.2%)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정이 증가하였고, 이 증가에 따라 할머니 노인정이 많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2. 연령 분포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70~74세의 중고령 계층이 가장 많아 4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현상과 또한 연장자 우대의 관습 등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 다른 노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륜이 있고 또한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70대 초반 계층이 노인정 운영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노인정 운영자의 평균연령은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73.0세였는데, 지역별로 운영자의 평균연령을 알아본 결과는 서울이 73.9세로 가장 높았고, 군부가 72.9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노인정 형태별 운영자의 평균연령은 할아버지 노인정이 가장 높아서 73.6세인 반면 할머니 노인정 운영자는 71.8세였고 공동노인정 의 경우는 72.9세로 나타났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 평균연령 <sup>1)</sup>	형태별 평균연령 <sup>2)</sup>	
전 국	전 체	73.0
서 울	할아버지 노인정	73.6
기타대도시	할머니 노인정	71.8
중소도시	공동 노인정	72.9
군 부		

- 1) 무응답 30명 제외
- 2) 무응답 36명 제외

### 3. 교육정도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학교 졸업 또는 중퇴가 가장 많아 4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는 서당 24.2%, 중학교 15.4%의 순이었으며, 대학이상은 2.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국민학교 졸업 또는 중퇴인 것<sup>7)</sup>과 비교해 볼 때, 노인정 운영자의 교육정도가 일반노인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교육정도에 있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운영자들의 교육수준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4. 재임기간

노인정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 원칙적으로 임기는 3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8)</sup> 운영자들의 재임기간은 전체적으로 4년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서울이 가장 짧은 반면(평균 3.8년), 군부의 경우 운영자의 평균 재임기간이 가장 긴 것(평균 4.3년)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정의 형태에 따른 운영자의 재임기간에 있어서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할아버지 노인정의 재임기간이 4.4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할머니 노인정이 3.8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대도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할머니 노인정이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운영자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인정 운영자의 성별 재

7)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속보, 통계청, 1991. pp. 52 - 53 참조.

8)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령·정관·운영규정집, 1991.

〈표 3-5〉 운영책임자 평균재임기간 (단위: 년)

지역별 평균재임기간 <sup>1)</sup>		형태별 평균재임기간 <sup>2)</sup>	
전 국	4.2	전 체	4.2
서 울	3.8	할아버지 노인정	4.4
기타대도시	4.0	할머니 노인정	3.8
중소도시	4.0	공동 노인정	4.1
군 부	4.3		

- 1) 무응답 54명 제외  
2) 무응답 63명 제외

임기간에 있어서도 남자노인인 경우 평균 4.2년, 여자노인이 운영자인 경우에는 평균 4.0년이였다. 지역별 및 형태별 노인정 운영자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표 3-5>와 같다.

### Ⅲ. 노인정 시설현황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노인정의 일반적인 시설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정시설에 관한 일반사항을 설립년도, 시설규모, 노인정의 위치, 건물형태, 독립성 여부, 건축비 부담의 내용별로 살펴보고 또한 노인정에서 어떤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노인정 설립년도

우리나라에서 노인정이 처음 생긴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정자 또는 사랑방의 형태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정은 이러한 정자나 사랑방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한 6.25이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조사대상 노인정이 설립된 시기를 보면, 대체로 1980년대에 집중되어 있다. <표 3-6>에 나

9)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p. 620.

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전체 노인정중 과반수가 넘는 58.5%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 약 20%, 1990년 이후에는 약 14%였고, 1969년 이전에는 7% 정도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80년대 들어서 노인정이 급증한 것은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70년대 이룬 경제적 발전과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노인의 욕구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증대에 따라 국가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그 밖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노인정 설립이 늘어난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노인정 설립년도에 있어서는 중소도시나 군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80년대에 생겨난 노인정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981년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의 형태에 따른 설립년도를 알아보면, <표 3-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할아버지 노인정에 비해 할머니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1969년 이전에는 한 곳도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체 할머니 노인정의 2/3를 상회하는 수의 노인정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 이후에 설립된 노인정도 23.4%나 되었다.

이처럼 아직 할아버지 노인정에 비해 절대수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만, 그 증가양상을 놓고 볼 때, 이런 경향은 여성노인의 구성비가 높고, 또한 평균수명

<표 3-6> 노인정 설립년도

설립년도	전 체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공동노인정
1969년 이전	7.4	12.7	-	5.3
1970~79년	19.6	22.7	7.2	19.1
1980~89년	58.6	58.1	69.4	57.8
1990년 이후	14.4	6.4	23.4	17.8
계 (개소)	100.0 (1,998)	100.0 (652)	100.0 (111)	100.0 (1,235)

\* 무응답 101개소 제외

이 남자에 비해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증가추세가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 형태별 설립년도를 알아본 결과 할아버지 노인정이 1980년에 가장 많이 생긴데 반해 공동노인정은 대략 1983년, 할머니 노인정은 1986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노인정의 평균 운영기간은 전체적으로 약 10년, 할아버지 노인정은 약 12년, 할머니 노인정은 약 6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2. 노인정 규모

### 1) 대지규모

노인정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노인정의 대지면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전체적으로 30~59평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9평 이하가 약 2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의 노인정이 60평 이하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지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전체 노인정의 80%를 상회하는 노인정이 60평 이하의 대지면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중소도시나

<표 3-7> 노인정 대지규모

대지규모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29평 이하	27.8	36.6	44.0	31.3	23.2
30~ 59평	34.1	42.0	37.2	37.4	31.9
60~ 89평	14.2	9.9	8.4	13.5	15.8
90~119평	10.7	5.3	5.2	7.5	13.1
120평 이상	13.1	6.1	5.2	9.7	16.1
계 (개소)	100.0 (1,819)	100.0 (131)	100.0 (191)	100.0 (318)	100.0 (1,179)
평균면적(평)	68.1	48.1	46.9	56.3	76.9

\* 무응답 280개소 제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넓은 대지에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의 지가(地價)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노인정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인다. 지역별 노인정의 평균 대지면적을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68.1평이었으며, 서울이 48.1평, 중소도시 56.3평, 농어촌은 76.9평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의 형태에 있어서도 대지면적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균적으로 할아버지 노인정이 68.4평, 공동노인정이 69.4평인 반면, 할머니 노인정은 47.7평으로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건물규모

노인정의 건물규모는 공식적으로 최소한 15m<sup>2</sup>(약 4.5평)의 휴게실 또는 거실을 갖추어야 설치·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0)</sup>. 현재 우리나라 노인정의 건물규모는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2/3의 노인정이 30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 건물규모에 있어서는 대지규모에서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의 경우 20~29평 규모가 대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지역과 달리 넓은 평수를 가진 노인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50평 이상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지역과 달리 높은 지가로 인해, 노인정의 대지면적은 좁은 대신, 고층건물을 입주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앞서 노인정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위노인정별 이용노인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히 건물규모가 클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 건물규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할머니 노인정에 비해 이용노인이 많은 공동노인정의 면적이 대체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지역별 노인정의 평균 건물면적을 알

10) 보건사회부, 경로당 관리운영지침, 1989.

<표 3-8>

노인정 건물규모

건 평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타		
9평 이하	11.4	4.4	12.2	14.2	11.3
10~19평	30.5	15.3	33.8	30.3	31.7
20~29평	30.3	28.5	24.4	26.1	32.8
30~39평	13.6	17.5	12.7	14.4	13.1
40~49평	6.0	14.6	8.9	5.8	4.5
50평 이상	8.2	19.7	8.0	9.2	6.7
계 (개소)	100.0 (1,942)	100.0 (137)	100.0 (213)	100.0 (360)	100.0 (1,232)
평균면적(평)	24.6	34.6	27.2	24.2	23.1

\* 무응답 157개소 제외

아본 결과 전체 평균은 24.6평이었으며, 서울은 34.6평, 기타 대도시는 27.2평, 중소도시 24.2평이었고, 농어촌 지역이 가장 적어서 23.1평이었다. 노인정 운영 형태별 건물면적은 공동노인정이 가장 넓어 26.1평, 할아버지 노인정이 22.7평 인 반면,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18.3평으로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노인정의 위치

노인정의 주변위치가 어떤지를 그 주변 위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단독주택 지역에 대부분(83.2%)의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지역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연립이나 상가지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노인정의 위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노인정이 전체의 약 39%에 이르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아파트에 위치한 노인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비중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이 절대 다수(9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노인정의 위치

주변위치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단독주택	83.2	51.4	59.8	70.0	94.5
아파트	11.1	39.1	32.0	21.4	1.5
연립주택	2.3	2.9	2.7	4.9	1.4
상 가	2.8	2.2	5.0	3.0	2.4
기 타	0.6	4.3	0.5	0.8	0.2
계 (개소)	100.0 (2,001)	100.0 (138)	100.0 (219)	100.0 (370)	100.0 (1,274)

\* 무응답 98개소 제외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노인정의 위치와 관련해서 공동주택형 노인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노인정의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를 비롯한 아파트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아파트형 노인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노인정 형태별 위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에는 약 90%, 공동노인정은 약 81%가 단독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은 66% 정도였고, 아파트 지역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증가와 더불어 할머니 노인정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건물형태 및 독립여부

노인정의 건물형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표 3-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가 약 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멘트나 벽돌구조가 19.4%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허가 가건물이 11.1%를 차지

11) 건설부, 주택건설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1991.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형태를 지역별로 세분해서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노인정의 경우 콘크리트 건물이 가장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무허가 가건물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서울 17.6%, 기타 대도시 21.1%)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라 하더라도 도시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재개발 지역인 경우 비닐하우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타'가 많은 것은 과거 정자로 사용하던 목재건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정의 운영형태별 건물형태에 있어서는 공동노인정의 경우

〈표 3-10〉 노인정 건물형태

건물형태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균 부
		서울	기 타		
콘크리트	60.8	71.1	57.4	60.9	60.3
시멘트/벽돌	19.4	10.6	19.3	21.2	19.9
무허가 가건물	11.1	17.6	21.1	12.9	8.1
기 타	8.7	0.7	2.2	5.1	11.8
계 (개소)	100.0 (2,012)	100.0 (142)	100.0 (223)	100.0 (373)	100.0 (1,274)

\* 무응답 87개소 제외

콘크리트구조가 상대적으로 많고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무허가 가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독립된 건물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표 3-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노인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동회, 마을회관 또는 복지관과 같은 공공건물에서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44.0%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상가나 대여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노인정 독립건물 여부

독립여부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독립건물	48.0	61.5	62.4	51.7	42.9
공공건물부속	44.0	16.8	21.7	34.7	53.5
공동건물	5.9	21.7	14.2	11.1	1.3
기 타	2.1	-	1.8	2.4	2.3
계 (개소)	100.0 (2,057)	100.0 (143)	100.0 (226)	100.0 (377)	100.0 (1,311)

\* 무응답 87개소 제외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 독립성을 갖춘 노인정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공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정의 형태별 독립여부에 있어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건물에서 노인정을 운영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건축비 부담

노인정 건물을 설립할 당시 건축비를 누가 주로 부담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표 3-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 공동부담이 44.1%로 가장 많고 정부부담인 경우가 28.5%,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여 설립한 경우가 13.5%로 각각 나타났다. 즉 노인정의 건축비의 주부담자는 지역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유지 한사람이 노인정을 건립한다기 보다는 누군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의 신축비용을 주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담인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노인정 공간을 마련하거나 노인정 설립요구가 있으면, 기존의 공간을 노인정으로 이용하도록 무상으로 대여해준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노인정 건축비 주부담자

주부담자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정부부담	28.3	46.4	28.2	32.5	25.1
지역공동부담	44.1	25.4	37.0	36.6	49.5
개인독지가	7.1	9.4	6.9	7.7	6.6
회원모금	13.5	10.9	16.2	12.8	13.5
기 타	7.1	8.0	11.6	10.4	5.2
계 (개소)	100.0 (1,970)	100.0 (138)	100.0 (216)	100.0 (366)	100.0 (1,250)

\* 무응답 129개소 제외

건축비 주부담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정부부담이 가장 많고<sup>12)</sup> 지역공동부담이 적는데 비해 서울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에는 지역공동부담이 많고, 정부부담이나 노인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설립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 건축비에 있어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다른 형태의 노인정에 비해 정부부담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노인정 시설 및 설비 현황

노인정의 건물규모와 함께 어떤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두 질문하여 나타난 결과를 노인정의 기본적 시설 및 설비와 여가활용에 필요한 설비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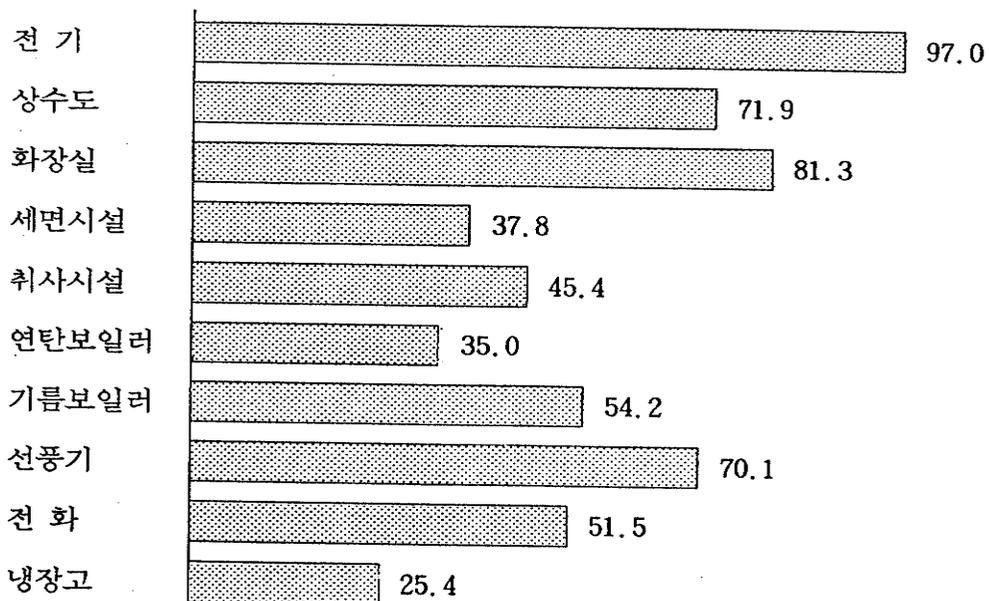
1) 노인정의 기본시설 및 설비현황

노인정의 기본시설 및 설비현황은 [도 3-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대체로 대부분의 노인정(97.0%)이 '전기'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거의

12) 서울시의 경우 구립(區立)노인정이 약 500여개로 전체 노인정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건축비 부담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시설면에서도 타지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없었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71.9%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어 지역별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노인정에서 전기나 상수도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에 있어서는 '화장실'의 경우 약 19%의 노인정이 독립된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면시설'을 갖추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의 약 1/3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70.3%인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 30.9%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이 다른 형태의 노인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정의 위생시설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점심이나 간단한 간식을 조리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있는 노인정은 약 45%였으며, 역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그리고 할머니 노인정일수록 취사시설을 갖춘 노인정이 많았다.



\* 중복응답 비율임

[도 3-6] 기본시설 및 설비 현황\*

이와 함께 노인정의 난방형태에 있어서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노인정이 전체의 35% 정도인 반면,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노인정은 약 54%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연탄보일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대체로 노인정의 난방형태도 과거의 연탄위주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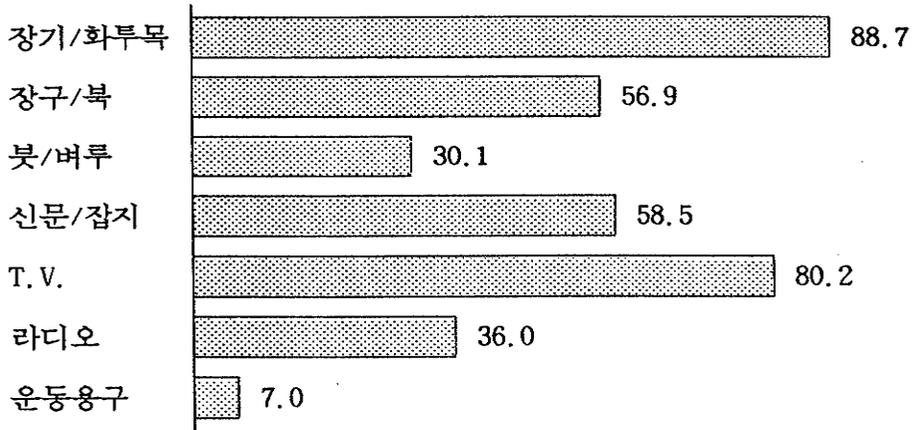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의 구비상황에 있어서는 '냉장고'가 있는 경우는 전체 노인정의 1/4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서울은 75.2%의 노인정에서 '냉장고'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60.8%가 '냉장고'가 있는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은 17.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전화'는 전체의 약 1/2의 노인정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풍기'를 구비하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의 70% 정도의 노인정이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대도시일수록 이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인정의 여가활동 설비현황

노인정의 기본시설과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설비/용품들의 구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도 3-7]과 같다. 대체적으로 '장기 또는 화투목'을 구비하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의 88.7%로 나타나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여가활동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44.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들이 여흥을 즐기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는 '장구/북'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정은 56.9%로 대도시의 경우 그리고 할머니 노인정에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붓/벼루'를 갖추고 있는 노인정은 30.1%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이 적은 것(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를 구비하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의 1/2을 상회하고 있는



\* 중복응답 비율임

[도 3-7] 여가활동 설비현황\*

데 역시 대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갖추고 있는 노인정은 매우 많아서 80.2%에 이르고 있는 반면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으며 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농촌지역일수록 보유율이 낮았다. 그리고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용구를 갖추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정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용구나 설비들이 주로 '장기나 화투목', 'TV'에 편중되어 있고 각종 '잡지나 서적' 그리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용구' 등 여가설비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노인정 기본시설 및 여가활동 설비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정의 기본시설은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반면, 노인정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설비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지역별로 노인정이 구비하고 있는 기본시설 및 설비의 수를 알아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노인정의 경우 평균 3 ~ 4가지 정도의 시설이나 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노인정 운영실태

### 1. 운영유형 및 규정

#### 1) 운영유형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의 성별 구성에 따라 노인정의 형태를 구분하여 보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들이 이용하는 공동 노인정이 61.6%로 조사대상 노인정의 3/5 정도이며, 남자노인들만이 이용하는 할아버지 노인정이 32.7%인 반면 여자노인들만이 이용하는 노인정은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양성의 노인이 이용하는 공동 노인정이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는 할머니 노인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에 이르고 있는 반면 군부에서는 3%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에서 여자노인의 절대수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노인 특히 농촌지역 여자노인이 가정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활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만으로 구성된 노인정의 경우보다는 이성의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별도의 공간에서 여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표 3-13>

노인정 형태

운영유형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할아버지 노인정	32.7	17.2	27.8	28.3	36.4
할머니 노인정	5.8	10.3	12.3	10.8	2.7
공동 노인정	61.6	72.4	59.9	60.9	60.9
계 (개소)	100.0 (2,079)	100.0 (145)	100.0 (227)	100.0 (381)	100.0 (1,326)

\* 무응답 20개소 제외

높을 수 있다. 공동 노인정의 경우 37.8%가 이용노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공간에서 여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을 전체 노인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보면 23.3%에 해당된다. 즉, 전체 노인정의 23% 정도가 남녀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 보면, 공동노인정중 서울지역의 경우는 22.3%, 부산 등 기타 대도시의 경우는 31.0%,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는 42.9% 그리고 군부지역 경우는 39.9%가 남녀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성의 성원들로 구성된 공동 노인정의 경우 성원들의 성별에 따라 욕구가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이한 욕구를 노인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 노인정 1,280개소중에서 양성을 대표하는 2명의 회장을 두고 성별에 따라 노인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11.3%는 건물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2개의 분리된 노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1명의 회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성별 부회장제를 도입하여 양성의 욕구를 노인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43.4%, 성별 부회장제를 도입하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선출된 1명의 회장이 노인정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각각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노인정 회장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어떠한 지도력유형을 취하는가에 관계없이 여자노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노인정의 성별 공간분리와 지도력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여자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부족 현상 뿐만 아니라 노인정내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자노인이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자신들의 욕구나 이해를 노인정 운영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문제점이 있다.

## 2)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보건사회부의 「노인정 관리운영 지침」에 의하면 노인정은 회칙 또는 운영규정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 노인정의 87.5%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91.5%, 기타 대도시의 경우는 92.0%가 운영규정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는 85.5% 정도, 군부는 86.8%가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는 87.6%, 할머니 노인정은 69.8% 그리고 공동 노인정은 88.9%가 회칙이나 운영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할머니 노인정에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는 비율이 낮았다.

노인정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부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을 제외한 5개 대도시가 22.5%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회원가입 자격제한 규정에 대한 태도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정에 대한 가입자격을 주민등록지의 노인정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태도를 보면, 현행의 규정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37.7%인 반면 노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62.2%인 것으로 나타나 이 규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60% 이상이 자격제한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비율(40.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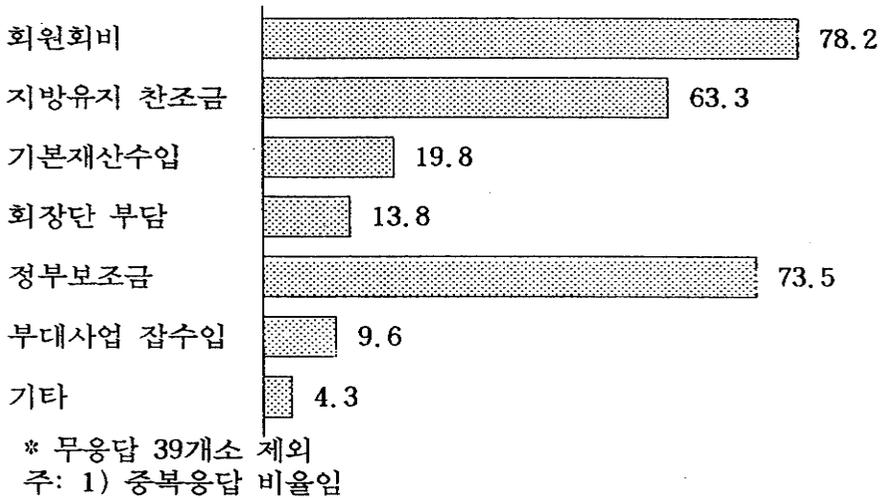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참여관찰조사에 의하면, 현행 거주지역으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노인정 회장선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원가입 자격제한 규정의 개정예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었다. 즉, 대한노인회의 조직체계가 지역적 기반

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조직원 이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노인정 운영비 현황

### 1) 운영비 조달방법

노인정 운영자에게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3가지만 지적하게 한 결과, 1가지 조달방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전체의 8.8%에 이르고 있는 반면 3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운영비 조달방법을 갖고 있는 노인정은 71.5%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정이 여러가지 원천과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에서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활용하고



[도 3-8] 운영비 조달방법<sup>1)</sup>

있는 방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정의 78.2%가 회원회비를 통하여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73.5%, 지방유지들의 찬조금이 63.3%, 노인정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19.8%이며, 나머지 조달방법을

활용하는 노인정은 4 ~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조달에 있어서 가장 의존정도가 주된 운영비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회원회비에 주로 의존하는 노인정이 6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유지나 단체의 찬조금을 운영비 주된 조달방법으로 활용하는 노인정이 17.5%,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가 12.4%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회원의 회비를 통하여 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표 3-14〉 주된 운영비 조달방법

주된 조달방법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회원회비	61.3	63.2	74.0	65.0	57.8
지방유지 찬조금	17.5	7.6	9.7	15.0	20.6
기본재산수입	4.8	4.9	4.0	4.2	5.0
회장단 부담	1.4	1.4	0.9	1.3	1.5
정부보조금	12.4	16.7	8.8	11.3	12.8
부대사업 잠수입	1.9	4.9	2.2	2.9	1.3
기 타	0.8	1.4	0.4	0.3	0.9
계 (개소)	100.0 (2,060)	100.0 (144)	100.0 (227)	100.0 (380)	100.0 (1,309)

\* 무응답 39개소 제외

가장 높지만, 서울지역의 노인정은 회원회비 다음으로 정부보조금, 지방유지 찬조금의 순인 반면 나머지 지역의 노인정에서는 지방유지의 찬조금, 정부보조금의 순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대도시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회원회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부에서는 지방유지의 찬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회원회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인정이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도 회원회비에 의해 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는 회원회비에 의해 주로 운영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63.1%, 지방유지 찬조금이 18.1%, 정부보조금이 11.1%의 순이었으며,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회원회비(73.7%), 정부보조금(12.7%), 지방유지 찬조금(7.6%)의 순이었으며, 공동 노인정의 경우는 회원회비(59.1%), 지방유지 찬조금(17.9%), 정부보조금(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 주된 운영비 조달방법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차이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타형태의 노인정에 비해 지방유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 2) 월평균 운영비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 규모를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월 '5~10만원 미만'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 노인정이 3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10~15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월 '15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노인정이 절반에 가까운 48%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월 1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노인정은 72.1%인 것으로 나타나 타지역의 노인정에 비해 월평균 운영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군부의 노인정에서는 '5~10만원 미만'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노인정이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경우는 각기 46.6%, 36.0% 그리고 25.4%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노인정의 월운영비 규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의 월운영비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절기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쓰는 노인정이 23.9%로 전체 노인정의 1/4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49.0%가 10만원 이상의 월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동절기에 난방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이다. 계절 및 지역별로 월운영비 규모를 살펴보면, 하절기인 경우에 서울지역의 노인정중에서 56% 정도가 10만원

<표 3-15>

월운영비 규모

구 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평균					
3만원 미만	13.7	3.1	3.4	12.3	17.2
3~5만원 미만	19.1	2.3	15.0	14.4	23.3
5~10만원 미만	34.0	22.5	35.0	37.4	34.2
10~15만원 미만	14.8	24.0	17.5	16.2	12.9
15만원 이상	18.3	48.1	29.1	19.8	12.5
하절기					
2만원 미만	13.8	3.0	2.4	10.9	18.1
2~4만원 미만	28.1	0.8	18.8	26.1	33.5
4~6만원 미만	21.6	12.8	21.3	22.3	22.4
6~10만원 미만	12.6	27.1	15.9	15.5	9.4
10만원 이상	23.9	56.4	41.5	25.2	16.5
동절기					
5만원 미만	20.6	3.1	8.1	19.0	25.1
5~10만원 미만	30.5	13.7	29.5	28.3	33.1
10~15만원 미만	19.7	19.8	23.3	19.8	19.0
15~20만원 미만	10.8	15.3	11.9	13.9	9.2
20만원 이상	18.5	48.1	27.1	19.0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소)	(1,785)	(129)	(206)	(334)	(1,116)

\* 무응답 314개소 제외

이상의 월운영비를 쓰고 있는 반면 기타 대도시는 41.5%, 중소도시는 25.2% 그리고 군부지역은 16.5%로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월운영비 규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절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서울지역의 노인정은 62.3%가 10만원 이상의 월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군부지역의 노인정에서는 41.8%가 10만원 이상의 월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월운영비 규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를 살펴보면, 노인정의 지역별 월운영비의 차이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계절에 관계없이 연간으로 평균하여 보면, 전체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는 9만원 정도이지만, 서울지역의 노인정은 16만원, 기타 대도시지역은 11만 6천원, 중소도시는 9만 5천원 그리고 군부는 7만 5천원으로 서울

지역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는 군부지역 노인정의 월평균운영비의 2.13배에 이르고 있다. 계절별로는 동절기의 월평균 운영비가 11만 9천원으로 하절기의 1.72배에 달하고 있다. 계절 및 지역별 월평균운영비를 살펴보면, 동절기 서울

<표 3-16> 지역별 월평균운영비 (단위: 원)

구 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평균	89,555	160,016	116,002	94,927	74,921
하절기	64,993	130,647	96,512	67,912	50,649
동절기	111,936	188,313	137,752	119,209	96,978

\* 무응답 314개소 제외

지역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가 18만 8천원 수준으로 하절기 군부지역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 5만 1천원의 3.71배에 이르고 있다. 동일한 계절내에서도 지역별로 월평균 운영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서울지역 노인정의 월평균 운영비가 군부지역 노인정 월평균 운영비의 2.57배에 달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1.94배에 달하고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가 9만 6천원 정도로 가장 많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표 3-17> 형태별 월평균운영비 (단위: 원)

구 분	전 체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공동노인정
연평균	89,270	81,871	95,730	92,686
하절기	64,841	56,842	73,899	68,344
동절기	111,558	104,091	115,370	115,281

\* 무응답 331개소 제외

공동 노인정, 할아버지 노인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할머니 노인정의 동절기 월평균 운영비가 11만 5천원으로 할아버지 노인정의 하절기 월평균 운영비의 2.0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운영비 지출내역

노인정에서 운영비로 지출하는 다양한 항목중에서 그 비중이 큰 순서대로 3가지를 지적하게 한 결과, 연료비가 운영비 지출순위 3위 이내에 속한다고 응답한 노인정은 92%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노인정이 광열비에 대한 운영비 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소품이나 단체관광비용으로, 이 비용이 운영비 지출항목중에서 3위 이내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 노인정이 73.5%, 월례회식비가 47.9%, 공공요금이 54.7%, 건물수리비가 31.6%의 순이었으며, 프로그램이나 오락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건물임대료 등이 운영비 지출비중에 있어서 3위 이내에 속한다고 응답한 노인정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진이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참여관찰조사를 한 결과, 소품/단체관광비용이나 월례회식비는 노인정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와 참여하는 회원들이 각자 전액 또는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회원이 부담하는

〈표 3-18〉 주된 운영비 지출항목

주조달방법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료비	78.3	58.6	70.2	76.6	82.4
공공요금	3.5	10.3	6.2	3.7	2.2
건물수리비	1.2	2.1	0.4	0.8	1.3
월례회식비	6.6	15.2	10.2	7.4	4.7
소품/단체관광비	9.3	13.8	10.2	9.7	8.6
프로그램/오락비	0.3	-	-	0.3	0.4
임대료	0.3	-	1.8	0.5	0.1
기 타	0.5	-	0.9	1.1	0.3
계 (개소)	100.0 (2,043)	100.0 (145)	100.0 (225)	100.0 (380)	100.0 (1,293)

\* 무응답 56개소 제외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이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영비 지출내역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연료비로서, 전

체 노인정의 78.3%가 운영비 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소풍/단체관광비용, 월례회식비, 공공요금 등의 순이었으나, 이들 항목이 가장 비중이 큰 지출항목이라고 응답한 노인정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역별로도 연료비가 가장 주된 운영비 지출항목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나, 서울지역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월례회식비, 소풍/단체관광비용,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군부지역의 노인정중에서는 연료비가 주된 운영비 지출항목이라고 응답한 노인정이 4/5 이상에 이르러 어느 지역보다도 연료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그외의 지출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광열비 등 노인정 운영과 관리에 필수적인 경직성 비용과 월례회식비, 소풍/단체관광 등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비용에 대한 운영비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프로그램이나 오락 등 노인정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군부에 위치한 노인정일수록 노인정 운영과 관리에 필수적인 경직성 비용에 대한 운영비 지출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4) 운영비 충분도

노인정의 현재 운영비로 노인정을 운영해가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가를 운영책임자에게 평가하게 한 결과, 68% 정도의 노인정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정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1.0%만이 현재의 운영비로도 여유있게 노인정을 운영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노인정중에서 2/3 이상이 운영비 부족으로 노인정 운영상의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운영비가 노인정 운영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노인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 기타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60% 정도의 노인정이 운영비가 부족하다

<표 3-19>

운영비 충분도

운영비 충분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크게 부족하다	28.4	14.8	23.3	26.1	31.4
부족한 편이다	39.9	47.9	38.3	37.3	40.0
그럭저럭 운영한다	30.6	35.9	36.6	35.5	27.7
여유있는 편이다	0.8	1.4	1.3	0.5	0.8
매우 여유있다	0.2	-	0.4	0.5	0.2
계 (개소)	100.0 (2,043)	100.0 (142)	100.0 (227)	100.0 (383)	100.0 (1,327)

\* 무응답 56개소 제외

고 한 반면 군부지역은 70% 정도의 노인정이 운영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인정 운영형태와 운영비 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회계관리

보건사회부의 「노인정 관리운영 지침」에 의하면 각 노인정에서는 금전출납부를 비롯한 회계관계 장부를 비치, 작성,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정의 97% 정도가 금전출납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별로 보면, 할아버지 노인정의 97.8%, 할머니 노인정의 93.1% 그리고 공동 노인정의 98.2%가 금전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 노인정,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의 순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비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전출납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노인정에서는 99.3%가 회원들에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는 99.7%,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는 96.3% 그리고 공동 노인정의 경우는 99.3%가 회계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금전출납부의 작성·비치와 회계보고를 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회계관리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

므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진이 모범노인정에 대한 현지참여관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노인정 특히 할머니 노인정에서는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기 보다는 은행에 개설한 통장으로 금전출납부를 대신하며, 통장 자체로 회계보고를 하는 노인정이 있었다. 서울시와 대한노인회에 대한 참여관찰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에 노인정에 시설보수,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단위 노인정의 회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행정상의 애로를 겪고 있었다. 실제로 1993년도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한 예산(1억 5천만원)을 확보 하긴 하였지만, 노인정의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회에 대한 참여관찰조사에서는 중앙회에서 각 단위노인정에 회계관리양식을 배포하고, 회계관리방식을 교육 또는 지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지참여관찰조사와 현재 노년기에 이른 계층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금전출납부의 작성 및 비치, 회계보고 등 회계관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정의 회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부지원

#### 1) 정부지원 여부

1992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하면 '노인정의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정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군·구청에 등록된 노인정에 한하여 일정액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95.4%의 노인정이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4.6%의 노인정이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노인회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시·군·구청에 아직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난방비 지원이 불필요한 시설에 노인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의 97.0%, 할머니

노인정의 96.6% 그리고 공동 노인정 94.4%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 월정부지원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노인정 지원액은 월 2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동절기에 한하여 연탄 500장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인정을 지원하므로, 지역에 따라 정부지원액의 수준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경우 노인정의 규모와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지원해주는 연간 노인정 지원액을 월평균하여 보면, '2~3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노인정이 38%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10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2만원 미만'의 순이었으며, 월평균 지

<표 3-20> 월정부보조금 수준

구 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평균					
2만원 미만	15.7	2.6	3.9	10.1	21.5
2~3만원 미만	37.6	-	19.1	49.5	42.0
3~5만원 미만	17.7	7.8	44.9	17.3	13.9
5~10만원 미만	19.1	79.3	15.7	13.7	14.0
10만원 이상	9.8	10.3	16.3	9.4	8.6
하절기					
2만원 미만	13.8	2.3	6.4	15.7	24.6
2~3만원 미만	28.1	-	26.6	58.3	47.9
3~5만원 미만	21.6	10.0	41.0	5.4	8.4
5~8만원 미만	11.0	23.1	3.2	12.2	10.6
8만원 이상	14.8	64.6	22.9	8.3	8.6
동절기					
2만원 미만	12.0	2.5	4.1	6.7	16.2
2~3만원 미만	29.1	-	16.1	39.3	31.6
3~5만원 미만	24.0	7.6	35.8	23.6	23.8
5~10만원 미만	16.4	45.4	20.2	14.1	13.1
10만원 이상	18.5	44.5	23.8	16.3	15.3
계 (개소)	100.0 (1,585)	100.0 (130)	100.0 (188)	100.0 (312)	100.0 (955)

\*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514개소 제외

원액은 5만 2천원 수준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노인정의 경우는 월 '5~10만원 미만'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79%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정부보조금도 9만 4천원 수준으로 군부의 월평균 정부지원액의 2.02 배에 이르고 있다. 기타 대도시의 경우에는 '3~5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노인정이 45%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6만 1천원 수준이었다. 중소도시와 군부의 경우에는 '2~3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는 노인정이 각각 49.5%, 42.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의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4만 9천원, 군부의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4만 7천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노인정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비만을 지원해주는 하절기의 월평균 정부지원액을 살펴보면, 하절기에는 월 '2~3만원 미만'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노인정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만원 미만', '8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3만 9천원선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8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노인정이 65% 정도로 가장 많았고, 기타 대도시의 경우에는 '3~5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와 군부에서는 '2~3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각각 58.3%, 47.9%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정부지원액의 차이는 월평균지원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는 7만 9천원, 기타 대도시 지역은 5만 4천원, 중소도시 지역은 3만 3천원 그리고 군부지역은 3만 2천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해주는 동절기 월평균 지원액은 하절기에 비하여

<표 3-21>

구 분	전 국	월평균 정부보조금 (단위:원)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평균	52,348	94,155	61,174	48,726	46,545
하절기	38,807	79,262	54,064	32,839	32,246
동절기	53,855	94,672	73,586	49,619	46,956

상대적으로 그 액수가 큰 경향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월 5만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26% 정도인데 반하여 동절기에는 3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동절기에도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월 '2~3만원 미만'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노인정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3~5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1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정부지원액은 5만 4천원선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5~10만원 미만'의 지원받는 노인정이 45.4%로 가장 많았고, 기타 대도시의 경우에는 '3~5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와 군부에서는 '2~3만원 미만'의 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각각 39.3%, 31.6%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정부지원액의 차이는 평균지원액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는 9만 5천원, 기타 대도시 지역은 7만 4천원, 중소도시 지역과 군부지역은 5만원 정도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정부보조금의 충분도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정부보조금의 충분정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보조금을 받고 노인정중에서 보조수준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한 경우가 31.2%,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한 경우가 45.1%로, 전체 노인정의 3/4 정도가 정부보조금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2.8%만이 정부보조금 수준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이나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도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노인정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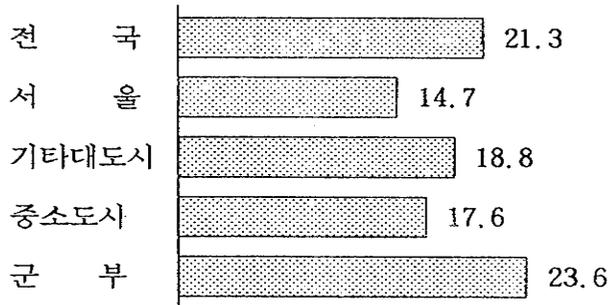
## 4. 지역사회와의 관계

### 1) 지역후원회 구성여부

노인정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지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노인정의 21.3%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는 15% 정도의 노인정만이 지역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대도시 지역은 19% 정도, 중소도시는 18% 정도 그리고 군부지역이 24% 정도로 나타나, 군부 지역에 위치한 노인정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지역자원 활용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 지역의 노인정의 경우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정의 형태별로는 공동 노인정의 경우 23.9%가 지역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이 17.4%, 할머니 노인정이 15.7%의 순으로 지역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 무응답 112개소 제외

[도 3-9] 지역별 지역후원회 구성비율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할머니 노인정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지참여관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역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연말연시, 추석, 어버이날 등 특정한 일자에만 관례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현지참여관찰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때, 노인정에서 지역후원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낮은 뿐만 아니라 지역후원회의 기능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지역인사와의 접촉정도

노인정 회장이나 총무 등 운영책임자가 지역사회내에 위치한 관공서나 지역사회유지들과 노인정 운영문제로 접촉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26% 정도의 노인정이 관공서나 지역유지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 반면 37% 정도는 별로 접촉을 하

지 않거나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별로 접촉정도를 살펴보면, 공동 노인정의 운영책임자들의 28% 정도는 노인정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관공서나 지역유지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형태의 노인정 운영책임자들에 비해 접촉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의 순이었는데, 할머니 노인정의 운영책임자들은 절반 이상이 지역관공서나 지역유지들과 접촉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3/4 정도의 노인정이 운영상의

<표 3-22> 지역기관/유지 접촉정도

지역인사 접촉정도	전 체	할아버지	할머니	공 동
매우 자주 접촉한다	4.4	4.8	1.7	4.5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21.7	20.6	12.8	23.2
보통이다	37.1	36.6	29.1	38.1
별로 접촉않는 편이다	26.0	26.3	29.9	25.5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10.7	11.7	26.5	8.8
계 (개소)	100.0 (2,010)	100.0 (650)	100.0 (117)	100.0 (1,243)

\* 무응답 89개소 제외

문제나 애로가 생겼을 때 지역사회의 관공서나 유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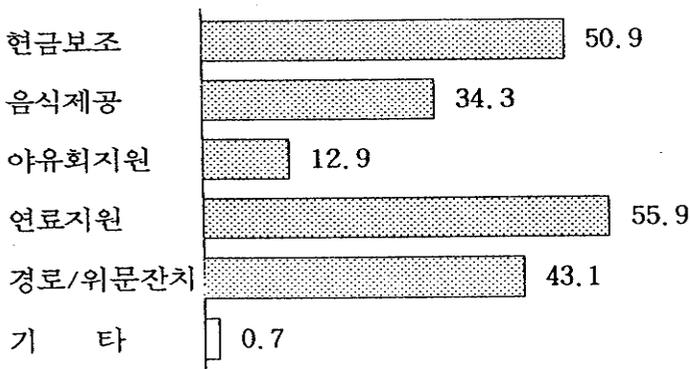
현지참여관찰조사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관공서나 유지와의 접촉에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노인정 운영책임자가 지역사회 관공서와 지역유지와 접촉을 하더라도 노인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원을 받기 보다는 단지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의 접촉유형이 있다. 둘째는 노인정 운영책임자가 지역사회내에서 유지이거나 과거에 공직생활을 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관공서나 지역유지들과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유형이다.

### 3) 지역사회의 지원여부 및 규칙성

지역사회의 노인정 지원여부와 지원의 규칙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노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연료지원으로 전체 노인정의 55.9%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보조, 경로 또는 위문잔치, 음식제공, 야유회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 지역사회 지원내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할아버지 노인정에서는 연료지원(58.7%), 현금보조(55.6%), 음식제공(36.5%), 경로위문잔치(35.4%)의 순으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노인정이 많았다. 그리고 할머니 노인정에서는 연료지원(53.2%), 음식제공(39.2%), 현금보조(36.7%), 경로위문잔치(35.4%)의 순이었으며, 공동 노인정에서는 연료지원(54.7%), 현금보조(49.7%), 경로위문잔치(47.7%), 음식제공(32.8%)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지역사회의 지원내용은 주로 연료지원, 현금보조, 경로/위문잔치 그리고 음식제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노인정에서 연료지원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에는 음식제공과 야유회(20.3%)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과 공동 노인정의 경우에는 현금보조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차이점이 있다.



\*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624개소 제외  
 주: 1) 중복응답비율임

[도 3-10] 지역지원내역<sup>1)</sup>

지역사회의 지원내용이 주로 연료지원, 현금보조, 경로/위문잔치, 음식제공, 야유회 지원 등이라는 점과 노인정 운영비 지출내용중에서 연료비, 소품/단체관 광비용, 월레회식비 등이 주요 지출원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



동일 지역사회내에 위치한 노인정은 특정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빈도로 접촉을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정규적 접촉이란 지역사회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노인정간에 정해진 일자 또는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월례회의 초대, 지역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같이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 지역사회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 모임을 갖고 있는 비율이 39.4%이며, 나머지 60.6%는 정규적인 모임을 갖지 않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웃 노인정과 유대관계가 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군부지역에 위치한 노인정들간의 접촉 빈도가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공동 노인정이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경우가 41.6%로 이웃 노인정과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는 37.3%, 할머니 노인정은 27.8%가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양성으로 구성된 노인정인 경우가 이웃하고 있는 노인정과 접촉하는 비율이 높으며, 여성 특히 여성으로 구성된 노인정의 경우가 이웃노인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인 접촉을 갖고 있지 않은 60.4%의 노인정이 접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이웃 노인정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접촉을 하지 않는 노인정이 44%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같이 할 만한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4.5%,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가 22.3%로 나타나, 이 3

<표 3-25> 이웃 노인정과 정규적 접촉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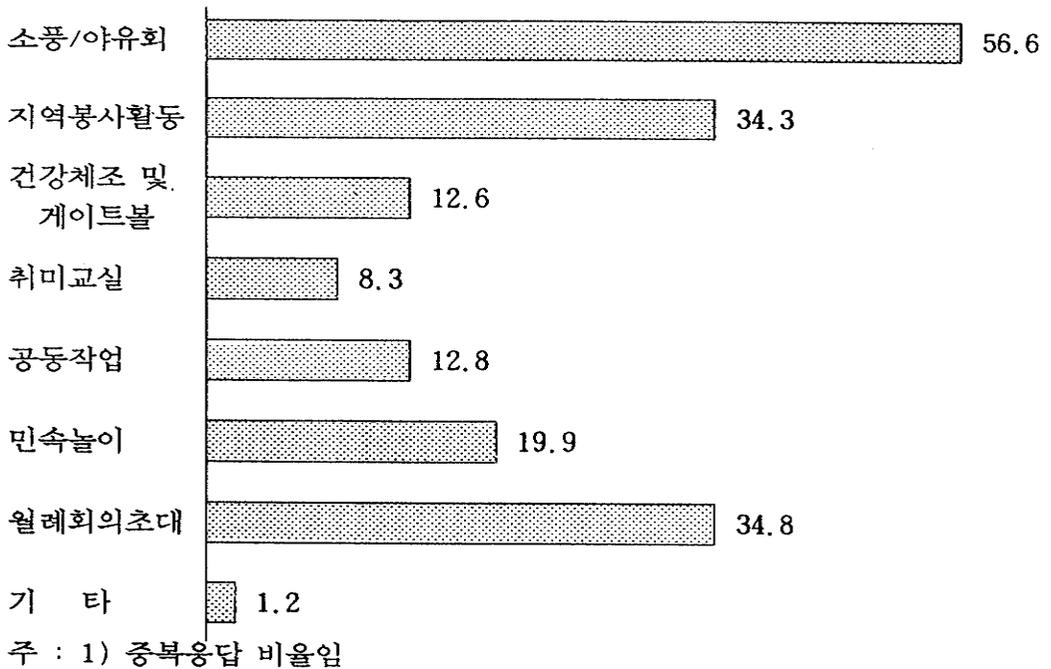
정규적 접촉않는 이유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거리가 너무 멀어서	44.1	21.4	36.4	42.4	48.5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22.3	26.2	22.9	18.8	22.8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24.5	35.7	34.7	27.7	20.4
마음이 맞지 않아서	2.6	6.0	0.8	4.0	2.1
접촉하는 것을 회원들이 싫어하므로	5.3	9.5	4.2	5.4	4.9
기타	1.3	1.2	0.8	1.8	1.3
계 (개소)	100.0 (1,141)	100.0 (84)	100.0 (118)	100.0 (224)	100.0 (715)

\* 이웃노인정과 정규적 접촉하는 노인정 및 무응답 958개소 제외

가지가 이웃 노인정과 접촉하지 않는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위치한 노인정에서는 같이 할만한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가장 주된 이유이며, 위에 열거한 3가지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83%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웃 노인정과 '접촉하는 것을 회원들이 싫어하므로'가 9.5%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및 군부의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라는 이유로 이웃 노인정과 접촉을 하지 않는 노인정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접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군부의 경우에는 주로 지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

#### 7) 이웃노인정과의 접촉내용

이웃 노인정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795개소의 노인정 운영책임자에게 같이 하는 활동을 모두 지적하게 한 결과, 소풍이나 야유회를 같이 가는 경우가



[도 3-11] 이웃노인정과의 정규접촉 내용<sup>1)</sup>

56.6% 로 접촉내용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월례 회의에의 초대, 지역봉사활동, 민속놀이, 건강체조 또는 게이트볼, 공동작업, 취미교실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이웃하고 있는 노인정간의 접촉내용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소수의 몇명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여흥이나 생산성 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8) 이웃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

이웃 노인정과 접촉을 하는 노인정과 접촉하지 않는 노인정 모두의 운영책임자에게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를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라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접촉의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36% 정도는 '가끔씩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소극적인 접촉의사를 지니고 있었으며, 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11%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

<표 3-26>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한 태도

접촉에 대한 태도	전 체	할아버지	할머니	공 동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52.6	53.7	40.2	53.2
가끔씩 만나는 것이 좋다	36.2	36.9	39.3	35.5
접촉 필요성을 못느낀다	11.2	9.4	20.6	11.3
계 (개소)	100.0 (1,940)	100.0 (629)	100.0 (107)	100.0 (1,204)

\* 무응답 159개소 제외

한 결과와 실제 정규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는 비율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대부분의 노인정 운영책임자들은 이웃 노인정과 접촉할 의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때문에 실제 접촉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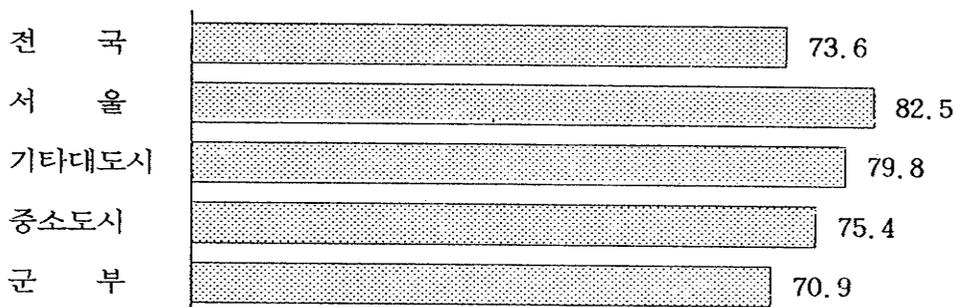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 적극적인 접촉의사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53.7%, 소극적이지만 접촉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36.9%로 타형태의 노인정에 대해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 노인정의 경우도 할아버지 노인정과 유사한 정도의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는 '접촉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1/5 정도이며, 접촉할 의사가 있더라도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타 형태의 노인정에 비해 이웃 노인정과의 접촉에 대해 보다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5. 회비수납 현황

### 1) 가입비 수납여부

노인정에 처음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를 받는 비율은 73.6% 정도로 전체 노인정의 3/5에 약간 못미치는 노인정이 가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 위치한 노인정의 82.5%가 가입비를 받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가입비 수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을 제외한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군부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화의 정도와 가입비 수납률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3-12] 가입비 수납여부

### 2) 가입비 액수

노인정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를 받는 노인정의 경우 수납하는 가입비 액수를 보면 '1만~1만 5천원 미만'을 받는 노인정이 40%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천~1만원 미만', '1만 5천~3만원 미만', '5천원미만'의 순이었으며, 평균 가입비는 2만 3천원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만~1만 5천원 미만'의 가입비를 받는 노인정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가입비 액수는 서울과 기타 대도시 지역의 노인정이 2만원 수준이었으며, 군부와 중소도시가 2만 4천원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가입비 수납률과는 달리

도시화의 정도와 가입비 액수간에는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3-27>

회원 가입비 액수

가입비 액수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5천원 미만	15.7	19.6	7.2	14.0	17.5
5천~1만원 미만	23.4	27.1	21.6	18.8	24.8
1만~1만 5천원 미만	40.1	37.4	40.7	43.2	39.5
1만 5천~3만원 미만	15.8	13.1	22.8	18.8	13.8
3만원 이상	4.9	2.8	7.8	5.2	4.4
계 (개소)	100.0 (1,340)	100.0 (107)	100.0 (167)	100.0 (250)	100.0 (816)
평균가입비(원)	23,154	19,546	19,598	24,264	23,949

\* 가입비를 받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759개소 제외

노인정 형태별에 있어서도 모든 형태의 노인정에서 '1만~1만 5천원 미만'의 가입비를 수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할머니 노인정과 공동 노인정의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5천~1만원 미만', '5천원 미만'의 순인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에는 '1만 5천~3만원 미만', '5천~1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남자노인만으로 구성된 할아버지 노인정의 가입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회비 수납여부 및 빈도

현재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는 노인정은 43% 정도이며, 매월 회비를 받고 있는 노인정 33.3%를 포함하여 회비를 받고 있는 노인정은 전체 노인정의 57% 정도에 이르고 있다. 현지참여관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아파트 관리비 납부시에 관리비에 일정액의 노인정 운영비를 포함시켜 수납하여 이를 노인정 운영비로 쓰고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회원들로부터 월회비를 받지 않는 노인정도 있었다.

노인정 형태별로 살펴보면, 할머니 노인정이 나머지 2가지 형태의 노인정에 비해 회비를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할머니 노인정의 3/4 정도는 회비를 받고 있었다. 회비를 받는 빈도에 있어서는 매월 회비를 받는 노인정이 가장 많

<표 3-28>

회비 수납빈도

수납빈도	전체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
받지 않음	42.6	43.0	26.4	43.9
월 1회	33.3	29.8	62.7	32.3
3개월 1회	2.8	2.3	5.5	2.8
6개월 1회	8.4	8.7	0.9	9.0
기타	12.9	16.2	4.5	12.0
계 (개소)	100.0 (1,844)	100.0 (598)	100.0 (110)	100.0 (1,136)

\* 무응답 255개소 제외

았는데,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에는 63% 정도의 노인정이 매월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할아버지 노인정과 공동 노인정의 경우에는 할머니 노인정에 비해 회비를 받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연간 회비납부 빈도도 할머니 노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 노인정과 공동 노인정의 경우 운영비를 회원회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할머니 노인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유지의 찬조금을 통하여 운영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회비액수

노인정에서 이용노인 즉, 회원들로부터 받고 있는 회비액수를 보면, 월 1천원의 회비를 받는 노인정이 전체의 4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천~5천원 미만', '5천~1만원 미만'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비액수는 회비수납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납부빈도별 회비액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비납부빈도별 회비액수를 살펴보면, 매월 회비를 받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1천원을 받는 노인정 58.1%를 포함하여 5천원 미만의 회비를 받는 노인정이 96% 정도에 이르고 있는 반면 분기별로 회비를 받고 있는 노인정에서는 1천원을 받는 노인정 38.3%를 포함하여 5천원 미만의 회비를 받는 노인정이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회비를 받는 노인정에서는 '5천~1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회비수납빈도와 회비액수는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3-29〉 회비 수납빈도별 수납액수

월 회 비	전 체	월 1회	3개월 1회	6개월 1회	기 타
1천원	41.1	58.1	38.3	19.6	7.7
2천원 ~ 5천원 미만	33.4	37.5	31.9	27.5	26.0
5천원 ~ 1만원 미만	14.3	2.7	19.1	32.6	34.1
1만원 이상	11.2	1.7	10.6	20.3	32.2
계 (개소)	100.0 (983)	100.0 (590)	100.0 (47)	100.0 (138)	100.0 (208)

\* 회비를 받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1,116개소 제외

#### 5) 회비미납자에 대한 조치

회비를 미납한 이용노인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서 살펴보면, 전체 노인정의 77% 정도가 회비미납자에 대하여 출입제한이나 차별처우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처분을 하는 노인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타 대도시와 군부의 경우에는 출입제한 또는 차별처우 등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노인정의 비율이 83% 이상에 이르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회비미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서울과 중소도시에 위치한 노인정

〈표 3-30〉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조치

조 치 내 용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출입을 금지시킴	2.4	3.1	2.0	1.4	1.5
출입은 허용하되 차별처우	21.1	23.2	12.0	24.5	15.3
출입제한 또는 차별을 하지 않음	76.5	73.7	86.0	74.1	83.3
계 (개소)	100.0 (1,026)	100.0 (119)	100.0 (161)	100.0 (217)	100.0 (529)

\* 월회비를 받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1,073개소 제외

에서는 회비미납자에 대해 출입금지 또는 차별처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노인정이 1/4 이상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비미납자에 대한 조치에 영향력이 큰 변인이라고 보는 경로 당 운영책임자의 노인정의 주기능에 대한 태도나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6) 지회비 납부여부 및 빈도

노인정이 속해 있는 당해지역의 대한노인회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정은 80% 정도이며, 매월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36%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년 1회, 6개월 1회, 3개월 1회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노인정의 경우는 94% 이상이 지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매월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78% 이상을 차지하여 연간 지회

〈표 3-31〉 지회비 납부여부 및 빈도

납부빈도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납부 없음	19.8	6.0	2.2	16.9	25.6
월 1 회	36.2	83.6	77.7	46.8	19.9
3개월 1회	12.3	6.0	12.5	12.2	13.1
6개월 1회	14.1	4.5	6.3	14.1	16.7
년 1회	16.0	-	1.3	8.3	22.8
기 타	1.6	-	-	1.7	2.0
계 (개소)	100.0 (1,912)	100.0 (134)	100.0 (224)	100.0 (361)	100.0 (1,193)

\* 무응답 187개소 제외

비 납부빈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3%가 지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47% 정도가 매월 지회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도 36%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군부의 경우에는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74%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지회비를 납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년 1회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23%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타지역에 비해 연간 지회비 납부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전체 노인정의 4/5 정도는 지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도시화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

수록 연간 지회비 납부빈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7) 지회비 액수

노인정이 지회에 납부하는 지회비 액수를 살펴보면, '5천원 미만'의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2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천~1만원 미만', '1만~1만 5천원 미만'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노인정에서 지회비를 납부하는 빈도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보다 정확한 지회비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회비 납부빈도별 지회비액수를 파악해보아야 한다. 월 1회 또는 분기에 1회 지회비를

〈표 3-32〉 납부빈도별 지회비액수

지 회 비	전 체 매 월		3개월 1회	6개월 1회	년1회	기타
5천원 미만	26.4	39.9	29.6	14.5	5.0	27.3
5천~1만원 미만	21.2	28.6	20.4	19.3	6.7	31.8
1만~1만원 5천원 미만	20.2	18.3	18.9	22.4	24.1	13.6
1만 5천~3만원 미만	17.9	11.4	18.4	22.8	27.8	13.6
3만원 이상	14.3	1.7	12.8	21.1	36.5	13.6
계 (개소)	100.0 (1,374)	100.0 (629)	100.0 (196)	100.0 (228)	100.0 (299)	100.0 (22)

\* 지회비를 내지 않는 노인정 및 무응답 725개소 제외

납부하는 노인정의 경우는 '5천원 미만'의 지회비를 납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5천~1만원 미만', '1만~1만 5천원 미만'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6개월에 1회 지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만 5천~3만원 미만'의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1만~1만 5천원 미만'의 지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년 1회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지회비를 납부하는 노인정이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지회비 납부빈도와 지회비 액수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노인정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지적하게 한 결과, 운영상의 애로

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정은 70.4%에 이르고 있다. 이들 노인정이 지적한 노인정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주로 운영비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내용으로는 '정부지원금 수준의 확대'를 요구한 노인정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 노인복지 수준의 증진'이 22.1%, '노인정 시설의 증개축 지원'이 12.8% 등의 순이었다. 기타 건의내용으로는 '도농간의 정부보조금의 차등지급 철폐', '무허가 노인정의 양성화 및 지원', '대한노인회의 운영체계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역관공서의 지원확대' 등이 있다.

## V. 노인정 이용실태

### 1. 이용노인 규모

#### 1) 등록노인수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노인정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수를 보면 <표 3-33>과 같다.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정의 운영형태별로 세분해서 보면 할아버지 노인정에 비해 할머니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의 등록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할머니 노인정의 63%, 공동노인정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40명 이상의 등록노인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등록노인이 많고 기타 지역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참고로 지역별 평균 등록노인수에 있어서는 <표 3-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약 55명이었으며, 서울은 약 68명이었고, 기타 지역은 대체로 53~54명 수준이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 평균 44.8명으로 가장 적고 할머니 노인정, 공동노인정의 순으로 등록노인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공동노인정의 경우에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역별

<표 3-33>

노인정 등록노인수

등록노인수	전 체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공동노인정
29명 이하	17.1	29.7	14.2	10.7
30~39명	22.3	28.7	22.5	19.0
40~49명	19.3	19.3	21.7	19.2
50~69명	21.3	12.8	28.3	25.1
70명 이상	20.0	10.0	13.3	26.0
계 (개소)	100.0 (2,056)	100.0 (670)	100.0 (120)	100.0 (1,263)

\* 무응답 23개소 제외

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남자노인이 여자보다 평균 6명 정도 많은 반면, 서울의 경우 여자노인이 남자보다 평균 10명 정도 많

<표 3-34>

평균 등록노인수

(단위: 명)

지역별 평균등록노인수 <sup>1)</sup>		형태별 평균등록노인수 <sup>2)</sup>	
전 국	55.2	전 체	55.2
서 울	67.5	할아버지 노인정	44.8
기타대도시	54.1	할머니 노인정	48.5
중소도시	53.3	공동 노인정	61.3
군 부	54.5		

1) 무응답 38명 제외

2) 무응답 43명 제외

고, 기타대도시는 3명 정도 여자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일수록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남녀노인 모두 이용하는 공동노인정의 등록노인수가 다른 형태의 노인정에 비해 가장 많고, 비록 노인정 수는 적지만 할머니 노인정의 등록노인이 할아버지 노인정 보다 많으며, 공동노인정의 경우 평균적으로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많은 것(약 3명)을 알 수 있다.

## 2) 이용노인수

노인정을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규모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알아 보면, 하절기의 1일 이용노인수는 <표 3-3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날씨 때문에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절기에는 전체 노인정의 2/3정도가 하루에 20명 미만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정의 지역별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하절기의 이용노인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많아서 30명 이상이 전체노인정의 45%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군부의 경우 이용노인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계절에 관계없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절기는 농번기이므로 농사나 기타 관련 활동 때문에 노인정에 참여할 기

<표 3-35> 1일 이용노인수

이용노인수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연평균					
19명 미만	14.7	0.7	5.0	10.4	19.5
20~24명	16.1	11.1	15.0	14.4	17.4
25~29명	23.4	14.8	24.5	23.1	24.2
30명 이상	45.8	73.3	55.5	52.1	38.8
하절기					
10명 미만	22.2	0.7	6.8	13.6	30.8
10~19명	42.4	24.5	39.7	40.5	45.8
20~29명	20.4	30.1	26.9	28.9	15.1
30명 이상	15.0	44.8	26.5	17.1	8.2
동절기					
20명 미만	23.2	14.0	19.7	22.6	25.0
20~29명	34.7	22.8	39.9	34.0	35.2
30~39명	21.9	20.6	17.9	23.2	22.4
40명 이상	20.2	42.6	22.4	20.2	17.4
계 (개소)	100.0 (1,801)	100.0 (143)	100.0 (219)	100.0 (345)	100.0 (1,093)

\* 무응답 298개소 제외

회가 적어 이용노인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방문관찰 결과 하절기에는 노인정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정 형태별 이용노인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보다 할머니 노인정의 하루 이용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10월~3월) 이용노인수에 있어서는 하절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용노인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서울의 경우에 이용노인수가 많아서 하루 40명 이상이 43%정도에 이르고 있고 농어촌의 경우도 하절기와 달리 이용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의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노인정의 이용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하절기와 동절기 이용노인 규모를 근거로 연간 이용노인수를 알아보면, 먼저 지역별 평균 이용노인수에 있어서는 <표 3-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지역의 경우 하절기는 약 29명이고 동절기는 약 38명으로 연평균 하루에 33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타 대도시(약 26명)나 농어촌 지역(약 20명)에 비

<표 3-36> 지역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 (단위: 명)

구 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연평균	22.4	33.4	25.5	23.2	20.3
하절기	16.1	28.6	21.6	18.1	13.0
동절기	28.2	37.9	29.4	28.0	27.1

\* 무응답 230개소 제외

<표 3-37> 형태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 (단위: 명)

구 분	전 체	할아버지 노인정	할머니 노인정	공동노인정
연평균	22.5	19.8	24.3	23.8
하절기	16.2	13.6	21.3	17.1
동절기	28.3	25.7	27.7	29.6

\* 무응답 237개소 제외

해 평균 이용노인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로는 노인정의 1일 평균 이용노인수는 서울이 가장 많고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순서로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절별로도 하절기나 동절기 구분없이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이용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 형태별 평균 이용노인수에 있어서는 <표 3-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할머니 노인정과 공동노인정이 각각 24명 정도인데 비해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는 약 20명으로 이용노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할머니 노인정은 이용노인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은 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노인정 등록노인과 실제 이용노인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정 이용률(이용노인수 / 등록노인수)을 알아 보면 다음 <표 3-38>과 같이, 전체적

지역별 평균 이용률		형태별 평균 이용률	
전 국	40.6	전 체	40.6
서 울	49.5	할아버지 노인정	44.2
기타대도시	47.1	할머니 노인정	50.1
중소도시	43.5	공동 노인정	38.8
군 부	37.2		

\* 이용률 = 1일 평균 이용노인수 / 등록노인수 x 100

으로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중 약 41%의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등록노인 10명중 4명 정도가 거의 매일 노인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이 가장 이용률이 높아 등록노인의 약 절반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기타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이었고 농어촌 지역의 이용률이 가장 낮아 약 37%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약 50%였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약 44%, 공동노인정은 약 39%로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노인정 활동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이용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사대상 노인정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대부분의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식, 단체관광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및 여가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일부 노인정에서 실시중인 공동작업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다.

### 1) 회식

노인정 활동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행사로는 단체관광과 회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회원들간의 공동회식은 회원간 친목도모와 정서적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회식의 형태도 노인정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회식의 빈도와 회식방법, 그리고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 (1) 회식빈도

노인정에서 얼마나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39>와 같다. 전체적으로 4/5정도의 노인정이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는 월 1회가 23.7%로 가장 많았고, 3~4개월에 1회가 22.7%로 절반 정도의 노인정이 최소한 연 3~4회 이내의 회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월 1회 및 2-3회가 전체의 2/3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식빈도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및 군부의 순으로 회식빈도가 낮아져 농어촌의 경우 2/3 정도가 연 4회 미만의 회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정 이용노인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도시의 이용노인이 많음으로 해서 자연히 회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 농어촌의 경우 '일' 때문에 회식을 자주 갖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찰결과에 따르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식(떡이나 음료수)은 이러한

정기적인 회식보다 훨씬 더 빈번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 절반정도가 월 1회 이상의 회식을 하여 가장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은 월 1회 이상이 1/4 정도에 불과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공동노인정은 중간정도의 회식 빈도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39> 지역별 회식빈도

회식빈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월 2~3회	5.3	10.5	6.7	6.5	4.2
월 1회	23.7	58.1	46.4	34.6	13.1
연 3~4회	22.7	15.3	13.9	18.8	25.4
연 2회	16.4	2.4	9.3	14.5	19.9
연 1회	11.8	2.4	5.7	5.6	15.7
없 음	20.0	11.3	18.0	20.1	21.5
계 (개소)	100.0 (1,776)	100.0 (124)	100.0 (194)	100.0 (324)	100.0 (1,124)

\* 무응답 323개소 제외

## (2) 회식방법

노인정 회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식을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0>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에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약 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식당이나, 회원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노인정에 구비된 시설중 가스레인지나 밥솥 등 기본적인 취사시설을 갖춘 노인정이 많은 것을 관찰한 결과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회식방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분 회원집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노인정내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93.4%)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도시의 경우 외부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비율이,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회원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정의 형태별로는 할아버

지 노인정의 경우 할머니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에 비해 노인정 보다 외부식당에서 회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40>

지역별 회식방법

회식방법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회원 집에서	8.2	-	3.3	4.0	11.4
노인정에서	82.1	93.4	86.4	87.2	78.4
외부식당에서	8.3	6.6	9.8	7.4	8.5
기 타	1.4	-	0.5	1.3	1.7
계 (개소)	100.0 (1,604)	100.0 (121)	100.0 (184)	100.0 (297)	100.0 (1,002)

\* 무응답 495개소 제외

### (3) 회식비 부담자

회식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로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회원들의 회비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 노인정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회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28.5%, 지역의 유지가 부담하는 경우가 12.4%였으며, 그밖에 회장단(회장이나 부회장, 총무)에서 부담하거나 기타의 수입에서 회식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1> 참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전체의 4/5정도가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회원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회비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회원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고 또한 지역유지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식의 빈도와 관련지어 농어촌 지역에서 회식빈도가 낮고, 또한 회원회비의 규모나 수납정도에 지역별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노인정의 형태에 따라서는 대체로 회비에서 충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의 경우 지역유지로부터 회식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할머니 노인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41> 회식비 주부담자

주부담자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회원 개인	28.5	6.5	22.2	20.1	34.9
회 비	51.9	80.5	69.2	62.7	41.9
지역유지	12.4	4.9	5.9	8.9	15.6
회장단부담	2.2	2.4	0.5	2.6	2.4
재산/잡수입	3.9	4.9	2.2	4.6	3.9
기 타	1.1	0.8	-	1.0	1.4
계 (개소)	100.0 (1,612)	100.0 (123)	100.0 (185)	100.0 (303)	100.0 (1,001)

\* 무응답 487개소 제외

## 2) 단체관광

회식과 함께 노인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중의 하나는 단체관광이다. 노인들은 이 단체관광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간의 관계형성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 여기서는 단체관광의 빈도와 누가 주로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단체관광빈도

일반적으로 노인정 활동중에서 단체관광은 중요한 연례행사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규모가 큰 노인정의 경우는 노인정 등록회원중 신청에 따라 회원들만으로서 이루어지고, 규모가 적거나 농어촌 지역의 노인정에서는 인근의 몇개 노인정이 함께 신청자를 받아 단체로 관광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관찰조사 결과). 연간 단체관광을 어느 정도나 가는지를 알아보면 <표 3-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체로 1년에 1회 정도 단체관광을 하는 노인정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2회가 약 28%로 전체의 84% 정도의 노인정이 연 1~2회의

단체관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을 가지 않는 경우는 약 15%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연 2회(주로 봄, 가을)에 걸쳐 단체관광을 가는 비율이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의 순으로 연 1회 관광을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연 1회가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고 단체관광을 가지 않는 경우도 약 18%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 2회에 걸쳐 단체관광을 가는 비율이 크게 높았으나,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 연 1회만 가는 비율이 할머니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에 비해 많았으며, 관광을 가지 않는 비율은 할머니 노인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42> 단체관광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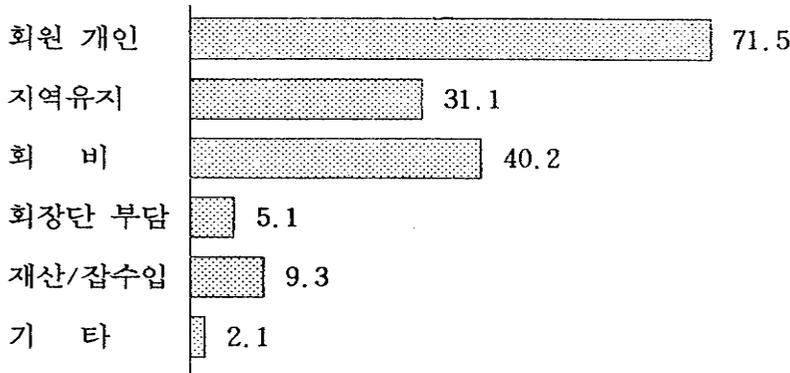
관광빈도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연 1회	56.0	25.0	48.2	49.9	62.6
연 2회	27.9	60.2	42.2	37.3	19.2
연 3회	0.9	7.8	0.9	0.6	0.2
연 4회 이상	0.6	1.5	2.3	0.3	0.2
없 음	14.6	5.5	6.4	12.3	17.8
계 (개소)	100.0 (1,915)	100.0 (128)	100.0 (218)	100.0 (359)	100.0 (1,210)

\* 무응답 184개소 제외

## (2) 단체관광비용 부담자

단체관광을 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 부담자를 복수응답으로 알아본 결과는 [도 3-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노인정에서 단체관광을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회원 각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72%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원회비가 약 40%, 지역유지로부터가 31% 정도로 나타나, 대체로 단체관광을 가기 원하는 회원에게서 그 비용을 1차적으로 충당하고 그밖

에 부족한 금액은 회원의 회비나 지역유지로부터 충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문관찰 결과 지역유지로부터의 지원내역에는 현금이나 주로 교통수단(관광버스) 제공이나 식음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 밖에는 작업장이나 기타 잡수입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비율임

[도 3-13] 관광비용 주부담자\*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 지역의 경우 회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립된 회원의 회비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약 60~65%), 중소도시나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회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약 66~79%)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에서는 지역유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할아버지 노인정에서는 회원개인부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러한 관광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적한 빈도에 있어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이 비용을 마련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공동작업

공동작업은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무료하게만 지낼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일정한 소득을 통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취지로 행해지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이다. 보사부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노인정의 작업장 설치시 지원을 해주고 있다.<sup>12)</sup> 여기서는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작업이며, 그 수입규모는 어떠한지 그리고 참여하는 노인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 (1) 공동작업여부

현재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에 의하면 <표 3-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약 9%의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작업이 대체로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작업을 희망하는 노인정은 약 22%로 전체적으로 약 1/3의 노인정이 현재 공동작업을 하고 있거나 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하고 있지

<표 3-43>

공동작업 여부

공동작업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하고 있다	9.1	14.2	9.1	12.7	7.6
하지 않지만 하고 싶다	21.9	20.9	20.1	27.0	20.9
안하고 있다	68.9	64.9	70.8	60.4	71.5
계 (개소)	100.0 (1,992)	100.0 (134)	100.0 (219)	100.0 (371)	100.0 (1,268)

\* 무응답 107개소 제외

12) 공동작업장은 지역적 특성 및 노인에 적합한 직종에 한해 설치가능한 노인정에 우선 설치하며, 보사부의 설치비 지원규모는 개소당 2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이다.

않거나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전체 노인정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서울과 중소도시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작업은 비교적 도시지역의 노인정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공동노인정의 경우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할머니 노인정보다 현재 공동작업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또한 공동작업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은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에는 공동작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약 6%)으로 나타나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2) 공동작업의 내용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표 3-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은 인근의 공장이나 기업체로 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포장이나 공정 마무리 작업 등의 공산품의 단순가공조립이 약 22%였고, 다음으로는 폐품수집 판매, 농작물경작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표 3-44> 공동작업 내용

공동작업내용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농작물 경작	10.8	-	3.3	5.6	16.3
특수작물재배	3.5	3.8	-	-	5.6
폐품수집판매	13.5	3.8	30.0	15.3	11.3
화장지 판매	7.3	-	-	13.9	6.9
공산품가공조립	21.5	23.1	26.7	20.8	20.6
지역특산물가공	5.9	-	3.3	1.4	9.4
주부/한문교실	0.3	3.8	-	-	-
기 타	37.2	65.4	36.7	43.1	37.2
계 (개소)	100.0 (288)	100.0 (26)	100.0 (30)	100.0 (72)	100.0 (160)

\* 무응답 1,811개소 제외

의 내용에는 주로 지역적 특성을 지닌 특산물(예를 들어 화문석, 싸리비)을 가공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도시지역의 경우 공산품 가공이나 폐품수집·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 농작물이나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타지역과 달리 '기타'가 많아 다양한 종류의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문관찰 결과 도시지역의 경우 공동작업장은 주로 노인정에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원하는 노인들이 작업을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장은 대체로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노인정의 내부공간을 이용하거나,<sup>13)</sup> 작업대나 환기시설을 비롯한 설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인건강이나 위생면에서 좋지 않은 작업환경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농어촌의 노인정에서는 밭이나 논이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이 많으며, 이 경우에는 1개 노인정이 개별적으로 하거나 또는 인근의 몇개 노인정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정의 형태별 공동작업 내용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공동작업의 수입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3-45>와 같다. 대체로 노인들이 하는 공동작업은 그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노인정별 월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입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큰 차이를 보여 서울의 경우 20만원 이상이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작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3) 충북의 A노인정(공동)의 경우 할머니방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노인정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의 경우 할아버지 노인정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참고로 운영 책

<표 3-45> 공동작업 월평균 수입규모

월평균수입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3만원 미만	20.3	-	27.8	10.0	29.4
3~9만원	30.1	17.6	16.7	42.5	29.4
10~20만원	28.0	23.5	44.4	27.5	25.0
20만원 이상	21.7	58.8	11.1	20.0	16.2
계 (개소)	100.0 (143)	100.0 (17)	100.0 (18)	100.0 (40)	100.0 (68)

\* 무응답 1,956개소 제외

임자들이 응답한 공동작업을 통해 버는 평균수입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 3-46>과 같은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서 월평균 약 29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기타 대도시가 가장 적어서 약 10만원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16만원의 월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이 월 21만원, 공동노인정이 약 18만원으로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반면, 할아버지 노인정의 경우 월 9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 번 수입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표 3-46> 공동작업 월평균 수입액 (단위: 원)

지역별 월평균 수입 <sup>1)</sup>		형태별 월평균 수입 <sup>2)</sup>	
전 국	161,000	전 체	161,000
서 울	289,000	할아버지 노인정	90,000
기타대도시	102,000	할머니 노인정	209,000
중소도시	137,000	공동 노인정	176,000
군 부	158,000		

1) 무응답 1,956개소 제외

2) 무응답 1,958개소 제외

않았으나, 참여관찰 결과 공동작업 수입을 노인정의 행사(단체관광, 회식 등)를 위한 공동기금으로 적립해두거나, 공동작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수입금을 작업량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대개의 경우 수입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해두고, 나머지 금액을 참여노인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공동작업 참여노인수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수를 알아보면, <표 3-47>에서와 같이 전체의 2/3 정도가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서울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이 73% 정도로 참여노인수가 적은 반면,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참여노인수가 많아져 군부의 경우 40명 이상인 경우도 23.0%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공동작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화장지나 폐품수집 등의 판매가 많은 반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작물이나 특수작물 재배 등 노동집약적인 작업이 많은 데서 기인하는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참여노인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표 3-47> 공동작업 참여노인수

참여노인수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10명 미만	25.2	72.7	41.7	30.8	13.5
10~ 19명	22.8	9.1	33.3	26.9	21.6
20~ 29명	22.0	-	25.0	15.4	27.0
30~ 39명	14.6	18.2	-	19.2	14.9
40명 이상	15.4	-	-	7.7	23.0
계 (개소)	100.0 (123)	100.0 (11)	100.0 (12)	100.0 (26)	100.0 (74)
평균노인수(명)	21.7	9.2	11.3	18.6	26.3

\* 무응답 1,976개소 제외

공동작업의 평균 참여노인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약 22명이었고, 서울은 평균 약 9명으로 가장 적었고, 기타 대도시 11명, 중소도시는 19명이었으며, 농어촌 지역이 가장 많아 평균 약 26명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시지역일수록 공동작업에서 올리는 수입이 많고 참여노인수가 적음으로 해서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개인당 소득 또한 농어촌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5) 공동작업 않는 이유

현재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 노인정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체로 인근 지역에 일거리를 줄만한 공장이나 기업체가 없어서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회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21.1%였으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하는 이유	전 국	대 도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경제적으로 도움 않됨	6.6	10.3	6.8	2.3	7.4
회원이 원치않음	21.1	34.6	31.1	24.1	17.3
일거리를 줄곳이 인근에 없음	66.1	52.3	57.6	67.6	68.5
기 타	6.1	2.8	4.5	6.0	6.8
계 (개소)	100.0 (1,660)	100.0 (107)	100.0 (177)	100.0 (299)	100.0 (1,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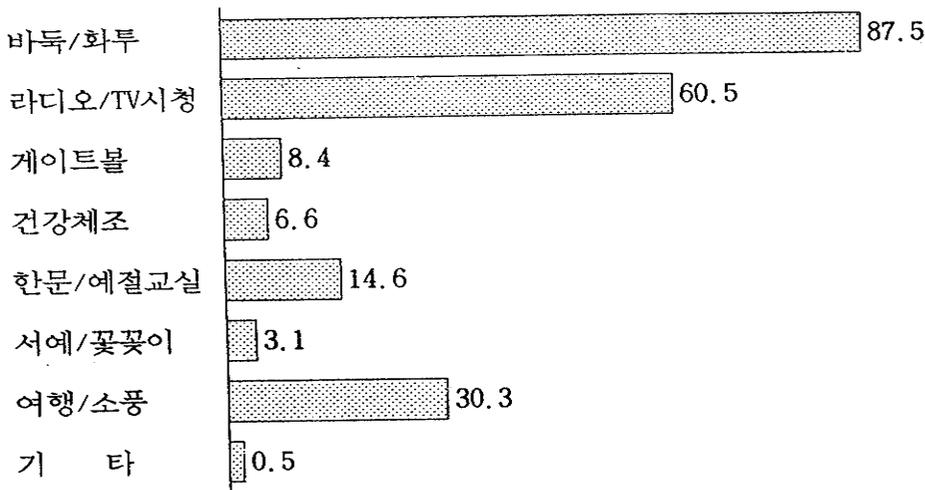
\* 무응답 439개소 제외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인근에 일거리를 줄만한 기업체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않되고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일

수록 상대적으로 회원이 원하는 비율이 높으나, 일거리를 제공해 줄 만한 기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로 공동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4) 여가프로그램

노인정 활동중에서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정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여가활동 모두를 응답한 결과를 알아보면 [도 3-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바둑이나 화투가 가장 많아 전체의 약 88%가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라디오나 TV시청(60.5%), 여행이나 소풍(30.3%), 한문이나 예절교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는 게이트볼이나 건강체조 등의 순으로 응답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현재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바둑이나 화투, 라디오/TV 시청에 국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중복응답 비율임

[도 3-14]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역별 여가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정 형태별로는 차이를 보여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공동노인정의 경우 바둑이나 화투를 하는 경우가 각각 90% 정도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할머니 노인정의 경우에는 라디오/TV시청(51.3%)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화투(49.6%), 소풍이나 관광(30.1%)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정 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복수응답을 근거로 노인정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수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2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활동수가 많고, 노인정 형태별로는 공동노인정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노인정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

#### 5) 지역사회 봉사활동

일반적으로 노인정에서는 자연보호나 교통정리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현재 이러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49>와 같다.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1/2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약 26%로 전체의 4/5 정도의 노인정에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정이 약 77%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기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농어촌과 달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정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정의 형태별로는 할머니 노인정이 공동노인정이나 할아버지 노인정에 비해 봉사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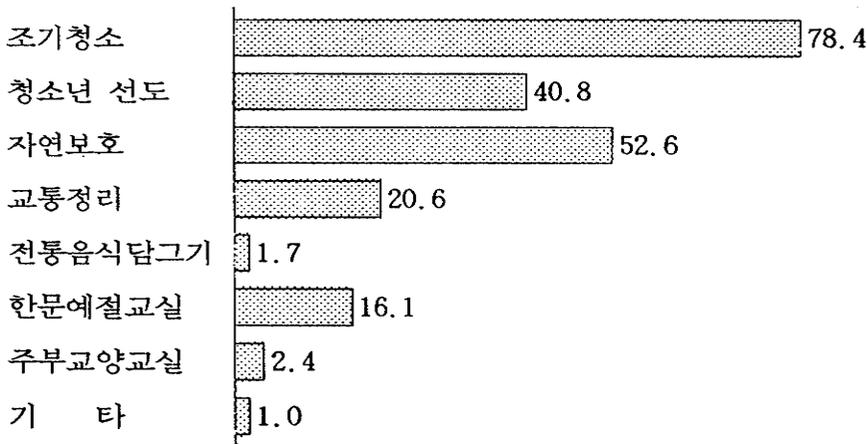
<표 3-49>

지역봉사활동 여부

지역봉사활동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하고 있다	54.7	77.4	64.8	64.0	47.6
하지 않 <del>지만</del> 하고 싶 <del>다</del>	26.4	6.6	18.3	16.7	33.0
안하고 있다	18.9	16.1	16.9	19.4	19.4
계 (개소)	100.0 (1,978)	100.0 (137)	100.0 (219)	100.0 (372)	100.0 (1,250)

\* 무응답 121개소 제외

현재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정의 경우 봉사활동 내용을 모두 응답한 결과는 다음의 [도 3-15]와 같다. 대체로 노인정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조기청소가 가장 많아 78.4%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자연보호(52.6%), 청소년선도(40.8%), 그리고 교통정리(20.6%)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sup>



\* 중복응답 비율임

[도 3-15] 지역사회 봉사활동내용\*

14) 그밖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중에는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화재 관리 또는 꽃길가꾸기, 지역주민의 노인공경을 계도하기 위한 기념탑 건립 등의 다양한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세분해서 알아보면, 지역간 구분없이 조기청소가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교통정리가 약 74%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또한 청소년 선도활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정리는 극히 적고 상대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평균 봉사활동수(약 4가지)가 농어촌 지역의 봉사활동수(약 3가지)에 비하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노인정 형태에 따라서는 공동노인정이 할아버지 노인정이나 할머니 노인정에 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현재 노인정에서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질문한 결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자연보호(51.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기청소(50.5%), 청소년 선도(44.1%), 한문예절교실(31.3%)의 순으로 지적하여, 현재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VI. 노인정 운영자의 인식 및 태도

노인정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회장)의 노인정의 기능 또는 노년기에 대한 태도 및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등은 노인정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노인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절에서는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으로서의 평소심정, 노년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 1.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노인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 3-50>과 같다. 전체 노인정 운영자들의 2/3정도가 노인정을 '노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사랑방'으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11.4%),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8.0%), '노인의 유대강화'(6.1%)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정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보다는 모여서 쉴 수 있는 사랑방이나 간단한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사랑방의 기능'이 가장 많았지만 타지역에 비해 '취미활동 장소'로서의 기능과 '지역사회 기여'의 기능을 중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노인정 책임자의 성별로는 여성인 경우 '취미생활'이나 '노인의 유대강화' 기능을 남성에 비해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50> 운영책임자의 노인정 기능에 대한 인식

노인정 기능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울	기 타		
사랑방의 역할	69.1	66.7	71.9	70.6	68.4
취미활동장소	11.4	12.8	10.4	10.4	11.8
지역사회기여	3.9	9.9	5.9	5.6	2.3
후세대 교육	8.0	3.5	5.0	5.9	9.7
공동작업장	1.4	-	1.4	2.4	1.3
노인의 유대강화	6.1	7.1	5.4	5.1	6.4
기 타	0.1	-	-	-	0.1
계 (명)	100.0 (1,994)	100.0 (141)	100.0 (221)	100.0 (374)	100.0 (1,258)

\* 무응답 105명 제외

## 2.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노인정 운영자들이 노인들의 권익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의 <표 3-5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도 노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47.8%였고, 또한 '사안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46.9%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노인들도 노인권익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할 필요가 없다'나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권익운동에 대한 태도가 매우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51> 운영책임자의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노인권익에 대한 태도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부
		서 울	기 타		
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7.8	51.8	49.5	43.2	48.4
사안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46.9	46.0	43.6	51.5	46.2
별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4.5	2.2	6.0	4.5	4.5
노인들은 참여해선 안된다	0.8	-	0.9	0.8	0.9
계 (명)	100.0 (2,002)	100.0 (139)	100.0 (218)	100.0 (377)	100.0 (1,268)

\* 무응답 97명 제외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노인 권익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노인정 형태나 운영자의 성별이나 교육정도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노인권익에 대한 노인정 운영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 3. 노인정 비참여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정 운영자에게 노인정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노인정 운영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집안 가사를 돌보아야 하므로'(25.4%), '프

로그래미 없어'(15.2%), '회비가 부담스러워'(11.6%)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정 운영자들은 지역노인들이 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하기 불편하다든지 집을 보거나 손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프로그램이 없거나 회비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밖의 이유로는 노인정에 오는 노인들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운영책임자의 비참여 노인에 대한 인식

비참여 이유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회비가 부담스러워	11.6	12.9	11.1	14.0	10.9
건강이 안좋아서	38.9	18.6	30.1	29.6	45.5
가사를 돌보므로	25.4	42.1	29.2	32.6	20.6
프로그램이 없어	15.2	13.6	20.8	12.6	15.2
수준이 달라서	5.1	8.6	6.5	7.9	3.7
기 타	3.8	4.3	2.3	3.3	4.1
계 (명)	100.0 (1,944)	100.0 (140)	100.0 (216)	100.0 (365)	100.0 (1,223)

\* 무응답 155명 제외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과 달리 주로 '집안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인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노인정 형태별로는 운영자의 성에 따라 남성인 경우에는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은 반면(40.2%), 여성인 경우에는 '가사를 돌보아야 하므로'가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운영자의 경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운영자의 경우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4. 노년기에 대한 태도

노인정 운영자의 노인으로서의 자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으로서의 평소 심정을 질문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의 <표 3-53>과 같다. 일반적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는 노인들은 평소에 노인으로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이 나빠 아무일도 할 수 없다'(17.5%), '돈이 없어 아무일도 할 수 없다'(13.6%)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욕구는 물론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과 달리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같다'(12.0%), '자녀/손자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다'(12.0%), '일의 의무감에 벗어나 홀가분하다'(6.6%)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일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자녀/손자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운영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인 경우 '돈이 없어

<표 3-53> 운영책임자의 노인으로서의 평소 심정

노인으로서의 심정	전 국	대 도 시		중소도시	군 부
		서 울	기 타		
외롭고 쓸쓸하다	27.1	28.3	27.4	27.3	26.8
건강이 나빠 아무일도 할수 없다	17.5	15.9	19.1	18.2	17.2
돈이 없어 아무일도 할수 없다	13.6	10.1	13.0	10.7	14.9
기술/지식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5.3	8.0	3.7	5.1	5.4
일의 의무감에 벗어나 홀가분하다	6.6	11.6	9.3	9.1	4.9
시간이 남아 새로운 일을 할수 있다	4.2	2.9	3.7	2.1	5.1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같다	12.8	14.5	9.8	13.1	13.0
자녀/손자로부터 효도를 받을수있다	12.0	8.0	13.0	13.6	11.8
기 타	0.9	0.7	0.9	0.8	1.0
계 (명)	100.0 (2,003)	100.0 (138)	100.0 (215)	100.0 (374)	100.0 (1,276)

\* 무응답 96명 제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와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지는 것 같다'가 많은 반면 여성인 경우에는 '외롭고 쓸쓸하다'와 '자녀양육이나 일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인으로서의 평소심정과 함께 노인정 운영자의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면 다음의 <표 3-54>와 같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노년기를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시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31.6%로 가장 많았으나, 이와 함께 '노인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표 3-54> 운영책임자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

노년기에 대한 태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서울	기타		
젊은 시절에 못한 일을 하는 시기	9.4	7.5	9.0	7.1	10.3
새로운 기술/기술을 습득하는 시기	6.1	1.5	6.7	3.8	7.2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기	19.9	29.9	16.7	26.0	17.5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시기	32.7	29.9	34.3	32.1	32.9
노인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기	31.6	29.9	32.9	30.7	31.9
기 타	0.4	1.5	0.5	0.3	0.2
계 (명)	100.0 (1,964)	100.0 (134)	100.0 (210)	100.0 (365)	100.0 (1,255)

\* 무응답 135명 제외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기', '젊은 시절에 못한 일을 하는 시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인정 운영자들이 대체로 노년기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시기', '노인권익 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시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농어촌 지역일수록 '젊은 시절에 못한 일을 하는 시기'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인정 운영자의 성에 따라서는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시기'가 많고 '노인권익 활동을 위한 시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적었지만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제 4 장 노인정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

### I. 노인정 이용률의 저조

현재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위해 가장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노인정이라고 볼 때, 노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정의 전반적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문제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적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정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외형상으로는 전체 60세 이상 인구중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30%이지만 이들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노인정을 여가활용의 장소로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률은 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중 실제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수(1일 평균 이용률)에 있어서는 전체 등록노인중 약 2/5 정도가 노인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노인들의 경우 특별한 행사때만 참여하거나 거의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전체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의 노인들만(1일 평균 약 22명)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프로그램의 미비 및 중복

노인들이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인정의 프로그램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노인들의 여가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정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소득보완 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프로그램의 중복

현재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가활용 프로그램, 소득보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등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정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공간과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노인정에서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회원들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회원들의 노인정 참여동기가 낮아지고, 참여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2.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문제

노인정의 중요한 기능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노인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화투나 장기/바둑으로 전체의 약 88%의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밖에는 라디오/TV 시청이 여가활동의 대부분이었고, 게이트볼, 건강체조, 서예 등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노인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두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정의 여가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정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적 회식이나 단체관광의 경우 그 비용은 주로 노인 개개인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이런 활동에나마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3. 소득보완 프로그램의 문제

노인들의 소득기회의 제공과 여가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노인정은 전체의 약 9%정도이며,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작업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노인정도 22%에 이르고 있고, 또한 공동작업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일거리를 줄 만한 공장이나 기업이 인근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욕구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동작업을 하는 노인정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살려 특산물을 가공·경작하는 곳도 있지만 주로 단순한 가공조립이나 폐품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고 수입면에 있어서도 노인정당 월평균 16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노동에 비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참여노인수가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노인정의 작업환경 면에서는 작업장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노인정 일부의 실내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게 되며, 작업대 또는 환기시설의 미비로 작업으로 인한 먼지나 악취 등으로 노인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4.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의 문제

전체 조사대상 노인정가운데 55% 정도가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내용은 주로 조기청소나 자연보호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그밖에 청소년선도나 교통정리 등의 활동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노인정이 지역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의 노인정은 지역사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지만 적절한 봉사활동 방안을 모르거나 또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정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욕구, 즉 적극적이고 보람있는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인정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능으

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봉사활동이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 5.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소극적 태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정의 지도력이 대체로 회장과 총무 등 노인정 운영책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볼 때,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노인정의 기능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은 노인정에서 실시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노년기에 대한 태도와 2/3정도가 노인정이 지역노인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노년기를 적극적 참여와 활동의 시기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은퇴하여 편안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시기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정은 단순한 휴식이나 소일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노인권익운동을 위한 지역노인의 조직화, 지역 또는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등과 같은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Ⅲ. 시설의 협소 및 노후화

조사대상 노인정이 설립된 시기를 보면 대체로 전체 노인정의 1/2 이상이 1980년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면에서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현상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시설의 질적 측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노인정 시설의 협소 및 노후

먼저 노인정의 규모면에서는 대체로 최근에 건립한 노인정일수록 규모가 넓고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8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의 경우 대체로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공간부족 문제 및 시설의 노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노인정의 평균 면적이 24.6평인데 이 공간으로는 1일 평균 이용노인수인 약 22명이 활동하기에 부족한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상의 문제는 공동작업을 하거나 그밖의 활동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하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촌지역보다 공간확보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인정의 건물형태에 있어서는 벽돌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등이 대부분이지만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가건물 및 기타도 약 19%에 이르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정의 보수나 신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시설의 개보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노인정과 달리, 개인이 소유주로 되어있는 노인정의 경우 더욱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정의 소유주가 개인으로서 운영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지원할 근거나 기준이 없어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 2. 노인정 기본시설 및 여가설비의 미비

노인정의 내부시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전기 및 급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난방형태에 있어서도 연탄보다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노인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 과거에 비해 기본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생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자체 화장실이나 세면시설이 없는 노인정이 아직도 많이 있고, 이런 경향은 지역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간단한 점심이나 음식을 끓일 수 있는 취사시설, 냉장고가 없는 경우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기본적인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적인 불균형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설비나 비품이 필수적인데, 현재 노인정에 가장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장기판이나 화투목, 그리고 TV 정도이고, 신문/잡지, 장구/북 등은 과반수 정도만이 구비되어 있으며, 붓/벼루나 특히 운동용구를 갖추고 있는 곳은 극히 적고, 그밖의 설비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노인의 다양한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 Ⅳ. 운영재정의 부족 및 불균형

전체 노인정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운영비는 계절, 지역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연평균 월 9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모의 운영비로 노인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정이 2/3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지역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정 운영에 애로를 겪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운영비 부족현상과 불균형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일부 운영비 조달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노인정의 90% 이상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운영비 조달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형상으로는 다양한 운영비 조달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운영비 조달원은 회원회비, 정부보조금, 지방유지의 찬조금이라는 3가지 조달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 조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정이 운영비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비 조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나 회원회비는 강제납부보다는 자진납부의 성격이 강하므로, 회원의 의사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회비를 미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유지의 찬조금 역시 자발적 기부행위에 속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찬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부 운영비 조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이들 조달원을 통하여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 2. 운영비 지출내역의 불균형

노인정의 운영비 지출내역은 시설규모, 이용노인수, 주요활동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3/4 이상의 노인정이 주된 운영비 지출항목으로 연료비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풍/단체관광비용, 월례회식비, 공공요금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면, 대부분의 노인정은 광열비, 공공요금 등 노인정 운영과 관리에 필수적인 고정비용과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월례회의, 단체관광 등의 행사비용에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출함으로써, 노인정의 일상활동에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부보조금수준의 저위 및 불균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정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에서 월운영비 2만원과 동절기에 난방연료비로 연탄 500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 기준에 의거하여 노인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정은 95% 정도이며, 연간 월평균 5만 2천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충분도에 대한 노인정 운영책임자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노인정의 3/4 이상이 정부보조금 수준

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정부보조금의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노인정은 6만 1천~9만 4천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와 군부지역의 노인정은 4만 7천~4만 9천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정부보조금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보조금의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노인정은 수준이 가장 낮은 군부지역의 약 2배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부보조금의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V.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전체 노인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한노인회는 중앙회,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일선 노인정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공식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노인회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소득보완사업(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 노인 교육사업(노인대학 및 학교, 학구단위노인교실 등), 노인여가활용사업(노인정 운영 등) 그리고 기타의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등 매우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업의 추진이 대한노인회의 조직목표인 노인회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경우 전문인력과 운영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기획,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산하조직의 지도육성 등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시도의 연합회와 시군구의 지회 역시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노인대학 또는 학교,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던가, 지역의 노인정 운영을 지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Ⅶ.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관계

노인정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내에 후원을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내의 관련기관, 단체, 지역유지 및 주민을 조직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전체 노인정의 1/5 정도만이 지역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관공서, 지역유지와 잦은 접촉을 하고 있는 노인정도 1/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지역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관공서, 지역유지와 접촉도 형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노인정 운영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지참여관찰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내의 청년회, 부녀회 등의 지역사회조직과의 연계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대부분의 노인정은 지역사회의 관공서, 관련단체, 지역유지 및 주민들을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정과 지역사회 사이의 연계성의 강도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정 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노인정들은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정에서는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체 노인정의 3/4정도가 연료비, 현금보조, 경로위문잔치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노인정 운영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지원이 비규칙적이며, 경로주간, 연말연시 등과 같은 특정시점에 집중됨으로써 실제로 노인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 제 5 장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다음에서는 이상의 노인정 운영실태 및 주요 문제점, 노인정의 기능, 노인정 참여도 증진방안을 관련·종합하여, 지역사회내의 노인정이 그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충족과정에 있어서 담당해 나가야 하는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인정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 노인정 참여유도

#### 1. 노인정의 이미지(image) 개선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그러한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러한 노인정 참여증진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는, 노인 및 지역사회 일반의 노인정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본다. 즉, 이제까지 대다수의 지역주민이나 지역내 노인들에게 노인정의 이미지는 '저소득계층 노인들이 따분히 소일하는 장소'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복지조직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들 서비스의 전문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때,<sup>1)</sup> 이의 개선을 통하여 노인정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 생활정보의 제공

노인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들은 새로운 사회변화와 생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1) J.F. Digiulio, "Marketing Social Services," Social Casework, Vol. 65, No. 4, 1984, p. 231.

위한 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노인정에서 이러한 노인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노인정이 노인들의 모든 문의에 대하여 해답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일단 관련문제를 노인정에 문의하게 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인정이 지역사회 노인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제공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이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노인정 이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기관, 일반주민에게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정 활동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보방법으로는, 노인정 이용노인들을 통하여 비이용노인들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 지역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 3. 긍정적 경험기회의 제공

노인들에게 노인정으로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노인정의 존재가치를 알려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노인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보상이나 이점을 경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노인정에서의 취미·오락활동, 친구사귀 등을 통해 삶의 즐거움이나 행복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노인들에게 즐겨서 노인정에 나오도록 만들며,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II. 노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 1. 노인정 특성별 프로그램 운영

노인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노인정외에는 별다른 노인복지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적으로는 노인정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노인센터 (multi-purpose senior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정의 시설상태, 운영재원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내에 노인정이 이와 같은 다목적 노인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정 특성별로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일 지역사회내에서도 노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흥미 등에 따라 노인정에 대한 욕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노인정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의 A 노인정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 또는 활동력이 다소 감퇴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휴식 기능 위주의 노인정'을 운영하고, ○○동의 B 노인정에서는 전기고령노인들 및 활동능력이 왕성한 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 위주의 노인정'을 운영하며, ○○동의 C 노인정은 '문화적 욕구 또는 취미오락욕구의 충족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위주의 노인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정은 지역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노인정의 프로그램은 그 지역내 노인들의 특성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상응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본다.<sup>2)</sup> 노인정이 지역별 환경에 알맞는 다양한 노인정의 운영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노인정 기능과 관련된 욕구(휴식의 욕구, 교육적 욕구, 문화적 욕구, 취미오락의 욕구, 리더십 기회의 욕구, 자원봉사활동의 욕구, 친목모임의 욕구, 시민운동의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노인정이 그 지역사회 노인집단의 구심점이 되어 그 지역실정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노인공동작업장의 분리운영

- 2) 이정호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이 지역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대상자의 욕구는 주거하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의 상황과 특성에 맞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주거지 특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개별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7, pp. 21~22).

현재 노인정내에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 ①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 ② 공동작업 비참여노인의 휴식 및 활동공간의 침해문제, ③ 노인정별 일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노후소득보완기능을 노인정의 기능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별로 노인공동작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지역내 각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작업을 통하여 소득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를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단위 노인정의 휴식·활동공간의 부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정 특성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노인정 회원가입자격을 거주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현 대한노인회의 규정을 완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둘째로 공간제한이나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위 노인정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역내의 노인복지회관(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로 이들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접근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Ⅲ.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필수요건의 충족

#### 1. 노인정의 시설보강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노인정의 경우, 시설이 비좁고 빈약하고 낙후되어 있다. 노인정이 '노인을 위한 기본적 여가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전제조건으로 노인정 시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점차로 노인정 내부에 이용노인의 점심식사 해결을 위한 간이식당을 설치하며, 노인정내 비품에 대한 재정비를 하여 간단한 물리치료기구(예: 맛사지 의자)를 비치하며, 노인정의 보건위생상태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별로 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노인정 운영재정의 확충

대다수 노인정의 경우 운영비를 주로 정부보조금 및 회원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노인정 운영에 꼭 필요한 연료비, 공공요금, 용품구입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정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노인정이 자체적으로 운영비 조달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① 노인정 참여노인의 수적 증대를 통하여 회원의 회비수입을 증진시키고, ② 노인정 운영책임자들은 지역유지나 관련단체에게 노인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접촉을 통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후원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sup>3)</sup> ③ 노인정이 자체적으로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예: 재활용품 수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단체/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정의 운영에 필수적인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을 부담함으로써,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운영비는 노인 자신들을 위한 친목도모, 여가활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법적으로 노인 여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정을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하는 제도적·법률적 조치가 강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4)</sup>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보조금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노인수, 시설규모,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차등지원하는

3) 현재는 노인정 회장의 사회활동능력 정도에 따라 노인정 재정상태가 결정되고 있다.

4) 김동배,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 (한국노년학회 세미나 자료), 1992, p. 16 참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청년회, 부녀회 등의 유관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인정 운영비 보조를 위한 공동모금운동을 전개하여, 현재의 비조직적·비규칙적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 후원방안에 대하여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함).

### 3. 노인정 회장의 리더십(leadership) 훈련

리더십(leadership)은, 조직의 목표달성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과 관련된 행동에 자발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끔 공식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sup>5)</sup>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노인정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정 회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로, 회장의 단독의사에 따라 노인정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결정·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정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인정 회장의 역할을 보완·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정 회장에 대한 리더십 훈련과정을 만들어 노인정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내 자원동원방법, 노인정 이용노인의 통합감 유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조직내에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위원회란 1인이 아닌 여러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합의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정 회장은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노인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5) 남기민,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리더십 통합모형," 사회복지학회지, 제 7호, 1985, p. 55 참조.

6) 위원회를 이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협동을 얻어내는데 유용하다. 둘째, 안건을 평가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를 얻기에 유리하다. 셋째, 여러 집단을 대표하는 개인들의 참여는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넷째, 관리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유용하며 개인적인 관점을 넓히고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위원회 참가자로부터 실행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 즉, 합치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하위집단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실행하게 된다 (Rex A. Skidmore, Social Work Administration: Dynamic 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p. 120).

여러 위원들로부터 기술적·전문적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다양한 하위 노인집단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을 통하여 여러계층 노인들의 의견과 욕구를 두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1. 현행 조직체계의 활용

현행 노인정의 조직체계인 대한노인회는 광범위한 사업내용, 전문인력의 부족, 운영재원의 부족, 관련 노인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노인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현행 대한노인회 중심의 조직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에서 산하조직체인 노인정 회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월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월례회의를 통하여 노인정 회장(지회 회장 포함)에게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의식교육,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보제공, 모범노인정의 운영사례발표를 통한 효과적 노인정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가 지역사회 최일선 노인복지서비스 조직체인 노인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자 및 교육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노인정의 자생적 지도력(indigenous leadership)을 계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운영

7)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교육사업, 노후소득보완사업, 노인여가활용사업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소한 하나의 노인복지회관<sup>8)</sup>을 설치·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이 단위 노인정에서 실시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내 노인정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sup>9)</sup>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이 미국의 노인센터(senior citizens' center) 또는 일본의 '노인휴식의 집(老人憩の家)' 및 '노인 클럽(老人クラブ)'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통합

장기적으로는 노인정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운영되게 되면,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의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정(노인복지회관 포함) 운영의 지도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사무소의 노인복지담당은 노인정의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노인정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 지역사회와 노인정의 유대관계 강화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노인조직들을 흡수·병합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노인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며, 시·도 연합회, 시·군·구 지회, 읍·면·동 노인분회 및 노인정으로 이어지는 조직

8) 노인복지회관은, 규모면에서 500m<sup>2</sup> 이상의 건평과 1일 300명 이상의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여가활동시설(규모 및 이용노인의 수가 큰 노인정이라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991년 현재 공식적으로는 29개의 노인복지회관(규모 미달의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하면, 89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가 노인복지회관을 지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목적 노인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9)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이 시·군·구별로 설치되기까지는 지역내 최우수 노인정을 선정하여, 이를 노인복지회관의 대응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이외에도 대한노인회는 기존의 노인대학과 학구단위 노인교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이들 제도를 평생교육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전문인력의 확보

노인정 프로그램의 개발과 원활한 사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전달체계내에서의 전문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즉, 노인정 프로그램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사업기획, 섭외활동, 예산, 업무관리, 평가 등의 조직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전까지의 노인정 전문인력 확보방안으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노인정 운영을 지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내 노인정들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 5. 노인집단의 조직화

노인정은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조직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조직망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로 노인정 참여목적을 달성하고 참여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정 임원과 회원사이에 긴밀한 조직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현재의 노인정 임원과 대한노인회 임원사이의 조직망을 활성화하여, 각 노

---

10) 노인조직으로는 목우회, 시우회, 삼락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있으며, 대체로 퇴직전 직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대한노인회와 무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한노인회가 우리나라 전체노인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와 그외의 모든 노인조직들이 병합되어, '대한노인단체협회(가칭)'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11)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내 설치·운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정 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이들이 노인정 사업을 지도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노인정 운영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동일지역내 여러 노인정 임원간의 조직망을 만들어서, 노인정 참여노인의 욕구 및 그 충족을 위한 효과적 방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사회 노인권익활동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다. 넷째로는 노인정과 지역사회간의 조직망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적·물적자원을 노인정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노인정 임원과 전문가 사이의 조직망을 통해 노인정 운영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원의 효율적 활용, 노인정 회원의 조직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 V. 지역사회와의 유대증진

### 1.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노인정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여기서 지역주민은 자연인외에도 공식적·비공식적 조직 및 집단을 포함)의 노인정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첫째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정부의 제도적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 셋째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의 욕구를 수용한다는 점, 넷째로, 노인과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으로써 지역사회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sup>12)</sup>

지역주민을 노인정 사업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구체적 예로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급식을 돕는 일, 거동을 못하는 노인들을 일정 장소까지 동반해 주거나 또는 이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일, 노인정의 청소나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 일 등으로 다양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역사

12) 최성재, "지역사회주민의 노인복지 참여방안," 한국노년학, 제11권 1호, 1991, pp. 87~88 참조.

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노인정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노인정의 운영비 확보를 위한 공동모금운동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지역주민과 노인정 불우노인과의 결연후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혈제도처럼, 노인정 활동에 대해 일정한 후원을 한 사람에게서는 그들이 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정 회비면제 등 여러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사회에의 기여

지역사회와 노인정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정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고자 하는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정은 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 한문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② 주부를 위한 서화교실 운영, ③ 조기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노인정 시설의 편의제공, ④ 골목청소, 방범활동, 문화재 보호활동, 교통정리 등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노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유명무실한 노인정 지역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제 6 장 결 론

노인문제는 노인인구집단 자체내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없이 단순히 노인인구집단 외부로부터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이는 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중의 하나는, 노인인구집단 자체내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원을 동원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고, 채택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정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노인정이 담당해 나가야 할 노인욕구의 해소·완화과정에서 노인정의 자체적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담당해 나갈 욕구의 범위를 넓혀 가도록 하며, 욕구충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노인정 활성화 대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정에 대한 정책은, 노인정이 전반적인 노인복지체계내에서 유기적인 기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 노인정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변화에 따라 항상 새로이 모색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정책의 효과는 정책자체의 효과(직접적 효과)와 유발효과(간접적 효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노인정에 대한 정책은 노인정의 특성상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유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노인인구층 자체의 표면화되지 못한 자원을 창출·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또한 다른 자원(민간자원이라든가 기타 비노인인구층에서의 복지자원 등)을 유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제하에, 노인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노인정의 참여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① 노인정 이용노인에게는 노년기에 필요한 생활정보의 제공, 복지자원 연결서비스 등을 통하여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② 비이용노인에게는 노인정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며, ③ 노인정 시설의 편의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하여 노인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노인정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노인정의 시설 및 운영재정상태로는 단위 노인정이 지역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노인정이 이용노인의 우선적 욕구충족을 위한 단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자신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노인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노인정 회원가입자격을 거주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정이 지역노인의 일차적 여가활동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즉, 노인정의 시설보강(특히 간이식당의 설치), 비품의 재정비, 보건위생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운영재원의 확충을 위하여는 노인정, 지역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노인정에서는 이용노인의 참여증진을 통하여 자체적 회비수입을 늘려 나가고,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정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정 시설보강 및 재정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정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는 중·단기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대한노인회 중앙회, 연합회 및 지회의 조직체계를 활성화하여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자문·지도가 활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시·군·구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노인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단위 노인정에서 실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며, 노인복지회관이 지역내 노인정의 상위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맞춰 노

인정의 운영 관련업무를 점진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의 노인복지과와 연계 시키도록 한다. 이외에 노인정 사업을 효율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전까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활용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내 노인정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노인정 사업에의 참여유도와 동시에 노인정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주민이 노인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급식원조,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인정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노인정 재정지원을 위한 공동모금, 노인정 이용 불우노인과의 결연후원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정을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다. 한편 노인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지역주민을 위한 노인정 시설의 편의 제공,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 건설부, 주택건설법 시행령, 1991.
- 건설부, 주택건설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 1991.
- 김경동·이은숙, 사회조사방법연구, 박영사, 1986.
- 김동배,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한국노년학회 세미나 자료), 1988.
- 김동배, "한국노인의 노인정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2호, 1988.
- 김동배,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대한 시론," 한국노년학, 제8호, 1988.
- 김석희,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2.
- 남기민, "사회복지조직체에서의 리더쉽 통합모형," 한국사회복지학, 제7호, 1985.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법령·정관·운영규정집, 1991.
- 박재간외, 노인여가시설 및 그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4.
- 보건사회부, 경로당 관리운영지침, 1989.
- 보건사회부, 노인복지법령, 1991.
- 성규탁, "인간봉사조직체의 효과성 평가연구: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소의 경우," 한국사회복지학, 제8호, 1986.
-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1992.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 양창삼, 조직이론, 박영사, 1990.
- 오준식, "노인의 여가선용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유석준, 조직론, 법문사, 1985.

- 유종해,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1988.
- 이가옥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이정호,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87.
- 임길상, "농촌노인들의 일과와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79.
- 임미숙, "도시노인의 노인정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인협외, 사회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2.
- 최병애, "도시노인의 여가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최성재, "지역사회주민의 노인복지 참여방안," 한국노년학, 제11권 1호, 1991.
-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재, 1989.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속보, 1991.
- 통계청, 1990 인구주택 총조사속보, 1991.
- 현두일, "노인과 지역사회," 아산, 제17호, 1982.

#### < 외국문헌 >

- Bass, B. M. & Drenth, Pieter J., *Advances in Organizational Psycholog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7.
- Bley, Nina et al., "Characteristics of Aged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Age-Segregated Leisure Program," *The Gerontologist*, Vol.12, No. 4, 1972.
- Corbin, H. Dan & Tait, W.J., *Education for Leisur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 Darley, John M. et 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4.

- DiGuilio, J.F., "Marketing Social Services," *Social Casework*, Vol. 65, No. 4, 1984.
- Downing, J.,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ve Use of a Social Club for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Vol. 12, No. 1, 1957.
- Goodrow, B.A., "Limiting Factors in Reducing Participation in Older Adult Learning Opportunities," *The Gerontologist*, Vol. 15, No. 5, 1975.
- Hanssen, A.N. et al., "Correlates of Senior Center Participation," *The Gerontologist*, Vol. 18, No. 2, 1978.
- Havighurst, R.J., "Leisure and Aging," in Hoffman, A.M. & Bechill, W.O. (eds.), *The Daily Needs and Interest of Old People*, Thomas Charles Co., 1970.
- Hoppa, M.E. et al., "Implications of the Activity Factor," *The Gerontologist*, Vol. 14, No. 4, 1974.
- Kaplan, M., "The Uses of Leisure," in Tribbitts, C. (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1960.
- Kim, Dongbae, "Factors Influencing Senior Center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a dissertatio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8.
- Kourt, John A., "Rural-Urban Differences in Senior Center Activities and Services," *The Gerontologist*, Vol. 27, No. 1, 1987.
- Lowy, Louis, *Social Work with Aging: The Challenge and Promise of the Later Years*, New York: Harper & Row, 1979.
- Maslow, A.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 Rakich, Jonathan S. et al., *Managing Health Care Organizations*,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77.
- Rubin, Herbert J. & Rubin, Irene, *Community Organizing & Development*,

Columbus: Merrill Publishing Co., 1986.

Skidmore, Rex A., *Social Work Administration: Dynamic Management and Human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Smelser, Neil J., *Soci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1.

Tissue, Thomas, "Social Class and the Senior Citizen Center," *The Gerontologist*, Vol. 11, No. 2, 1971.

経済企劃廳綜合計劃局 編, 活力ある 高齢社會を目指して:高齢社會への課題と對應,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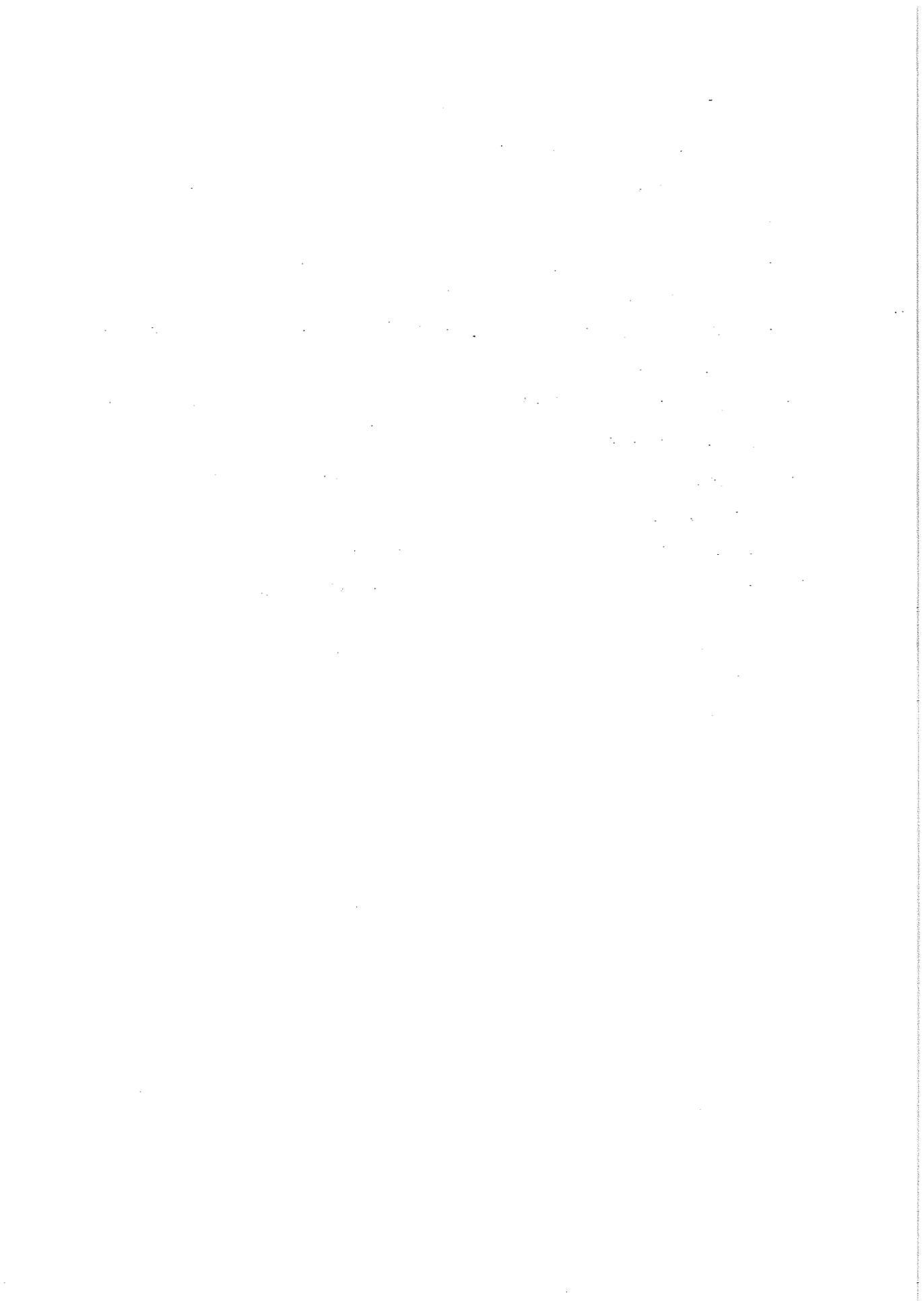
経済企劃廳國民生活局 編, 高齢者の新しい社會參加活動を求めて:高齢者の能力活用に関する實態調査, 1983.

経済企劃廳國民生活局 編, 人生80年における時代:労働と餘暇, 1986.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老人福祉部會 編, 高齢者のためのサ-ビスセンター, 1987.

佐野豪編著, 高齢者のレクソエ-シ ョン, 泰流社, 1980.

天野勤・千葉和夫, 老人のレクリエ-シ ョン,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1.



# 부 록

I. 조사표

II.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명단



# 부록I. 조사표

노인정 조사표

지회번호			노인정번호	

## 노인정 활성화 방안

1992

지회 이름		노인정 이름	
주 소			
회장 성명		전화번호	

보 건 사 회 부  
대 한 노 인 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표 기재요령

본 조사는 「노인정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힌 회장님께 조사표를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여, 응답을 우편으로 회수하는 조사입니다. 회장님들께서 바쁘신줄 알지만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입하셔서 동봉한 반송봉투로 우송해주시면, 우리나라 노인정 및 나아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먼저 노인정 회장님이 연로하셔서 직접 기입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무님이나 노인정의 다른 분이 질문을 읽어 주시고 대신 회장님의 답변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첫째, 조사표 표지에 있는 빈칸에 지회 이름, 노인정 이름, 주소, 회장님 성함과 전화번호를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 모든 질문에는 번호 앞의 \_\_\_에 √표로 기입하시되, 단 우선순위로 세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번호 앞의 \_\_\_에 1, 2, 3의 순서로 번호를 써주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기)     \_\_\_ ① 남      ② 여
- 할아버지회와 할머니회가 함께 있는 공동 노인정의 경우, 노인정이 1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질문에 할아버지회와 할머니회를 합해서 기입해 주십시오
- 질문문항의 화살표는 해당되는 번호에 기입하신 경우에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번호로 옮겨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 응답해주신 모든 결과는 전체가 묶여져서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개인적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오니 노인정을 운영하시면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솔직히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I. 운영자 일반사항

1. 노인정의 운영을 맡고 계시는 회장님의 성별은?  
\_\_\_ ① 남 \_\_\_ ② 여
2. 노인정 회장님의 연세는? 만 \_\_\_\_\_ 세
3. 노인정 회장님의 교육정도(중퇴 포함)는?  
\_\_\_ ① 다니지 않았음 \_\_\_ ② 서당(한학) \_\_\_ ③ 국민학교  
\_\_\_ ④ 중학교 \_\_\_ ⑤ 고등학교 \_\_\_ ⑥ 대학교 이상
4. 노인정 회장으로 재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_\_\_\_\_ 년

## II. 노인정 일반사항

5. 귀 노인정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_\_\_\_\_ 년도
6. 귀 노인정은 할아버님만 나오십니까, 할머니님들만 나오십니까?  
\_\_\_ ① 할아버지만 나오신다 }  
\_\_\_ ② 할머니만 나오신다 } -----> 7 번으로  
\_\_\_ ③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나오신다 -----> 6-1 번으로
- 6-1.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나오시는 노인정이라면, 할아버지방  
과 할머니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_\_\_ ① 따로 사용한다 \_\_\_ ②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한다
- 6-2. 할아버지회와 할머니회의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_\_\_ ① 할아버지회, 할머니회가 각각 회장을 두고 별개로 운영한다  
\_\_\_ ② 1명의 회장이 총괄하되, 할아버지, 할머니 부회장을 둔다  
\_\_\_ ③ 1명의 회장이 총괄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부회장을 따로  
두지 않는다  
\_\_\_ ④ 기타(어떻게: \_\_\_\_\_ )
7. 귀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노인(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은 몇  
분이십니까? 총 \_\_\_\_\_ 명 (남 \_\_\_\_\_ 명, 여 \_\_\_\_\_ 명)
8. 귀 노인정에는 하루에 평균 몇 분이 나오십니까? 공동노인정인  
경우 모두 합해서 적어주세요 하절기: \_\_\_\_\_ 명, 동절기: \_\_\_\_\_ 명
9. 귀 노인정은 다음중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_\_\_ ① 단독주택(농가 포함)지역 \_\_\_ ② 아파트단지  
\_\_\_ ③ 연립주택 단지 \_\_\_ ④ 상가지역  
\_\_\_ ⑤ 기타(어디: \_\_\_\_\_ )
10. 귀 노인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인  
경우는 모두 합해서 적어주세요  
대지: \_\_\_\_\_ 평, 건물: \_\_\_\_\_ 평

11. 현 노인정의 건물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_\_\_① 콘크리트/벽돌건물 \_\_\_② 시멘트  
 \_\_\_③ 무허가 가건물 \_\_\_④ 기타(어떤: )
12. 귀 노인정은 독립된 건물입니까, 아니면 같이 쓰는 건물입니까?  
 \_\_\_① 노인정만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이다  
 \_\_\_② 마을회관(또는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에 속해 있다  
 \_\_\_③ 아파트(또는 상가) 등의 공동건물이다  
 \_\_\_④ 기타(어떤: )
13. 귀 노인정의 건축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_\_\_① 정부(시, 군, 구) \_\_\_② 지역주민 공동부담 \_\_\_③ 특정 독지가  
 \_\_\_④ 회원들의 모금 \_\_\_⑤ 기타(누가: )
14. 귀 노인정에는 다음의 시설이나 용품이 있습니까? 있는 것은 모두 /표 해주십시오  
 \_\_\_① 전기시설 \_\_\_② 상수도 \_\_\_③ 취사기구/시설  
 \_\_\_④ 전화 \_\_\_⑤ 운동용구/시설 \_\_\_⑥ 화장실  
 \_\_\_⑦ 세면도구/시설 \_\_\_⑧ 텔레비전 \_\_\_⑨ 라디오  
 \_\_\_⑩ 냉장고 \_\_\_⑪ 선풍기 \_\_\_⑫ 붓/벼루/떡  
 \_\_\_⑬ 장구/북 \_\_\_⑭ 장기/바둑, 화투 \_\_\_⑮ 신문·잡지도서  
 \_\_\_⑯ 연탄보일러 \_\_\_⑰ 기름보일러 \_\_\_⑱ 기타( )
15. 귀 노인정에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노인정 후원회가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16. 귀 노인정에는 노인정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17. 귀 노인정에는 회칙 또는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② 없다
18. 귀 노인정에는 금전출납장부가 있습니까?  
 \_\_\_① 있다 \_\_\_\_\_> 18-1 번으로  
 \_\_\_② 없다 \_\_\_\_\_> 19 번으로  
 > 18-1. 금전출납장부가 있다면, 귀 노인정에서는 연말에 회원들에게  
 연간결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_\_\_① 하고 있다 \_\_\_② 하고 있지 않다

### III. 노인정 운영

19. 귀 노인정의 월평균 총 운영비(노인정행사 등 활동비 포함)는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하절기: 월\_\_\_\_\_원, 동절기: 월\_\_\_\_\_원



\_\_\_ ③ 기타(어떻게: \_\_\_\_\_ )

25. 귀 노인정에서는 지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계십니까?

- \_\_\_ ① 매월 낸다
  - \_\_\_ ② 분기별(3개월)로 낸다
  - \_\_\_ ③ 6개월에 한번씩 낸다
  - \_\_\_ ④ 기타(어떻게: \_\_\_\_\_ )
  - \_\_\_ ⑤ 내지 않는다
- 25-1. 그러면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_\_\_\_\_ 원

26. 귀 노인정에서는 새로 입회하는 노인들에게 입회비(가입비)를 받고 있습니까?

- \_\_\_ ① 받는다
  - \_\_\_ ② 받지 않는다
- 26-1. 받는 경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_\_\_\_\_ 원

27. 그러면 일단 가입된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_\_\_ ① 매월 수납한다
  - \_\_\_ ② 3개월에 한번씩 수납한다
  - \_\_\_ ③ 6개월에 한번씩 수납한다
  - \_\_\_ ④ 기타(어떻게: \_\_\_\_\_ )
  - \_\_\_ ⑤ 받지 않는다
- 27-1. 회비를 받는 경우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_\_\_\_\_ 원

28. 귀 노인정에서는 회비를 못내는 노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 \_\_\_ ① 출입을 금지시킨다
- \_\_\_ ②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 \_\_\_ ③ 출입은 통제하지 않되 차별할 수밖에 없다

#### IV. 노인정 활동

29. 귀 노인정에서는 회원들이 회식을 하십니까?

- \_\_\_ ① 월 2-3회 정도
  - \_\_\_ ② 월 1회 정도
  - \_\_\_ ③ 2-3개월에 1회
  - \_\_\_ ④ 이따금씩 한다(연간 \_\_\_\_\_ 회)
  - \_\_\_ ⑤ 거의 하지 않는다
- 29-1. 회식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_\_\_ ① 돌아가면서 회원의 집에서 한다
  - \_\_\_ ② 노인정에서 차려서 한다



- \_\_\_① 바둑/장기/화투 \_\_\_② 라디오/TV시청 \_\_\_③ 게이트볼  
 \_\_\_④ 노인건강체조 \_\_\_⑤ 한문/예절교실 \_\_\_⑥ 서예/꽃꽂이  
 \_\_\_⑦ 여행, 소풍 \_\_\_⑧ 기타(무엇: ) \_\_\_⑨ 없다

35. 귀 노인정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_\_\_① 하고 있다 -----> 35-1 번으로  
 \_\_\_②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싶다 -----> 35-2 번으로  
 \_\_\_③ 하고 있지 않다 -----> 36 번으로

> 35-1. 하고 있다면 어떤 활동입니까? 모두 √표 해주십시오

- \_\_\_① 조기청소/자연보호 \_\_\_② 청소년선도/방법활동  
 \_\_\_③ 자연보호활동 \_\_\_④ 교통정리  
 \_\_\_⑤ 전통음식 담가주기 \_\_\_⑥ 아동/청소년 한문예절교실  
 \_\_\_⑦ 주부교양교실 \_\_\_⑧ 기타(무엇: )

> 35-2.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싶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_\_\_① 조기청소/자연보호 \_\_\_② 청소년선도/방법활동  
 \_\_\_③ 자연보호활동 \_\_\_④ 교통정리  
 \_\_\_⑤ 전통음식 담가주기 \_\_\_⑥ 아동/청소년 한문예절교실  
 \_\_\_⑦ 주부교양교실 \_\_\_⑧ 기타(무엇: )

36. 현재 노인정 회원가입자격을 주민등록지의 노인정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① 당연히 제한해야만 한다  
 \_\_\_② 노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전혀 제한할 필요가 없다  
 \_\_\_③ 기타(어떻게: )

37. 이웃에 있는 노인정과는 현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 \_\_\_① 갖고 있다 -----> 37-1 번으로  
 \_\_\_② 갖고 있지 않다 -----> 38 번으로

> 37-1. 모임을 갖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_\_\_① 소풍/야유회를 같이 간다  
 \_\_\_② 지역봉사활동을 같이 한다  
 \_\_\_③ 건강체조/게이트볼을 같이 한다  
 \_\_\_④ 취미교실을 같이 한다  
 \_\_\_⑤ 공동작업을 같이 한다  
 \_\_\_⑥ 민속놀이를 같이 한다  
 \_\_\_⑦ 월례회의에 초대하여 대접한다  
 \_\_\_⑧ 기타(무엇: )

> 38. 모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웃 노인정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 ②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 ③ 같이 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④ 이웃 노인정 노인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 ⑤ 접촉은 하고 싶지만 회원들이 싫어하므로
- ⑥ 기타(무엇: )

39. 이웃 노인정의 노인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② 가끔씩 만났으면 좋겠다
- ③ 접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④ 기타(어떻게: )

**V. 노인정의 역할과 기능**

40. 노인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해당 항목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노인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
- ②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 ③ 교통정리, 조기청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곳
- ④ 한문교실, 예절교육 등을 통하여 후세대에 기여하는 곳
- ⑤ 공동작업, 판매 등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 ⑥ 지역노인의 유대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곳
- ⑦ 기타(무엇: )

41. 노인정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노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사안에 따라 참여 해야 한다
- ③ 별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 ④ 노인들은 참여해서는 안된다

42. 귀 동네나 마을에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는 노인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노인정에 안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 ① 노인정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 ②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③ 집을 지키거나 손자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 ④ 노인정에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⑤ 노인정의 노인들과 어울리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 ⑥ 기타(무엇: )

43. 노인으로서 평소에 갖고 있는 심정중 가장 잘 맞는 것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다음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롭고 쓸쓸하다
- ② 건강이 나빠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③ 돈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④ 기술도 지식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 ⑤ 자녀양육과 일의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하고 좋다
- ⑥ 시간이 많아 젊어서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 좋다
- ⑦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졌다
- ⑧ 자녀와 손자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 ⑨ 기타(무엇: \_\_\_\_\_ )

44. 노년기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젊은 시절에 못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기
- ② 젊은이 못지 않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시기
- ③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
- ④ 일선에서 물러나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하는 시기
- ⑤ 노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
- ⑥ 기타(어떤: \_\_\_\_\_ )

45. 이 밖에 노인정을 운영하시면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나 노인 정 활성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

---

◇ 끝까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II: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명단

### 서울특별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140-120	용산구 효창동 산 9-1	(02)715-1871
101	종로구	110-530	종로구 인사동 110	723-1900
102	중 구	100-272	중구 필동 2가 134-28	267-4615
103	용산구	140-030	용산구 이촌동 301-147	793-5561
104	성동구	133-180	성동구 능동 369-14	457-9544
105	동대문구	130-020	동대문구 전농2동 103-482	245-0030
106	중랑구	131-231	중랑구 묵1동 81-21	979-3562
107	노원구	131-231	노원구 중계동 547-7	978-6348
108	도봉구	132-102	도봉구 미아5동 860-56	980-3200
109	성북구	136-075	성북구 안암동5가 104-37	923-3666
110	서대문구	120-080	서대문구 현저동 5-5	363-1334
111	은평구	122-011	은평구 응암1동 96-3	385-6262
112	마포구	121-070	마포구 용감동 98	715-0308
113	서초구	137-072	서초구 양재동 25	573-5415
114	강서구	157-040	강서구 염창동 275-12	651-8339
115	강남구	135-010	강남구 청담동 40-33	542-2234
116	양천구	158-072	양천구 목1동 405-233	646-0037
117	영등포구	150-103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69-1	678-4287
118	구로구	152-053	구로구 구로3동 777-1	856-4598
119	관악구	151-054	관악구 봉천4동 산 175-21	882-3158
120	동작구	156-010	동작구 신대방동 396 보라매공원	841-5255
121	송파구	138-160	송파구 송파2동 97-41	421-4229
122	강동구	134-021	강동구 천호1동 41	486-3125

### 부산직할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607-084	동래구 연산4동 578	(051)861-0119
123	중구	600-091	중구 대청동1가 15	247-1820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124	서구	602-022	서구 대신동1가 265-1	(051)255-0734
125	동구	601-034	동구 수정4동 1180	462-1934
126	영도구	606-065	영도구 봉래동5가 131	48-4888
127	부산진구	614-041	부산진구 전포1동 235-1	807-3240
128	동래구	607-012	동래구 명륜2동 700-199	558-2666
129	남구	608-011	남구 남천동 552	622-7265
130	북구	616-040	북구 덕포동 417-9	93-3488
131	해운대구	612-011	해운대구 중1동 산91-1	72-8278
132	사하구	604-081	사하구 괴정1동 823-2	202-8810
133	강서구	618-141	강서구 대저1동 2336-5	98-7767
124	금정구	609-400	금정구 서동 302-1885	522-0178

#### 대구직할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704-081	달서구 성당동 71-10	(053) 66-5328
135	중구	700-442	중구 남산2동 571-18	252-3627
136	동구	701-031	동구 효목1동 120-1	956-8117
137	서구	703-064	서구 내당4동 463-7	54-5336
138	남구	705-036	남구 대명6동 1046	68-7103
139	북구	702-026	북구 칠성2가 1동 302-140	33-3459
140	수성구	706-021	수성구 만촌1동 1417	752-0377
141	달서구	704-081	달서구 성당동 84-4	66-7755

#### 인천직할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401-011	남구 송의1동 441-48	(032)883-3751
142	중구	400-190	중구 전동 34	72-2579
143	동구	401-071	동구 송림2동 56	73-6404
144	남구	402-201	남구 주안1동 75-180	428-0934
145	남동구	405-243	남동구 만수3동 844-15	433-4085
146	북구	403-014	북구 부평4동 239	93-1035
147	서구	404-222	서구 석남2동 573	572-1460

광주직할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502-011	서구 서1동 261-40	(062) 68-7374
148	동구	501-190	동구 학운동 721	222-8324
149	서구	502-011	서구 서1동 261-40	66-4530
150	북구	500-060	북구 신안동 148	55-6075
151	광산구	506-010	광산구 중앙동 893-11	942-0002

대전직할시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301-012	중구 대흥2동 326-44	(042)253-4147
152	동구	300-120	동구 용운동 296-3	271-4706
153	중구	301-012	중구 대흥2동 326-44	252-6937
154	서구	302-171	서구 갈마동 295-17	526-4832
155	유성구	305-301	유성구 봉명동 45-1	822-1751
156	대덕구	306-130	대덕구 평촌동 222-22	932-6069

경기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440-050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51-1	(0331) 6-2245
157	수원시	440-050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52	(0331) 42-1377
158	성남시	461-144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56	(0342) 47-6379
159	의정부시	480-011	의정부시 의정부1동 30-6	(0351) 2-6068
160	안양시	430-015	안양시 안양5동 627-98	(0343) 49-5945
161	부천중구	421-112	부천시 중구 원미2동 126-4	(032)653-0504
162	부천남구	422-050	부천시 남구 소사동 64	(032) 63-0260
163	광명시	423-060	광명시 하안동 726-3	(02)894-7770
164	송탄시	459-030	송탄시 이충동 471-1	(0333) 62-7783
165	동두천시	483-033	동두천시 생연3동 597	(0351)865-4157
166	안산시	425-130	안산시 원곡동 746-8	(0345)494-4546
167	과천시	427-040	과천시 별양동 45	(02)502-9513
168	구리시	471-010	구리시 인찬동 산 2-123	(0346) 62-2495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169	평택시	450-151	평택시 비전1동 631	(0333) 52-7958
170	미곡시	473-800	미곡시 금곡동 146-8	(0346)591-3337
171	오산시	445-800	오산시 오산8동 852-11	(0339) 72-1772
172	시흥시	429-020	시흥시 신천동 55브럭 33롯데	(032)691-3535
173	군포시	433-810	군포시 당동23-5 1롯데시청별관	(0343) 52-8125
174	의왕시	437-070	의왕시 오전동 348	(0343) 52-1256
175	하남시	465-250	하남시 하산곡동 69-1	(0347)792-6025
176	고양시	411-800	고양시 성사동 705	(0344) 64-7851
177	양주군	482-850	양주군 회천읍 회정리 산44-12	(0351)866-0475
178	남양주군	473-800	미곡시 금곡동 146-8	(0346)591-3968
179	여주군	469-800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4-91	(0337) 2-4995
180	평택군	451-870	평택군 안중면 대반리 산7-5	(0333) 81-1133
181	화성군	445-800	오산시 오산8동 852-11	(0339)374-4269
182	파주군	413-800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772-11	(0348)941-9595
183	광주군	464-800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18	(0347) 61-4409
184	연천군	486-800	연천군 연천읍 차탄1리	(0355) 34-0898
185	포천군	487-800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35-17	(0357) 33-7660
186	가평군	477-800	가평군 가평읍 읍내1리 536-2	(0356) 82-0763
187	양평군	476-80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0338) 71-2826
188	이천군	467-800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39	(0336)635-5507
189	용인군	449-800	용인군 용인읍 김장량리 131-20	(0335) 33-2029
190	안성군	456-800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4	(0334) 73-5393
191	김포군	415-800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152	(0341) 84-6265
192	강화군	417-800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0-10	(0349) 2-4086
193	옹진군	400-103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15	(032)880-2482

#### 강원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연합회	200-130	춘천시 근화동 700	(0361) 3-0711
194	춘천시	200-092	춘천시 효자2동 767-21	(0361) 52-9493
195	원주시	220-050	원주시 일산동 184-2	(0371) 42-5840
196	강릉시	210-010	강릉시 홍제동 96-54	(0391) 2-7985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197	동해시	240-010	동해시 천곡동 1033	(0394) 32-8849
198	태백시	235-010	태백시 황지2동 274	(0395) 52-4709
199	속초시	217-060	속초시 교동 664-242	(0392) 33-2926
200	삼척시	245-010	삼척시 남양동 10통	(0397) 73-7857
201	춘성군	200-043	춘천시 중앙로 3가 66-13	(0361) 53-5654
202	홍천군	250-800	홍천군 홍천읍 희망6리 67	(0366) 33-0776
203	횡성군	225-800	횡성군 횡성읍 읍하1리 56-2	(0372) 43-3553
204	원주군	220-050	원주시 일산동 원주군청	(0371) 46-4140
205	영월군	230-800	영월군 영월읍 영흥7리	(0373)374-2015
206	평창군	232-800	평창군 평창읍 하5리 147-5	(0374) 32-2973
207	정선군	233-800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0398) 63-0207
208	철원군	269-800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0353) 52-3390
209	화천군	209-800	화천군 화천읍 아1리	(0363)442-2627
210	양구군	255-800	양구군 양구읍 중2리	(0346)481-2187
211	인제군	252-800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4반	(0365)461-2868
212	고성군	219-800	고성군 간성읍 읍하1리	(0392)681-2325
213	양양군	215-800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0396)671-3789
214	명주군	213-800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5리 337	(0391)662-2496
215	삼척군	245-010	삼척시 남양동 10통 보건소	(0397) 73-7857

#### 충청북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360-101	청주시 사직1동 241-1	(0431) 65-0363
216	청주시	360-130	청주시 서문동 119	(0431) 55-0420
217	충주시	380-060	충주시 교현동 351-2	(0441)847-8683
218	제천시	390-012	제천시 중앙로2가 산 26-1	(0443) 2-3394
219	증평출장소	367-900	괴산군 증평읍 증동 1-3	(0445)838-2129
220	청원군	360-101	청주시 사직1동 241-1	(0431) 65-0364
221	보은군	376-800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75-2	(0433) 2-2661
222	옥천군	373-800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산 37-1	(0475) 2-2417
223	영동군	370-800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41-45	(0414) 42-2402
224	진천군	365-800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24-4	(0434) 33-2716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225	괴산군	367-800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7-40	(0445) 32-2444
226	음성군	369-800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 817-49	(0446) 72-3431
227	충원군	380-060	충주시 교현동 351-2	(0441)847-7234
228	제천군	390-030	제천시 의림동 25-35	(0443) 42-8005
229	단양군	395-800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39	(0444) 22-2628

### 충청남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301-012	대전시 중구 대흥2동 326-44	(042)253-0174
230	천안시	330-030	천안시 오룡동 149-1	(0417) 63-8824
231	공주시	314-040	공주시 옥룡동 산7-1	(0416) 54-1701
232	대천시	355-140	대천시 동대동 983-8	(0452)935-2968
233	온양시	336-010	온양시 온천2동 206-24	(0418)545-5714
234	서산시	356-020	서산시 읍내3동 496-1	(0455)665-6620
235	금산군	312-800	금산군 금산읍 상리 312	(0412) 2-4302
236	연기군	339-800	연기군 조치원읍 교동 20-1	(0415)865-3605
237	공주군	314-050	공주시 중동 312-3	(0416) 55-3072
238	논산군	320-800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92-25	(0461)735-6229
239	부여군	323-800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	(0463)835-4123
240	서천군	325-800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10-7	(0459) 2-2074
241	보령군	355-010	대천시 대천동 137-1	(0452)935-3906
242	청양군	345-800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구	(0454) 43-3293
243	홍성군	350-800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4-3	(0451) 34-0103
244	예산군	340-800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0458) 2-6587
245	서산군	356-010	서산시 읍내동 481-1	(0455) 64-2538
246	태안군	357-90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4-10	(0455) 73-2959
247	당진군	343-800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구	(0457) 52-0569
248	아산군	336-101	온양시 온천1동 107	(0418)545-2408
249	천안군	333-800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378-11	(0417)581-8032
250	계룡지회	320-910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1구 19-6(0461)	33-8924

전라북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560-18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가 1546-1	(0652) 77-2086
251	전주시	560-18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가 1546-1	(0652) 72-6502
252	군산시	573-110	군산시 오룡동 840	(0654) 63-0931
253	이리시	570-101	이리시 남중동 1가 86-257	(0653) 52-1618
254	청주시	580-050	청주시 상동 282	(0681) 32-1611
255	남원시	590-050	남원시 하정동 185-1	(0671) 2-2086
256	김제시	576-010	김제시 요촌동 105-1	(0658) 44-0298
257	완주군	565-80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19-5	(0652)291-3752
258	진안군	567-800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0655) 33-3393
259	무주군	568-80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4-1	(0657) 22-0515
260	장수군	597-800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87-7	(0656)351-2265
261	임실군	566-800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02-1	(0673) 42-2586
262	남원군	590-050	남원시 동충동 202-12	(0671) 32-4956
263	순창군	595-800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501-1	(0674) 53-1600
264	정읍군	582-900	정읍군 신래인읍 읍사무소	(0681)571-7367
265	고창군	585-800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92-52	(0677) 64-4509
266	부안군	579-800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24-21	(0683) 84-3728
267	김제군	577-800	김제시 신평동 491-1	(0658)547-6207
268	옥구군	575-910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731-1	(0654)451-3690
269	익산군	572-800	익산군 함열읍 와리 548-32	(0653)861-6780

전라남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연합회	502-011	광주시 서구 서1동 261-40	(062) 68-4510
270	목포시	530-340	목포시 대성2동 201	(0631) 79-6851
271	여수시	550-180	여수시 국동 687-1	(0662) 43-3300
272	순천시	540-190	순천시 장천동 81	(0661)744-3792
273	나주시	520-020	나주시 금계동 13-2	(0613) 32-5843
274	여천시	555-010	여천시 학동 34-8	(0662) 83-2131
275	동광양시	545-910	동광양시 성황동 453-1	(0667)761-6782
276	담양군	517-800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12-7	(0684) 2-4132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277	곡성군	543-800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61-9	(0688) 2-2158
278	구례군	542-800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36-5	(0664) 2-3394
279	광양군	545-800	광양군 광양읍 읍내리 312-1	(0667) 2-1542
280	여천군	556-020	여수시 공화동 1094	(0662) 62-2191
281	승주군	541-800	승주군 평중리 2-12	(0661) 54-5381
282	고흥군	540-800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35-5	(0666) 35-2477
283	보성군	546-800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693-3	(0694) 52-3998
284	화순군	519-800	화순군 화순읍 훈리 63	(0612)374-3872
285	장흥군	529-800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79-1	(0665) 2-5560
286	강진군	527-800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4-7	(0638) 2-5964
287	해남군	536-800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33-4	(0634) 32-0003
288	영암군	526-800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6-1	(0693) 73-4193
289	무안군	534-800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43-7	(0636) 52-8567
290	나주군	520-040	나주시 서내동 3-2	(0613) 33-9669
291	함평군	525-800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0615) 22-2933
292	영광군	513-800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10	(0686) 52-8567
293	장성군	515-800	장성군 장성읍 청운2동 1485-6	(0685) 2-3042
294	완도군	537-800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729-3	(0633) 52-2668
295	진도군	539-800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7-5	(0632)544-2405
296	신안군	530-130	목포시 만호동 3-4	(0631) 42-8678

### 경상북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연합회	705-038	대구시 남구 대명8동 15	(053)652-8214
297	포항시	790-140	포항시 대도동 632-7	(0562) 74-1466
298	경주시	780-180	경주시 노서동 129-1	(0561) 2-8706
299	김천시	740-090	김천시 평화동 254-103	(0547)434-5276
300	안동시	760-130	안동시 명륜동 342 구안동대	(0571)858-0221
301	구미시	730-060	구미시 원남동 460-1	(0546) 52-4570
302	영주시	750-050	영주시 휴천3동 36	(0572) 2-3383
303	영천시	770-100	영천시 야사동 282	(0563) 34-5519
304	상주시	742-010	상주시 남성동 14-5	(0582)535-7619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305	점촌시	744-120	점촌시 흥덕동 787-1	(0581) 52-1795
306	경산시	712-020	경산시 삼북동 278-12	(053) 82-2121
307	달성군	705-030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83	(053) 623-5784
308	군위군	716-800	군위군 군위읍 동부동 694	(0578) 82-0087
309	의성군	769-800	의성군 의성읍 상리1동 708-6	(0576) 2-2603
310	안동군	760-010	안동시 용상동 1436	(0571) 3-0436
311	청송군	763-800	청송군 청송읍 월막동 792	(0575)873-2206
312	영양군	764-800	영양군 영양읍 서부동 214-4	(0574) 82-2040
313	영덕군	766-800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229	(0564) 32-9044
314	영일군	790-020	포항시 덕산동 115-26	(0562) 42-8333
315	경주군	780-190	경주시 동천동 795-1	(0561) 3-6304
316	영천군	771-800	영천군 금호읍 신월리 5-10	(0563) 34-4779
317	경산군	712-060	경산시 증방3동 750-2	(053) 82-6969
318	청도군	714-800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 372	(0542) 73-4725
319	고령군	717-800	고령군 고령읍 연조동 500	(0543)954-3736
320	성주군	719-800	성주군 성주읍 경산동 55	(0544)933-3203
321	칠곡군	718-800	칠곡군 왜관읍 왜관5동1356-25	(0545) 2-2720
322	금릉군	740-080	김천시 남산동 28-1	(0547)434-0710
323	선산군	735-800	선산군 선산읍 완전리 180-12	(0546)481-2463
324	상주군	742-010	상주시 남성동 14-5	(0582)535-4474
325	문경군	744-600	점촌시 점촌2리 54-2	(0581) 2-6639
326	예천군	757-800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0-1	(0854)654-1419
327	영풍군	751-800	영풍군 풍기읍 동부6동 404-3	(0572) 4-2368
328	봉화군	755-800	봉화군 봉화읍 포저1리 260	(0573) 73-5093
329	울진군	767-80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28	(0565) 83-3644
330	울릉군	799-800	울릉군 울릉읍 동동2리 168	(0566)791-3392

#### 경상남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연합회	641-050	창원시 내동 465-1	(0551) 83-1067
331	창원시	641-050	창원시 내동 465-2	(0551) 82-3444
332	울산(중)시	681-260	울산시 중구 반구동 67-1	(0551) 92-4576

☞ 다음 쪽에서 계속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333	울산(남)시	680-013	울산시 남구 신정3동 302-6	(0522) 67-0700
334	울산(동)시	682-030	울산시 동구 서부동 582-6	(0522) 34-5577
335	마산(합포)시	631-010	마산시 석전1동 274-8	(0551) 56-1102
336	마산(회원)시	631-010	마산시 석전1동 274-8	(0551) 96-1133
337	진주시	660-030	진주시 남성동 3-18	(0591)745-0652
338	진해시	645-270	진해시 경화3가 47	(0553) 2-5994
339	충무시	650-090	충무시 서호동 97	(0557)645-6703
340	삼천포	665-010	삼천포시 선구동 115	(0593) 33-2637
341	김해시	621-040	김해시 봉황동 42-6	(0525) 36-6578
342	밀양시	627-150	밀양시 삼문동 159-1	(0527)354-0843
343	장승포	657-210	장승포시 장승포동 294-1	(0558)681-8002
344	진양군	663-840	진양군 문산면 삼곡리 1233	(0591) 56-5847
345	의령군	636-800	의령군 의령읍 중동 430-1	(0555) 73-2998
346	함안군	637-800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8	(0552) 82-0674
347	창녕군	635-800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34-3	(0559) 2-3552
348	밀양군	627-150	밀양시 삼문동 4-19	(0527)354-6811
349	양산군	626-800	양산군 양산읍 중부동 180	(0523)396-2241
350	울산군	689-800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166-1	(0522) 63-0660
351	김해군	623-800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382-4	(0525) 43-3876
352	창원군	634-920	창원군 북면 신촌리 593	(0551) 98-8184
353	통영군	651-820	통영군 광도면 죽립리 945	(0557) 42-4877
354	거제군	656-800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804-3	(0558) 32-0577
355	고성군	638-800	공성군 고성읍 동외리 316	(0556) 2-2993
356	사천군	664-800	사천군 사천읍 선인동 178-2	(0593) 52-2356
357	남해군	668-800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48-5	(0594) 2-2372
358	하동군	667-800	하동군 하동읍 동광동 414-2	(0595) 83-1226
359	산청군	666-800	산청군 산청읍 지리 321-1	(0596) 73-3178
360	함양군	676-800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61-4	(0597) 63-4165
361	거창군	670-80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2-19	(0598) 2-8300
362	합천군	678-800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703	(0599) 32-0406

제주도

No	지회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연합회	690-032	제주시 삼도2동 44-1	(064)53-5114
363	제주시	690-032	제주시 삼도2동 44-1	(064)58-0444
364	서귀포시	697-010	서귀포시 서흥동 327-10	33-1821
365	북제주군	690-022	제주시 이도2동 1776-3	52-0841
366	남제주군	697-010	서귀포시 서흥동 440-1	33-5700



### 노인정(경로당)활성화 방안

---

---

1992년 12월	일	인쇄	
199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지	달	현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전화	355-8003~7 (교환)	
인쇄처	아진인쇄 (273-7223~4)		

---

---